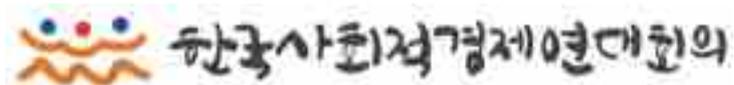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9년 정기총회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출범선언문

- 협동과 연대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유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인 자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세계 경제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은 더 늘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해고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묻지마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 사회적 경제는 자본가,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필요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행위를 한다.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나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등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의 한 분야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에 출범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총독부의 탄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해방과 군사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민간 소비조합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육성지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호혜와 자율 운영이 실종된 채 양적으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활 단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긴 해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노동자, 소비자, 농민, 자영업자 등 누구나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은 있었으나 노동자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지 못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기업 또는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관 등 여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적합한 옷을 입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민간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만들고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해왔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두 조직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고자 한다. 두 조직을 통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특히,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이 성공하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연합 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제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현황

| 구분 | 단체명 | 대표자 | 주소 |
|----|-------------------------|-----|--|
| 1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이경란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201호 |
| 2 | 나눔의집협의회 | 최준기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 3 | 두레생협연합회 | 김혜정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KT텔레캅빌딩 4층 |
| 4 |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연합회 | 박인자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9, 401호 (당동, 아이밸리 군포) |
| 5 | 전국주민협동연합회 | 정덕용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
| 6 |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 박준우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길 4, 덕원빌딩 2층 |
| 7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 김상현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2 2층 |
| 8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최영미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7 4층 |
| 9 |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 박강태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열린사무실 5호 |
| 10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 김진아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
| 11 |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안혜경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1호 |
| 12 | 한살림연합회 | 곽금순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 |
| 13 | 한국여성노동자회 | 임윤옥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
| 14 |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민앵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306호 |
| 15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박준홍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
| 16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변형석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
| 17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강은경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208호 |
| 18 | (사)전국실업단체연대 | 최인규 | 서울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빌딩 15층 |
| 19 | 한국YMCA전국연맹 | 김경민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
| 20 |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김홍섭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2층 |
| 21 | 한국자활기업협회 | 오인숙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1층 |
| 22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송병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6층 |

2019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 구분 | 단체명 | 대표자 | 주소 | |
|----|---|-------------------------|----------------------|---------------------------------------|-----------------------|
| 23 | 지역조직 (지역 네트워크, 지역 연합회 또는 협의회, 지역 전문기능 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이길주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7 | |
| 24 |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 김혜경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산학연구원 503호 | |
| 25 |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 송재봉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 빌딩 2층 | |
| 26 | |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 최현수 |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 |
| 27 |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강순원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
| 28 | |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박송묵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 2층 | |
| 29 | | (사)풀뿌리사람들 | 송인준 | 대전시 중구 대흥로10번길 9 | |
| 30 | |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박진해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32-7 | |
| 31 | | 커뮤니티와 경제 | 김재경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 |
| 32 |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 주태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 |
| 33 |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유영우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 |
| 34 | | 사회적경제연구원 | 유승민 | 대전시 중구 보문로293 협동의집 3층 | |
| 35 | |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이점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상가 101호 | |
| 36 | |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흥석 | 울산시 중구 신기8길7 2층 | |
| 37 |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이종국 |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 |
| 38 | | 사람과경제 | 하재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 | |
| 39 |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이강익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 |
| 40 | | 경기도마을기업협회 | 한희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10번길 21 1층 | |
| 41 | | 전문 기능 조직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 김성수 |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7층 |
| 42 | | | 사회투자지원재단 | 김홍일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
| 43 |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 | 이영환 |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내 | |
| 44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 정명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00호 | |
| 45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김성재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 |

| | 구분 | 단체명 | 대표자 | 주소 |
|----|----------|---------------|-----|-------------------------------------|
| 46 |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진남영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3층 |
| 47 |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최영찬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
| 48 | | (재)함께일하는재단 | 이세중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번지 |
| 49 | | (사)환경정의 | 김일중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
| 50 | | (주)한국사회혁신금융 | 이상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6호, 607호 |
| 51 |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 장경호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0-2 풍양빌딩 2층 |
| 52 | |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이재욱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
| 53 | 단위 조직 | 논골신용협동조합 | 유영우 |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40 e-편한세상상가 B동 106호 |
| 54 | | 동작신용협동조합 | 임정빈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9 |
| 55 | | 주민신용협동조합 | 이점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
| 56 | | 장안신용협동조합 | 안병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16 |
| 57 | |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 이상훈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은 안현로 381 |
| 58 | | 경동신용협동조합 | 김봉선 |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87 |
| 59 | | 단원신용협동조합 | 채복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109호 |
| 60 | |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 이동근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동 502호 |
| 61 |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이규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8호 |

■ 차례 ■

| | |
|------------------------------------|-----|
| 출범선언문 | 1 |
| 회원현황 | 3 |
| 총회순서 | 7 |
|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 9 |
| 2018년 회계감사 보고서 | 14 |
| [심의안건] 1호의 안_ 2018년 활동보고(안) | 16 |
| 2018년 결산(안) | 97 |
| [심의안건] 2호의 안_ 임원선출의 건 | 103 |
| [심의안건] 3호의 안_ 2019년 사업계획(안) | 106 |
| [심의안건] 3호의 안_ 2019년 예산(안) | 116 |
| [심의안건] 4호의 안_ 회원가입 승인의 건 | 119 |
| [심의안건] 5호의 안_ 협동조합 제도개선운동 제안 | 128 |
| 붙임자료 | 135 |

■ 총 회 순 서 ■

인사말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임명

의순채택

1호의안) 2018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2018년 결산(안)보고 승인의 건

2호의안) 임원선출의 건

3호의안) 2019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 예산(안)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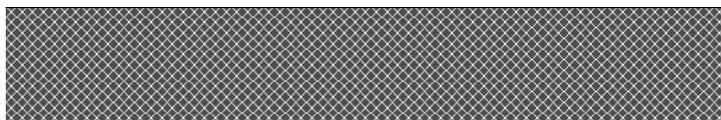
4호의안) 회원 가입승인의 건

5호의안) 기타

폐회선언

2019년 정기총회

전차 회의록 보고



2018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회의록

- 진행일 : 2018년 3월 9일(금) 오후 4시
- 장 소 : 한살림 서울생협 교육장
- 정 원 : 53개 단체
- 성 원 : 총 38개 단체(참석 27개, 위임 11개)

1. 개요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8년 한살림 서울생협 교육장에 회원단체가 모여 신규 회원가입, 2017년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결산안, 임원선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의하다.

2. 경과 및 보고

참가자 인사

- 참가자들이 참석 인사를 하다.

상임대표 인사

- 임종한 상임대표가 환영인사를 하다.

외부인사 인사

-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입사무총장이 본 회의 총회에 대해 축사를 하다.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박용원 사무국장이 총 53개 단체 중 27개 단체 참석, 11개 단체 위임, 총 38개 단체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임종한 의장에게 보고하고 임종한 의장이 2018년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서기지명

- 의장이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를 서기로 지명하고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여 강민수를 본 회의의 서기로 지명하다.

□ 전차회의록 보고

- 김대훈 정책위원장이 2017년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임종한 의장이 이견을 묻고 전차회의록이 틀림이 없으므로 회의록을 접수하다.

□ 감사보고

- 임정빈 감사를 대신하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유영우 대표가 감사보고를 하고 이견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다.

□ 회순채택

- 임종한 의장이 원안대로 회의진행을 요청하였고 참가자 문보경이 동의하고 민동세가 제청하여 회순대로 회의를 진행하다.

3. 안건논의

□ 1호의 안 : 회원가입 승인의 건

-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김홍섭대표가 가입승낙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다.
-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대표가 가입 승낙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다.
- 임종한의장이 가입 승낙 여부를 묻고 이견이 없으므로 위 단체들의 회원가입을 의결하다.

□ 2호의 안 :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보고 승인의 건

- 안인숙집행원장이 2017년 사업 기초 및 추진사업 및 결산 안에 대해 보고하다.
- 임종한의장이 의견을 물어 민동세가 동의하고 문보경이 제청하여 의안을 승인하다.

□ 3호의 안 : 임원선출의 건

- 하재찬 지역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다.
- 임시의장이 대표 7인 이내, 상임대표 1인, 운영위원 25인 이내, 집행위원장 1인, 감사 2인 이내 임원선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현민 센터장이 임원선출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다.
- 안인숙 집행위원장이 정관상 임원선출 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상당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표의 역할이 필요함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바 있음을 설명하다.
- 하재찬 지역위원장이 충청권 단위의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송재봉 대표가 추천되었음을 부연하다.
- 임종한 의장은 각 분야별 대표 추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시간을 두고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추가 설명하다.
- 회의결과 공동대표는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장(기본법 부문), 유영우 논골신흥 이사장(신흥 부문), 송병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대표(지역 부문), 박준홍 한국자활센터협회장(자활 부문),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장(사회적기업 부문), 송재봉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대표(지역 부문) 다만 생협 부문은 사후 추천 후 공동대표로 승인하기로 하다.
- 공동대표단의 회의를 거쳐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다.
- 운영위원은 2017년 운영위원회에 더하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로 승인하다.
- 집행위원장은 안인숙을 선출하다.
- 감사는 임정빈을 선출하다.

□ 4호의 안 :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계획 승인의 건

- 안인숙 집행위원장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임종한 의장이 의견을 물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다.

□ 기타안건

- 임종한 의장이 기타안건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현민 센터장이 기타 안건을 제안하다.
- 이현민 센터장이 “군산 GM 대우 사태로 인한 지역 침체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하다.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이런 기조에 대해 논평을 내주고 전북지역과 함께 하면 좋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다.
- 임종한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 폐회선언

- 임종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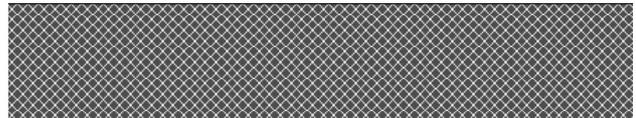
2018년 3월 9일(금)

서기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9년 정기총회

감사보고



2018년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년 1월 21일 16:00~17:00
- 감사범위 : 수입 및 지출,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 감사내용 : 통장내역,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결산서

[감사결과]

본 감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결의서 및 붙임근거 등을 보편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 및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2016년 4천9백여만원, 2017년 5천7백여만원, 2018년 1억여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회비 비중은 약 50%인 상황입니다. 연대회의 운영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확대와 회비 합리화와 회비의 미납 회원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2.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대회의의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국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3. 지출항목 중 수용비계정은 회계규정에 의한 소모품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변경을 건의합니다.
4.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특별후원 및 기타 연대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회원회원 및 후원단체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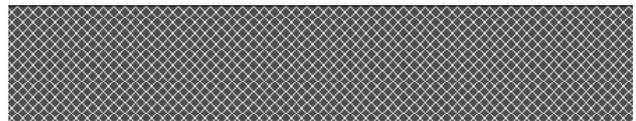
2019년 1월 21일

감사 : 임 정 빈



[심의안건] 1호의 안

2018년 활동보고



[심의안건] 1호의 안 _ 2019년 활동보고

활동일지

| 진행일 | 구 분 | 내 용 | |
|-----|-----|----------------|------------------|
| 1월 | 9일 | 사무국 | 광주전남 간담회 |
| | 11일 | 총회 | 총회준비위원회 |
| | | 위원회 |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
| | 12일 | 위원회 | 운영위원회 |
| | 15일 | 사무국 | 경남지역 간담회 |
| | 16 | 사무국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준비회의 |
| | 18일 | 사무국 | 시민행동 준비회의 |
| | 22일 | TF | 사회서비스분과 워크숍 |
| | 24일 | 사무국 | 시민행동 준비회의 |
| | | 위원회 | 정책위원회 정기회의 |
| | 25일 | 위원회 | 지역위원회 워크숍 |
| | 27일 | 사무국 | 의료사협연합회 총회 |
| | 29일 | TF | 사회서비스분과 정기회의 |
| 31일 | 총회 | 총회준비위원회 | |
| 2월 | 1일 | 사무국 | 시민행동 준비회의 |
| | 2일 | 위원회 |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
| | | 사무국 |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미팅 |
| | 7일 | 정책활동 | 시민행동 전국대회 |
| | 9일 | 위원회 | 운영위원회 |
| | | 위원회 | 정책위원회 정기회의 |
| | 14일 | TF | 사회서비스분과 회의 |
| | 22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법연구_동천 세미나 |
| | | 사무국 |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총회 |
| | 23일 | 사무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장 미팅 |
| 사무국 |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총회 | |
| 27일 | 위원회 |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 |

2019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 | | |
|-----|--------|-----------------------------|---------------------------|
| | 28일 | 위원회 | 임시운영위원회 |
| 3월 | 9일 | 총회 | 제 7차 정기총회 |
| | 14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전달체계 분과회의 |
| | 15일 | 사무국 | 사무국 회의 |
| | 16~17일 | 위원회 | 교육위원회 워크숍 |
| | 19일 | TF | 2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20일 | 연대활동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기총회 |
| | | 연대활동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제도개선 자문회의 |
| | 21일 | 연대활동 | 지역재단 국민행복농정연대 토론회 |
| | 23일 | 연대활동 |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회의 |
| | | 연대활동 | SDGs 지속가능발전시민위원회 총회 및 토론회 |
| | 27일 | 사무국 | 주민협동연합회 회장 미팅 |
| | 28일 | 연대활동 | 부산 자원봉사지원센터장 연찬회 |
| | 29일 | 위원회 | 1차 정책위원회 |
| 30일 | 정책활동 | 4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사회적금융의 쟁점과 과제 | |
| 4월 | 2일 | 연대활동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미팅 |
| | 4일 | 위원회 |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 |
| | 5일 | 연대활동 | 환경부 환경경제위원회 회의 |
| | 6일 | 정책활동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정책제안 간담회 |
| | 9일 | 사무국 | 청년위원 기획회의 한국대학생협연합회 |
| | 10일 | 위원회 | 1차 사회서비스분과 회의 |
| | 11일 | 사무국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미팅 |
| | 12일 | 사무국 | 지역재단 전국지역리더대회 기획조직회의 |
| | 13일 | 정책활동 | 청화대 비서실 미팅 |
| | | 위원회 |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 | 15일 | 사무국 | 청년공유주택 숨과숨 미팅 |
| | 16일 | 정책활동 | 5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기획회의 |
| | | TF | 2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17일 | 위원회 | 2차 사회서비스분과 회의 | |

| | | | |
|-----|--------|-------------|--------------------------------|
| | 18일 | 연대활동 |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회의 |
| | 19~20일 | 연대활동 | 퀘백 사회적금융 워크숍, 간담회 |
| | 20일 | 사무국 | 청년위원 기획회의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
| | 21 | 위원회 | 호남권 사회적경제활동가 교류회-전남 |
| | 23일 | 사무국 | 청년위원 기획회의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
| | 24일 | 위원회 | 3차 사회서비스분과 회의 |
| | | 위원회 | 복지부 사회서비스과장 및 사무관 미팅 |
| | 25일 | 연대활동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발기인대회 및 정책토론회 |
| | 26일 | 위원회 | 2차 정책위원회 회의 |
| | 27~28일 | 위원회 |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
| | 27일 | 정책활동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 공약 정책회의 |
| | | 정책활동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회의 |
| 5월 | 1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기념행사 추진단 MOU |
| | 3일 | 정책활동 | 사회서비스분과 포럼-사회서비스 현안과 과제 |
| | | 연대활동 | 국회.아이쿱 공동 포럼-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
| | | TF | 3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4일 | 위원회 | 정책위 좌담회-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과 법인격 신설 |
| | | 사무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 |
| | | 위원회 | 4차 운영위원회 회의 |
| | 8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회의 |
| | 10일 | 사무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반배분팀 회의 |
| | 11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전달체계분과 회의 |
| | | 정책활동 | 5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6.13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
| | 15일 | 사무국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
| | | TF | 금융TF&신협 사회적경제추진반 회의 |
| | 16일 | 사무국 | 1차 대구 사회적경제기념행사 사무국 회의 |
| |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회의 |
| 18일 | 위원회 | 6차 교육위원회 회의 | |
| 22일 | 사무국 | 청년주택 월례모임 | |

| | | | |
|-----|-----|-------------|-----------------------------|
| | | 사무국 | 광주 사회적기업협의회장 미팅 |
| | 23일 | 사무국 |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정의당, 녹색당) |
| | | 사무국 |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제도 자문회의 |
| | 24일 | TF | 사회가치연대기금 연구팀 미팅 |
| | | 사무국 | 2차 대구 사회적경제기념행사 사무국 회의 |
| | | 사무국 | 논골신흥 이전 개소식 |
| | 29일 | 사무국 | 사회가치연대기금 연구팀 미팅 |
| | 30일 | TF | 4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 정책활동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회의 |
| | 31일 | 사무국 |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민주당) |
| | | 사무국 | 3차 대구 사회적경제기념행사 사무국 회의 |
| | | 사무국 | 대구 사회적경제기념행사 기획 회의 |
| 6월 | 1일 | 연대활동 | SDGs 6차 역량강화 세미나 |
| | 4일 | 위원회 | 지역위원회 회의 |
| | 7일 | 정책활동 | 6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기획회의 |
| | 8일 | 사무국 | 1차 선언문, 보고서 인터뷰 |
| | | 사무국 | 1차 역사관 기획회의 |
| | 11일 | 사무국 | 2차 선언문, 보고서 인터뷰 |
| | | 연대활동 | 공동모금회&생협 회장단 간담회 |
| | 12일 | TF | 5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 사무국 | 시민단체&민주당 정책위 간담회 |
| | 13일 | 사무국 | 3차 선언문, 보고서 인터뷰 |
| | 14일 | 위원회 | 3차 정책위원회 회의 |
| | | 사무국 | 대구 사회적경제기념행사 사무국 회의 |
| | 15일 | 사무국 | 4차 선언문, 보고서 인터뷰 |
| | 19일 | TF | 6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20일 | 사무국 | 2차 역사관 기획회의 |
| | | 사무국 | 공동모금회 '나눔과꿈' 사회적경제부문 사업설명회 |
| 위원회 | | 7차 교육위원회 회의 | |

| | | | |
|-----|--------|-------------|--|
| | 21일 | 연대활동 | K-SDGs 수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 | | 정책활동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회의 |
| | 27일 | 사무국 | 3차 역사관 기획회의 |
| | 28일 | 위원회 | 4차 정책위원회 회의 |
| | | 연대활동 | 사회주택 개관식 |
| 30일 | 사무국 | 4차 역사관 기획회의 | |
| 7월 | 2일 | 사무국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
| | 3일 | 사무국 | 4차 역사관 기획회의 |
| | 4일 | TF | 7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 정책활동 | 6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사회적경제의도전과 실험, 과제 |
| | | 사무국 | 남북 사회적경제 경험 제안 미팅 |
| | 5일 | 사무국 | 대구 사회적경제기념행사 사무국 회의 |
| | 6일 | 사무국 | 의료사협 워크숍 |
| | 11일 | 사무국 | 관악구사경센터장 미팅 |
| | | 사무국 | 서울사경센터장 미팅 |
| | 12일 | 연대활동 | 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
| | 13~14일 | 연대활동 | 전국리더대회-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
| | 14~15일 | 연대활동 |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in 대구 |
| | | 위원회 | 전국 사회적경제 100인 위원회 좌담회-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정책과 체계를 논하다 |
| | 17일 | 정책활동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회의 |
| | 18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
| | 19일 | 사무국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대표자 간담회 |
| | | 사무국 | 충북 사회적경제 기금 학습회 |
| | 20일 | 위원회 | 정책위원회 워크숍 |
| | 24일 | 사무국 | 박광온 의원실 미팅 |
| | 25일 | 사무국 | 서형수 의원실 미팅 |
| | 26일 | 위원회 | 활성화 정책평가 회의 |
| | 27일 | 위원회 | 8차 교육위원회 회의 |

| | | | |
|------|-----|-------------------------|---------------------------------|
| | 30일 | 사무국 | 대표자 워크숍 |
| 8월 | 3일 | 사무국 | 사무국 회의 |
| | | 사무국 | 광진사경네트워크 미팅 |
| | 7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기획회의 |
| | 10일 | 사무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간담회 |
| | 13일 | 사무국 | 중앙자활센터 미팅 |
| | 17일 | 정책활동 |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미팅 |
| | | 사무국 |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포럼 |
| | 20일 | 연대활동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워크숍 |
| | 22일 | 사무국 | 사무국 회의 |
| | 23일 | 연대활동 |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결과보고 회의 |
| | 24일 | 정책활동 | 협동조합2.0 토론회 |
| | 27일 | TF | 8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28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전남 |
| |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간담회-안산시사경센터 |
| | 29일 | 위원회 | 9차 교육위원회 회의 |
| | 30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대구 |
| 정책활동 |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간담 | |
| 9월 | 3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제주 |
| | 4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부산 |
| | 5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 계획 KDI연구용역 간담 |
| |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분야 경제교육 포럼 |
| | 6일 | 정책활동 | 서형수 의원 미팅 |
| | | 사무국 | 전남북 신흥 워크숍 |
| | 7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충남 |
| |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경남 |
| | 10일 | 사무국 | 대구 협동조합 간담회 |
| | 11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서울자치구센터 회의 |
| 정책활동 |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충북 | |

| | | | |
|-----|-----|------------------|-----------------------------|
| | 12일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전북 |
| | | 정책활동 |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광주 |
| | 13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기획회의 |
| | | 위원회 | 사회적경제 인재상 설문정리 회의 |
| | 14일 | 위원회 | 5차 운영위원회 회의-1 |
| | 15일 | 위원회 | 5차 운영위원회 회의-2 |
| | 17일 | 정책활동 | 7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사회적경제분야의 일자리란 |
| | 18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 남북교류 포럼 |
| | | 사무국 | 김성식 의원실 미팅 |
| | 20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획팀 해단 |
| | 21일 | 사무국 | 윤호중 의원실 미팅 |
| | | 위원회 | 9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27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기획회의 |
| | | 사무국 | 활동가대회 현장견학 |
| 28일 | 위원회 | 6차 정책위원회 회의 | |
| 10월 | 2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회의 |
| | 4일 | 정책활동 | 협동조합 10대 제도개선 토론회 |
| | 5일 | 사무국 | 심상정 의원실 미팅 |
| | | 사무국 | 박광온 의원실 미팅 |
| | 8일 | 사무국 | 세종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 | 10일 | 위원회 | 10차 교육위원회 회의 |
| | | 사무국 | 진흥원장 미팅 |
| | 11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민행동 회의 |
| | 12일 | 사무국 | 당진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 | 15일 | 정책활동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해단 |
| | 16일 | 사무국 | 사무국 회의 |
| | 17일 | 위원회 | 7차 정책위원회 회의 |
| 사무국 | | 공정거래위원회 미팅-한겨레두레 | |

| | | | |
|-----|--------|------|--------------------------------|
| | 18일 | 사무국 | 충남 사회적기업 워크숍 |
| | 19일 | 사무국 | 시흥시 사회적경제협의회 |
| | 22일 | 위원회 | 운영위원회-기금추진단 간담 |
| | | TF | 10차 사회적금융TF 회의 |
| | 23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회의 |
| | | 사무국 | 집담회 설문 정리 회의 |
| | 24일 | 사무국 | 진흥원 전달체계 간담 |
| | 25일 | 사무국 | 충남 사회적경제 연구모임 |
| | 29일 | 사무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간담회 |
| |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회의 |
| 11월 | 2~3일 | 사무국 |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 |
| | 5일 | 사무국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 미팅 |
| | 7일 | 정책활동 | 8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기획회의 |
| | 8일 | 사무국 | 농협중앙회장 미팅 |
| | 9일 | 연대활동 | 협동조합 평가모형 공청회 |
| | 10일 | 사무국 | 대전 사회적기업 워크숍 |
| | 13~14일 | 사무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정성평가 |
| | 15일 | 정책활동 | 8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기획회의 |
| | | 사무국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회가치창출부 미팅 |
| | 16일 | TF | 11차 사회적금융TF(공제추진단) 회의 |
| | 18일 | 정책활동 | 추경호 의원 미팅(대구) |
| | 21일 | 정책활동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
| | | 사무국 | 신나는조합 이사장 미팅 |
| | 22일 | 사무국 | 전국협동조합연합회(준) 종합 워크숍 |
| | | 연대활동 | 노협활성화 토론회-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 |
| | 26일 | 사무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미팅 |
| | 27일 | 사무국 | 신협 회계프로그램 교육 미팅 |
| | 28일 | 사무국 | 충북 사회적기업 워크숍 |
| | | 사무국 | 공동모금회 나눔과꿈 행사 |

2019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 | | |
|-----|-----|----------------|--|
| | 29일 | 정책활동 | 청와대 행정관 미팅 |
| | | 정책활동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회의 |
| | 30일 | 정책활동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공청회 |
| 12월 | 3일 | 사무국 | 활동평가 미팅-신나는 조합 |
| | | | 활동평가 미팅-서울협동조합협의회 |
| | 4일 | 사무국 | 활동평가 미팅-한살림 |
| | 5일 | 연대활동 | 협동조합 교육과정 집담회 |
| | 6일 | 정책활동 | 8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현장이 말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
| | 7일 | 사무국 | 활동평가 미팅-신협중앙회 |
| | 10일 | 위원회 | 7차 운영위원회 회의 |
| | 12일 | 사무국 | 사무국 회의 |
| | | | 사회공헌포럼-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커뮤니티 케어 |
| | | | 이로운넷 기사 기획 회의 |
| | | | 노동자협동조합 교류회 |
| | 14일 | 위원회 | 14차 교육위원회 회의(전주) |
| | 18일 | 사무국 | 사무국 회의 |
| | 19일 | 연대활동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회의 |
| | | 위원회 | 사회적금융TF(공제추진단) 회의 |
| | 20일 | 사무국 | 진흥원 강경흠 미팅 |
| 21일 | 사무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간담회 | |
| | 위원회 | 8차 정책위원회 회의 | |
| 28일 | 사무국 | 김성식 의원실 미팅 | |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년 사업평가

1) 총평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가 출범한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조직간 정보공유와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출범선언문은 현장 조직이 성공하고 운동의 중심이 되도록, 각 분야의 연합 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대회의의 사명으로 밝히고 있다.

■ 2018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사업 방향은 아래와 같다.

- 1)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수립하고 구체 실천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회원 조직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강화한다.
- 2) 중앙 및 지역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다양한 실천을 조직한다. 이를 통해 연대체로서의 위상과 정책 교섭력을 강화한다.
- 3) 정책 모니터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 줄여가는 법제도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4)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담론을 형성해 간다.

■ 이를 위해 계획한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목적 1.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

- 지역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전망과 주체 발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축, 교육역량 강화
- 기본법제정과 법제도 개선활동, 지방선거 대응을 통한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 기금, 일자리, 인재양성 등 정책 토론회와 학습회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목적2. 연대망 강화

- 지역협의체 구성 촉진
- 회원확대
- 사회적경제 결속력을 높이는 사업,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활동가 대회 등 개최

목적3. 정책 소통채널 강화

- 대정부 정책채널 확보
- 시민사회, 신협,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협력

목적4. 조직운영

사무국 안정화, 위원회/ 분과 운영, 긴급이슈 분과 운영, 집행위원회

활발한 정책 환경

2018년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후 부처별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00여개의 크고 작은 정책과제가 수립되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과 제도적 인프라 조성, 진출분야 확대, 인재양성 분야에 골간이 되는 사업이 시행되어왔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에 있어 사회적금융 조성을 위한 협의회가 꾸러지고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는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에 변화를 요구하였고,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의 판로확대와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모색을 하도록 촉진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과 민간 주도성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박람회 민간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민간주체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가려는 노력도 보였다.

사회적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주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시재생 사업에서 협동조합식 마을 주체의 사업 추진 등 일부 영역에서의 시도가 활발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그동안 정부에 제안했던 제도개선 과제와 정책들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열렸다고 하겠다. 현정부의 활성화 정책은 연대회의가 제안했던 내용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민간 협의회 구성 활발

3월에는 자활기업협회가 창립되었고,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건설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와 워크숍이 이어져 2019년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의 연합회 건설이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회원 확대

연대회의 회원으로 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혁신금융, 전국자활기업협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살림이 회원 가입하여 회원단체 총 수는 61개가 되어 연대회의의 멤버십이 확장되었다.

연대회의, 민간 대표성 지닌 조직으로

중앙 거버넌스 구조에 부문과 전국을 아우르는 민간 대표기구로서 참여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에 부문/지역협의회를 포괄하는 단위로 참여하였다.

정책소통의 채널은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민주당 사회경제연구소를 비롯하여, 각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관계를 가졌고, 민주당 사회적경제전국위원회와의 협력에 대한 합의도 만들었다.

외부연대망 확장을 위한 작은 진전

SDGs시민네트워크와의 학습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사례집 속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담는 작업,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와의 정보 교류, 신탁중앙회 사회적경제 추진반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부이해관계자망을 넓히는 기초를 다졌다.

과제, 사회적경제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생산과 조직건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현장 혹은 지역에 기반한 통합적인 정책 실행과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설계에는 부족함이 많다. 부문 당사자 간의 칸막이를 넘어선 당사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설계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현장 역시 연대의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정책 요구가 아닌 지역의 역량과 필요에 따른 내발적 발전 전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현재는 정책의 전달자, 수행자로서 외부 기회를 활용하는 차원의 대응을 해 가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경제를 규모화 안정화 시킨다는 정책 목표 대비, 당사자 조직의 경험과 인적/물적 역량은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에게는 도전과 실험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과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면서, 눈앞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 요구를 조직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제안의 시기에서 현장의 실천적 과제를 해결해 가는 현장 밀착형 정책 발굴과 실행 주체 형성이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연대회의가 가지는 대표성에 비하여, 사회가치연대기금, 정책 전달체계, 부처별 정책사업 등 현안 이슈에 대해 연대회의 연대운동 전략에 기반한 입장을 정리하여 생각과 실천의 공통 분모를 만드는 일은 지체되었다. 사무국 자체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간의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대응해 왔으나 향후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활동의 범주와 전략을 보다 현장과 밀착하여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연대회의의 조직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하겠다.

과제, 연대회의,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연대회의로 상징되는 사회적경제 전국대표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연대회의는 현장의 무엇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목표와 조직체계,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이 요청된다.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해 제출되었던 사회적경제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과 예산 의존도가 높고, 연대전략에 기초한 성공적인 모델 발굴의 지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책 제안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우려하며, 사회적경제의 도덕적 정당성에서 오는 권위와 조직력에 기초한 역량을 키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찰과 도전을 통해 자발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운동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고민이 여기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을 적극 제안해 가는 과정이 조직의 규모와 정당성 확대의 길이 되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당사자성에 기반하여 회원활동이 중심이 된 운동의 전과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전국조직이라는 외피 아래 회원 내부 결속력과 운동에 대한 합의를 높여나가는 것보다, 외부 이슈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활동이 회원 확대로 이어지거나 한 사례도 많지 않고, 조직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증가 속에서 연대회의의 멤버십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정돈이 필요하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곳, 사명과 원칙에 동의하는 곳이 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조직들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사회적경제 부문과 지역협의체들의 양적 증가 속에서 연대회의의 목적에 기반하여 멤버십 논의가 필요하다.

2) 목적별 총평

목적 1.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

- 사례공유를 통한 사업모델 발굴, 정책 대응 역량 강화는 부족했다. 위원회를 통한 회의/논의 구조로 사업을 전개했는데, 시도 자체가 어려웠다. 위원회 구조로는 생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변화가 필요하다.

- 선거대응, 법제도 개선 활동은 시의적절하게 대응했고 현장의 필요에도 부응했다. 법제도 개선활동은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조금씩 진전을 보이지만, 기본법은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국회 상황 때문에 진전이 없어 민간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
- 교육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모색 중. 교육위원회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적2. 연대망 강화

- 지역협의체 구성을 촉진하거나 회원 확대 전략 속에서 활동하지는 못했다.
- 사회적경제 결속력을 높이는 사업, 기본법시민행동 전국대회,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활동가 대회 등 개최는 시의적절했다.
- 연대망 내에 민간 협의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현재 활동하는 지역회원은 사회적경제 현장 지향성이 높은 지원기관이 다수인데,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민간 협의체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3. 정책 소통채널 강화

- 대정부 정책채널 확보 활동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각당 간사 접촉, 국회 사회적경제포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롯하여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 시민사회, 신협,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협력은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추진활동에 이해를 도왔고, 신협과의 협력 사업에서는 상호 이해를 넓히며 내부 정책 추진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기회를 만들었다.

목적4. 조직운영

- 사무국 업무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회비 납부율은 10% 증가
- 위원회와 분과 운영은 안정적이었고, 긴급이슈에 대한 분과대응이 있었다.
-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3) 주요활동 평가

| 사업명 | 자평 |
|--|--|
| <p>1 정책 제출/제도 개선 활동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과제</p> | <p>-대선공약 제출 후 '17년도에 금융(안)과 기본법(안) 보완 작업 진행 -올해는 정책 반영활동으로 각부처 자문회의에 참여.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참여. 기금 이사회에 이사 2명 파견 -제도개선 과제, 협동조합 10대 과제 제출한 것. 평가할만한. 토론회를 통해 외화 -회원 개인 활동 차원으로 전개된 부문이 많음. 정책 대응 활동 공유하고 종합하기 어려웠던 점이 존재함. 회원의 요구 및 관심을 알 수 있는 정보소통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음.</p> |
| <p>2 정부정책 중간평가 사업</p> | <p>-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대회의와 현장의 과제를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함. -지역집담회는 조직활동 차원의 사업의 성격이 컸고, 지역에 연대회의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p> |
| <p>3 선거 대응 -6·13 전국공통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제출</p> | <p>-지역위원회에서 시의적절하게 제안하고 행동함 -연대회의의 제안활동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정보 취합 미흡 -지방정부에 대한 매니페스토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재시점의 남은 일은 없는지 점검해야.</p> |
| <p>4 의제 선도, 정책 효과성 높이는 역할 -사회적경제정책포럼 5회 -제도개선 토론회 회</p> | <p>-사회경제포럼을 통해 '포용금융' '좋은 일자리'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등을 다룸. 대중을 상대로 기사화한 것에 의미가 있음. -나아가 사회적경제 내부에서 공동으로 다뤄야 할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선정하여 토론/학습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실천행동을 계획해야 함.</p> |
| <p>5 전략 모색 -자본연대 토론회/간담회 (충남, 충북, 전북, 대구동구, 대전)</p> | <p>-연대기금추진 과정에 금융TF가 결합하면서 사회적경제 자본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구축해 놓았고, 현장의 요청에 즉시 응답했음.</p> |

| | | |
|----|--|---|
| 6 |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현실적 방안을 소개하고, 협동조합은행, 신협과의 향후 협력의 분위기를 띄움. -우리의 자본을 형성하는 경험으로 공제사업을 소개하였으나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 불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교류에 방점을 둔 대표적인 년중 조직사업으로 키워갈 것인지 검토 필요. |
| 7 | 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 제정을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모여 보는 경험을 만들 -한기협이 제안이 큰 힘이 되었음. |
| 8 | 위원회/분과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총 8회 진행. -정책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협업이 두드러짐. -교육위원회는 목표대로 꾸준히 활동 -사회서비스분과 하반기 위촉 -금융TF 활동 활발 |
| 9 | 2018 사회적경제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은 뜻 깊었으나, 확산을 위한 후속의 효과적인 행동은 만들지 못함. -보고서는 연대회의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할 때, 정부대상으로는 양적으로 최대 혹은 의미있는 범위내에서 최대여야 할 것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양적 최대가 아니라면, 무엇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준거점을 '보고서'의 진단과 권고로 가져갈 수 있을지 논의 필요. |
| 10 | 외부연대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DGs시민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와의 소통 구조를 형성했다는 데에 의미를 둠 -모금회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사회가치평가 참고 지표 SDGs에 대한 정보 제공 |

I.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수립

활동 1 사회적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모색한다

1) 지역 및 부문별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 | |
|------|---|
| ▪ 목표 | 지역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전개 월 1회 지역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책위원회 등과 연계 협력 |
| ▪ 진행 | · 지역조직의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 ▪ 내용 | · 지역 사례 공유를 기반으로 조직 건설, 전략 수립, 주체 발굴을 위한 지역활동을 상호 지원한다. ·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집중 논의 · 하반기 활동가대회에서 공유한다. |

■ 집행하지 못함.

활동 목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음. 지역과 부문의 발전 전략을 공동 논의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연대의 요구가 발현되지 않은 상황임. 현재 단계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해야 함.

2) 2022 사회적경제 선언문을 만든다

- | | |
|------|--|
| ▪ 목표 | 사회적경제 운동의 지향과 과제 수행을 위한 당사자의 실천의 원칙과 결의를 만든다 부문/ 지역별로 선언문 작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 진행 | 사회적경제 기념주간이나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를 통해 전체적인 결의 도출 |

① 추진 경과

- 2018년 7월 13일에 열리는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 및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지향과 비전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인식의 통일을 꾀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각오를 새롭게 다짐
-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중간 이정표’ 노릇을 할 ① 2018 한국 사회적경제 보고서와 통합박람회에서 낭독될 ② 2018 한국 사회적경제 선언문을 작성하고자 함

- 5월 1일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선언문을 작성하기로 함. 강현구 추진단장, 선언문의 근거 자료가 되는 작성을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에게 의뢰함. 6월 8일~15일 추진위원회 참여 조직에게 추천한 총 19명과 통합박람회 역사관 기획위원 2인에 대한 인터뷰 진행. 6월 30일 보고서 초안 작성. 7월 14일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제출

② 인터뷰 참여자

- 오인숙(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박기홍(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국장), 이문수(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이병학(중앙자활센터 원장). 한희주(경기마을기업협회 회장), 방태형(경기마을기업협회 이사), 구영민(경남마을기업협회 회장), 민동세(한국사회적기업협회 감사), 이동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심옥빈(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윤형근(한살림연합 상무이사), 김성기(두레생협연합회 전무이사), 김아영(아이쿱조합원활동연합회 회장), 이현배(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송인창(HBM 소장), 주영덕(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사무총장), 최민경(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사무처장), 김정원(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위원), 문보경(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운영위원), 임중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③ 선언문 별첨

3)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 | |
|------|--|
| ▪ 목표 | 사회적경제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교육담당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리더 양성을 준비한다. 교육위원회 정기 활동과 워크숍 진행 |
| ▪ 진행 |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강화 및 재교육 방법 연구 |
| ▪ 내용 |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강화 및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27~28일 | 박봉희, 김유숙, 김윤미, 신재걸, 정선교, 신협 중앙회, 안인숙, 박용원의 외 약 40명 | -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 김윤미, 문재인 정부의 인재양성 로드맵 : 조현경, 민주적 의사소통 : 박봉희, 페다고지 학습론 : 김유숙, 신협의 사회적경제 사업계획과 전망 : 안승용(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기획반 반장), 사회적경제 교육기획 방법론 : 강민수
- 주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신협중앙회,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 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투자지원재단,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후속과제 : 사업방향에 필요한 사례공유 (네트워크, 교육, 정보공유) 필요. 통합지원 기관 욕구과약 필요. 2019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워크숍. 참여자 중 청년 대상 모임 추진 및 권역별 모임 축진의 역할 시도하면 좋겠고, 이러한 조직사업이 추후 활동가 대회로 연결



활동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 **목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실행 과정의 이슈에 대응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 |
|-----|---|
| ▪진행 |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회원 단체의 개선요구 수집, 좌담회/토론회 개최, 정부 제안활동 · 부분/지역/업종별 정기적 제도개선 요구를 수집·공론화 한다. |
| ▪내용 | ·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금융 정책에 대한 ·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사회적경제 공통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토론회, 후보자 협약식 등을 지원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 |

1. 기본법 대응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민행동

| 일자 | 참석 | 개요 |
|-------|-------------------------|-----------------------|
| 2월 7일 | 시민행동 참여 개인 및 단체 약 500여명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대회 |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 야의 대승적 협력과 조속한 법 제정 노력 촉구



2) 지방선거 대응

① 지방선거 공통공약 워크숍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4일 | 지역 정책 담당자, 지역위원회, 안인숙, 박용원 외 약 40명 | -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 |

○ 주요 내용

- 2014년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돌아보기&나아가기, 2018년 지방선거 공약 개발 활동 공유(제도 전반 : 류홍번, 교육 : 주수원, 협동조합, 마을, 농업 : 안인숙, 지역 : 하재찬), 2018년 공통공약 제안을 위한 분임토의, 지역사회를 바꾸는 좋은 공약(김기태)

- 주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회

| * 분임토의 내용 | | |
|---|---|--|
| <p>○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시대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역과 삶, 미래로 연결하고 일상에 뿌리내리자 <p><정책></p> <p>① 통합 민관 협의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계획 공동수립 및 평가 <p>② 교육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교육기관 설립 - 인재양성 지역별 계획 수립 -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류 <p>③ 기금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가치기금 조성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연계 <p>④ 연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적경제 연구-정책 기금 강화 - 지역발전연구원 인력 확보 <p>⑤ 기본권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농업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기업 육성 - 노령인구 노동권 보장 지원 사회적경제 <p>⑥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실현 조례 제정 - 지방정부 예산 편성 | <p>○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가치 확산/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p>① 정책의 전달 및 협의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정책관 설치 <p>② 지방정부 내 사회적가치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조달 및 공공우선구매제도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p>③ 지역적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복지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금 조성 - SIB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 - 서민금융의 양극화 해소 <p>④ 인재육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지역자원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교육, 주민공동체 교육, 공무원 교육 - 대학·대학원 연계(재교육) <p>⑤ 지방정부 주요 정책과 사회적경제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부여 - 혁신 읍면동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역할 부여 | <p>○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p><교육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p><행정 조례></p> <p>① 행정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신설</p> <p>② 거버넌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별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관계자 참여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의무화 <p>③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민간추진단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 <p>④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p> |
| <p><정책></p> <p>① 지방선거(7개 지방 정부)를 통해 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위상을 확립한다</p> <p>②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정비를 강화하여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아젠다 발전을 압박한다</p> <p>③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통합</p> | <p><정책></p> <p>①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해 당사자 조직(연합체)에 대한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한다</p> <p>②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한 다/민간협의체에게 우선 위탁되는 지원기관을 확대한다</p> <p>③ 지역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구매를 확대한다</p> <p>④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p> | <p>○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p><정책></p> <p>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p> <p>②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p> <p>③ 공공성에 기반한 나의 생활을</p> |

| | | |
|--|---|---|
| 체계 구축 ④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⑤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및 평가 체계 확보 | 워크를 구성한다 ⑤ 공공영역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수탁을 확대한다 | 변화시키는 사회적경제 ④ 시민이 함께 성장(양적 지원) 하는 사회적경제 ⑤ 내가 주인이 되는 사회적경제 |
|--|---|---|



②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포럼 진행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으로 진행함 (자료집 참조)

③ 6.13 지방선거 공약 전달 간담회

① 정의당

- 일시 : 5월 23일(수) 11시
- 참석자 : 정의당 임승준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집행위원장, 박용원 사무국장 / 전국YMCA연맹 류홍번 정책실장 / 사단법인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 한국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② 녹색당

- 일시 : 5월 23일(수) 13시
- 참석자 : 녹색당 하승우 정책위원장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집행위원장, 박용원 사무국장 / 사단법인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장건 이사장

③ 더불어민주당

- 일시 : 5월 31일(목) 9시30분
-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회수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유영우 공동대표, 박용원 사무국장 / 사단법인시민 김전승 이사/홍사단 사무총장 / 사단법인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범용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옥 사무국장 / 전국민주시민네트워크 권혜진 위원장



→ 지방선거 이후 정당과의 정책 협의, 공약 이행 제고를 위한 자리 마련 논의

3)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 중간점검

1. 목적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7년 4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민간의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세 정당과 정책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고
- 후속 세주 정책으로 2018년 2월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6월에는 인재양성 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음
-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년여간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에 가져온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이러한 점검과 진단, 평가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수립경과 및 주요 정책 현황

- 1) 정책 제안(17. 04.)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2) 정책 협약(17. 04.) : 더불어민주당, (구)바른정당, 정의당
- 4)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 10.) : 관계부처 합동
- 5)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 02.) : 관계부처 합동
- 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방안(18. 06.) : 관계부처 합동

- 이 외 2018년 6월말까지 수립, 추진된 정부 각 부처/정부기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시책추진현황 파악

3. 평가계획의 개요

| 구분 | 반영평가 | 이행평가 | 당사자 설문 | 전문가 설문 |
|-------|--------------------|--------------------|--------------------------------|--------------------|
| 추진 목적 | 연대회의 정책제안 반영 정도 평가 | 활성화 정책의 이행 정도 점검평가 | 당사자 입장에서 활성화 정책 평가 +현장진단과 과제도출 | 전문가 시각에서 활성화 정책 평가 |
| 추진 방법 | 정성/정량평가 | 정성/정량평가 | 평가 설문 및 집담회 | 평가 설문 |

4.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1) 반영평가(정성/정량평가)

① 목적

- 2017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안한 사회적경제 정책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당초 민간의 의도와 구상, 제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

② 방법

- 연대회의의 정책제안을 기초로 정책제안의 반영 여부 및 반영 정도를 평가
-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연대회의의 정책제안의 의도, 구상이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평가
- 연대회의의 정책위원으로 평가작업반(3~4인)을 구성하여 1차 평가작업 진행
- 연대회의의 회원단체에 회람하여 1차 평가 보완

③ 실행

- 연대회의의 대선 정책 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점검
- 연대회의의 사회적금융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점검

2) 이행평가(정성/정량평가)

① 목적

- 2017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후속 정책의 방향 및 세부 과제별 이행 수준은 어떠한가?
- 이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문제인가? 국회의 문제인가? 민간의 문제인가?

② 방법

- 국회의 협력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립 : 활성화 방안에 따른 부처별 이행 계획 및 추진 결과
- 연대회의 정책위원으로 평가작업반(3~4인)을 구성하여 1차 팩트 중심 (정량)평가 후 정성적 진단평가 및 제안/과제 작성
- 연대회의 회원단체에 회람하여 1차 평가 보완

③ 실행

-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현황 확인(정부 자료 요청)

3) 당사자평가(설문조사 + 평가집담회)

① 목적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어떠한가? 활성화 정책은 현장에 어떻게 수용되고 인식되고 있는가?
- 현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촉진, 끌어내고 있는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가? 성과와 한계, 과제는 무엇인가?
- 새로운 정치, 정책 환경에서 사회적경제 당사자, 민간의 도전, 성과, 한계, 과제는 무엇인가?

② 방법

-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정책위원회가 지원
- 설문조사 및 평가집담회(워크숍)를 통해 정량/정성적 평가 진행
- 당사자 조직 및 지역 중간지원기관 등 지역별로 평가단 구성
- 설문지 (초안) 작성 후 30케이스 파일럿 조사 후 수정 보완 및 확정 후 본 조사 진행
- 분석/보고서 작성 및 연대회의 회원단체/평가단에 조사결과 회람하여 수정 보완

③ 실행

- 지역별 정책 집담회 및 설문조사 진행
- 지역별 집담회 총 10차례 진행 : 8월28일 전남, 8월30일 대구, 9월3일 제주, 9월4일 부산, 9월7일 충남/경남, 9월11일 서울/충북, 9월12일 전북/광주
- 설문조사 기간 : 2018년 9월 ~ 11월 9일 / 설문조사 방법 :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97건) 및 온라인 설문조사(33건)

4) 전문가 평가(설문조사)

① 목적

-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구체 내용 및 집행과정과 정책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② 방법

- 전국의 사회적경제 유관 연구자, 전공과정 개설대학 교수진, 교육자 등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평가단 리스트업 및 전문가 평가를 위한 평가지(초안) 작성
- 평가지 확정 후 전문가에게 발송 및 취합, 분석작업 진행

③ 실행

- 설문조사 기간 : 2018년 11월 16일 ~ 12월 2일 /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총 22명 참여 : 대학, 교육, 연구기관 연구자, 교육자 7명 /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자, 정책담당자 7명 /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책임자 7명, 기타 1명

4) 제도개선 관련 활동

① 사회적기업 등록제, 법인격 좌담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4일 | 김대훈, 변형석, 문보경, 안인숙, 박용원, 회원단체 정책 담당자 등 약 15명 |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 사회적경제기업 법인격 신설 |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등록제로 전환하여 법인격 부여하는 방안 필요
- 현재의 제도로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가 사회적기업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까에서 고민이 시작됨
- 등록제를 통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이 적절함
- 사회적기업을 더욱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도 등록을 하도록 모을 수 있음
- 육성법 설립시 인증제가 맞는다고 평가했는데 현재는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음
- 현장에서는 양적으로 증가시키려고만 하는 사인으로 읽힐 우려가 큼. 명분이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함

②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8월 24일 | 임종한, 김기태, 강민수, 마성균, 신창섭, 정순문, 안인숙, 박용원 등 약 40명 | - 협동조합기본법 2.0 시대를 준비하자 |

○ 주요 내용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이 경과한 지금,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전히 심각한 제도적 장벽이 있음
- 제도개선 의제를 발굴,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국회사회적경제포럼
- 주관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10월 4일 | 김보하, 권세진, 서형수, 변철환, 유영우, 김기태, 강민수, 정순문, 김경환, 안인숙, 박용원 등 약 40명 | -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

○ 주요 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 제안
- 주최 : 서울특별시, 경기도
- 공동주관 : 서형수 국회의원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후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③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토론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11월 22일 | 김활신, 박노근, 최영미, 김준영, 이성중,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박용원 등 약 30명 |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 |

○ 주요 내용

- 일자리창출은 정체되고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민관 모두가 나서야할 중요한 사회적 화두임
-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기업, 노동자협동조합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 노동자협동조합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 논의
- 주최 :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주관 : 국회사회적경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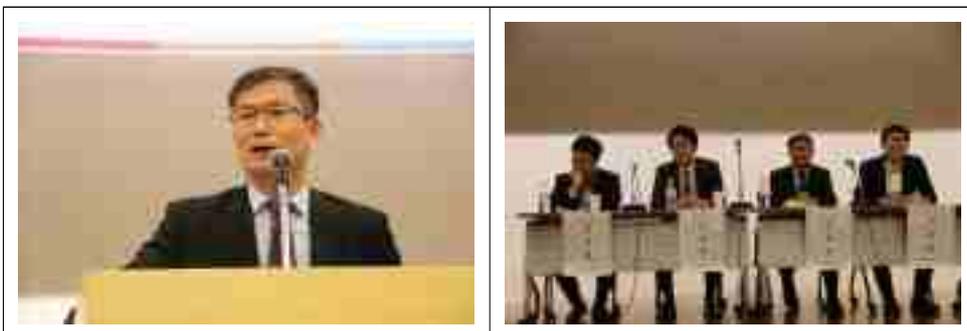


④ 국회사회적경제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3일 | 협동조합 정책 담당자, 박용원 | -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

○ 주요 내용

- 협동조합 정의와 목적 : PECOL 및 유럽 7개국 사례가 주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는 함의
- PECOL협동조합 거버넌스 연합회 법제가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주는 시사점
- 주최 : 국회사회적경제포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후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토론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18일 | 안인숙, 박용원 | - 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 서울의 사회적문제와 협동조합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

○ 주요 내용

- 민선 7기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의 사회적 문제 전반을 진단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모색, 서울시 제2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과 시민이 맞이한 서울의 사회적 문제
- 주최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후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나는조합



⑥ 논평 및 성명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하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 제안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극화, 승자독식의 폐해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사회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

성화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재벌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운동장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출한 특별제안이 어제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충실하게 반영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승자독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선언적 수사로는 가능하지 않다. 헌법, 법률, 제도로써 공정한 경제질서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 '상생'하고자 할 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깊은 성찰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같은 방향에 입각해 나온 헌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후 헌법 개정추진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촉구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그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하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경쟁과 독식의 경제를 협동과 상생의 경제로 혁신해 나가는 큰 길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분발 할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체의 기존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상향 하고,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한다고 합니다.
2.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 운영하는 (주)한두레는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형 선불식할부거래사로서 이를 일반 상조 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3.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제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으로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현재 연합회 소속 9개 회원조합, 조합원 3500명으로 성장하였고, 1500여 건의 장례를 가족의 마음으로 치러왔습니다. 뒷돈과 리베이트를 배격하고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로 장례를 치러 조합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합원이 매달 내는 상포 갯돈의 50%를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고 리영희 선생, 백남기 농민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증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들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 왔고,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과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남은 분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신청을 받아 ‘공영장례’(2018년 5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줄곧 이웃의 비극과 불행을 빌미로 돈벌이 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 장례’를 표방하면서 고비용 병원장례에서 벗어나 가정장례와 마을장례를,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는 녹색장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를 선도해왔습니다. 추모영상, 조문보, 가족추모식,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편지로 남기는 ‘메모리얼 포스트’ 등 허례허식과 의전중심의 장례를 바로잡기 위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의 결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앞에 조합의 운명이 걸린 큰 난관이 가로 놓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운영하는 ‘더불어삶 상포계’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7월, 불가피하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해 (주)한두레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도 온갖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50%를 예치해왔습니다. 현금유동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는 건실한 조합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토록 바라는 모범적인 ‘상조회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상조 회사들이 회원들에게 거둔 선수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고, 과도한 영업비와

광고비, 판공비로 낭비하고, 신규 사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가 날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 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법에 자생적으로 부패한 상조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중액 방식만으로는 상조 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 회사들의 배를 불러줄 뿐입니다. 법적규제 만이 아니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처럼 건실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통해 혼탁한 상조사업 시장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량한 상조 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10일

2) 사회적경제 이슈와 전략과제를 제안하고 공유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사회적경제 이슈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을 마련하고, 회원단체 및 친구단체 등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실천을 논의한다. ▪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 건설 및 정책 추진체계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좋은 일자리 ·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전략 · 청년과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신설 법인격 | <p>과제별 TF나 분과에서 학습회, 토론회, 포럼 등의 양식으로 활동을 공유한다.</p> |
|---|--|

1.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2017년에 이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 기획하여 2018년까지 총 8회 운영 중

| 일자 | 참석 | 개요 |
|--------|--|------------------|
| 3월 30일 | 김용기, 김동곤, 이상진, 문보경, 하정은, 김대훈, 양동수, 박학양, 변형석, 안인숙, 박용원 등 약 120명 | - 사회적 금융의 쟁점과 과제 |

○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담론 생산, 사회적 경제 정책 쟁점을 의제화하고 공론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싱크탱크 등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강화
- 한국금융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사회적금융 : 김용기(포용금융연구회장,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방향 : 김동곤(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금융의 현황 및 과제 : 이상진
- 공동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포용금융연구회
- 후원 : 행복나래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11일 | 성경룡, 김영식, 유정배, 김현철, 최영미, 홍수열, 하재찬, 주수원, 김제선, 안인숙, 박용원, 정당별 정책 담당자 등 약 80명 |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선거와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7개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 제안 - 각 지역별 사례 발표 - 각 정당별 의제 발표 |

○ 주요 내용

- 수동적 대외의존과 시장경제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역주민의 연대와 협동,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여야를 망라한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정책선거로 유도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
- 공동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후원 : 행복나래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4일 | 김완배, 변형석, 김영주, 김의영, 전성환, 이은애, 정태인, 김영식, 김재경, 옥세진, 류홍번, 안인숙, 박용원 등 약 15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향후 과제 - 협동조합자치구 영국 램세스 사례를 통해 본 지역혁신 실험과 성과, 시사점 - 서울지역 발전전략으로서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6년과 2기 신전략 |

○ 주요 내용

- 민관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민민거버넌스는 준비되어 있는가
-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채택을 유도. 지방선거 이후 지역발전 성장동력의 핵심 정책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것이 목표
- 논의를 위해 지역 차원에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전략을 택한 사례 발굴 필요
-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 고려, 내발적 발전을 지향한 사례가 유효함
- 사례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개념화하는 작업 부족함, 범위를 줄일 필요 있음
- 질 높은 담론뿐 아니라 지속해서 환기하고 주지시키는 것 중요함
- 지역의 조직들은 각자 활동은 열심히 하나, 하나의 자기 비전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됨. 지역적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

- 공동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리은행, 행복나래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17일 | 이목희, 김인선, 길현종, 최영미, 최재직, 송유정, 조금득, 임경수, 박강태, 강보배, 안인숙, 박용원 등 약 100명 | -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의 목표를 세우거나, 성과를 진단할 때, 시장경제조직에서 적용하는 고용률, 실업률에 입각 고용지표가 미진하다거나, 취약계층 일자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수준으로 일자리의 '질' 이 평가받아왔음
-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거나, 프리랜서들의 파편화된 노동에 '협동조합' 거버넌스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내는 등 기존 고용지표와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의 유형과 평가기준을 재점검
- 한국 사회적경제 일자리 현황 및 쟁점
- 노동자협동조합 사례 공유 및 제언, 프리랜서 협동조합 일자리 사례 및 제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례 공유 및 제언, 청년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례 공유 및 제언,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례 공유 및 제언
- 공동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후원 : 행복나래



| 일자 | 참석 | 개요 |
|--------|---|----------------------------|
| 12월 6일 | 김대훈, 김영식, 윤순희, 이현민, 김재경, 박용수, 이원찬, 안인숙, 박용원 등 약 80명 | - 현장이 말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

○ 주요 내용

- 現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집행의 거버넌스, 정책 방향, 진행상황, 역할, 효과 등을 현장의 의견을 통해 점검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 거버넌스 구조, 제도와의 관계, 지역 연계, 민간 협력 지원 등의 논의를 통해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 제시
- 공동주관 : 국회사회적경제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후원 : 행복나래, 우리은행



활동 1 지역 협의체 구성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 목표 지역 협의체 건설 및 네트워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집중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협동조합전국연합회 건설을 지원한다.
- 진행 지역위원회와 집행위원회 협력 사업으로 진행
- 내용 준비회의 결합, 지역 방문 및 활동가 교류회 개최

■ 집행

1.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건설을 위한 논의 과정 참여

-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참여, 연대회의와 협의회 관계 및 역할 제언
- 협의회 발기인 대회(4월 24일), 정책토론회/워크숍(8월20일, 9월10일, 11월22일)
- 전국협의회와의 역할과 연대회의와의 관계 설정 등의 과제 확인함.

활동 2 회원 확대

- 목표 지역과 부문별 회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진행 연대회의의 조직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내용 소개자료 다시 만들기, 부문과 지역, 업종별 탐색

■ 집행

- 회원 현황 변화를 반영하여 연대회의 소개자료 편집 보완하여 사용함
- 신규회원 가입 4곳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사회혁신금융,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활동 3 연대회의 회원으로서의 공감대를 높이는 기회 마련

- 목표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사명과 목적을 소통하고, 인적으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기념주간 행사,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한다
- 진행 사회적경제인 선언, 우수 사례 공유, 현안에 대한 입장 공유, 우리의 길 모색

1.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in DAEGU

① 민관 공동추진위원회 참여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 7월 | 안인숙, 박용원 | - 박람회 프로그램 확정 및 세부사항 조율 |

○ 주요 내용

- 민관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민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마을기업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대경협동조합연합회

(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대구광역시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자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행사) 사단법인 인디053





② 사회적경제 선언문, 보고서 제출_ 별첨

③ 사회적경제 역사관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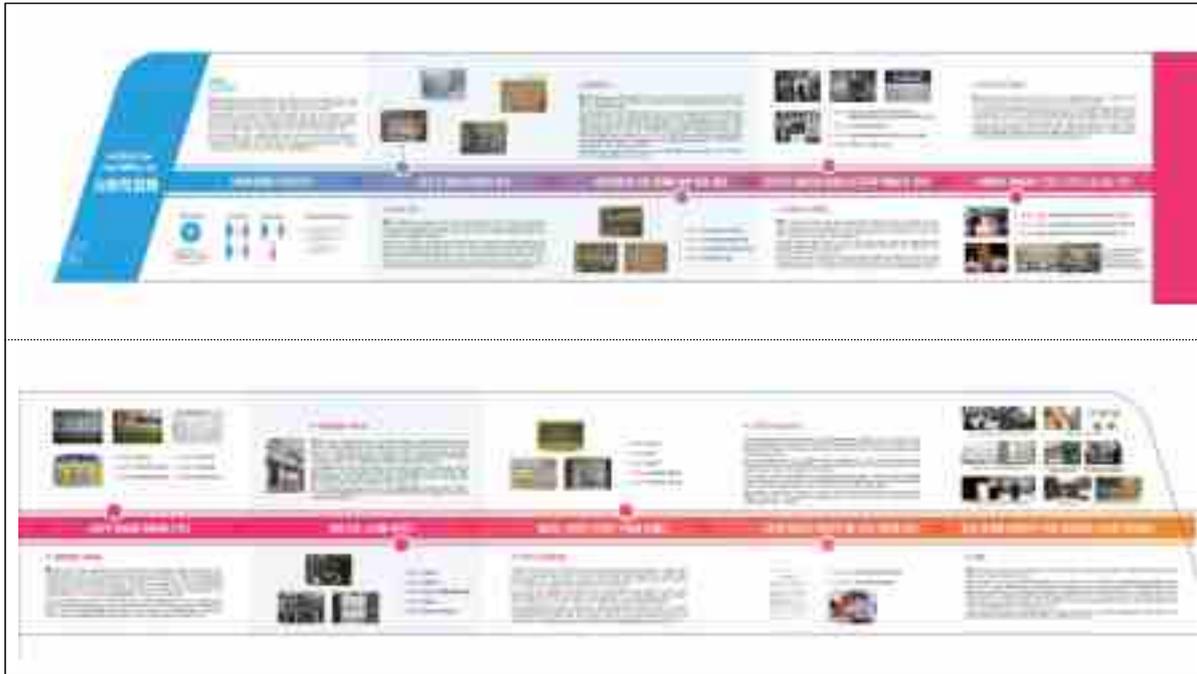
① 추진 경과

- 2018년 7월 13일부터 개최되는 통합박람회에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알리는 역사관을 설치하는 바, 역사관에 전시될 콘텐츠-전시물의 내용과 형식-를 생산하기 위함
- 역사관 내방객은 일반 시민들, 특히 아동·청소년을 동반하는 시민들이 주가 될 것이므로 그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는 기획이 요구됨
- 역사관의 주요 컨셉, 한국 사회적경제 역사의 시기, 한국 사회적경제 역사의 개념 및 범주 기획

② 참여자

- 신명호(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김정원(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위원), 최준(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 김이경(모심과살림 연구원)

| | |
|--|--|
| | |
|--|--|



2.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11월 2일 (1박2일) | 전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약 120명 57개 신탁, 약 80명 | - 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 |

○ 주요 내용

- 2018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변화의 전략으로서의 유의미성을 확인
- 핵심 이슈인 ‘기금’ 과 ‘사회적 가치 평가’ 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
- 주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주관 :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실행위원회
(신탁중앙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후원 : 신탁중앙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사람과 경제

■ 프로그램 소개

- [SE TED] 생협, 신협,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시민사회 각 부문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고, 연대에 기초한 비전은 무엇인지 5분 TED 방식으로 발표됩니다.
- [주제발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성 형태와 방법에 대해 제안됩니다.
- [발제] 다양한 자금해결 경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자금'조성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네트워킹] 신협 사회적경제 거점신협과의 만남과 유쾌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분임토의] 분임토의를 통해 2019년 우리가 실천할 전략과제가 무엇인지 도출될 것입니다.
- [현장보고서] 2018 사회적경제 중간점검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 [우리의선언] 내가 느끼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모아 우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1일차 - 11월 2일(금)

| 시간 | 내용 | 장소 |
|-------------|---|---------------------|
| 13:30-14:00 | ○ 참가자 접수 | |
| 1부 | | |
| 14:00-14:20 | ○ 개회식 | |
| 14:20-14:40 | ○ [SE TED] 사회적경제의 지향과 실천 전략의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변영석 상임대표 ■ 한국YMCA전국연맹 - 류종번 정책기획실장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안승용 사회적경제추진반장 | ①동 국제회의실 (예인행사장) |
| 2부 | | |
| 14:40-15:10 | ○ [주제발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모을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보경 상임이사(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연대회의 금융TF) | ①동 국제회의실 (예인행사장) |
| 15:10-16:30 | ○ [발제] 사회적경제 안의 자금수요 해결 경험 사례 공유 및 새로운 시도들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생활안전망 / 유유미 사무국장 (전국주민협동연약회) ■ 기관 및 사업소개 / 김선영 팀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설립 및 운영계획 / 김영식 간사 (한국사회적기업대기금발기연회) ■ 상호부조회 공유자금 공동조성 계획 / 신재민 기획전략실장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 및 거점신협의 역할 / 정복수 지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 16:30-17:00 | ○ 휴식 및 분임토의장 이동 | |
| 17:00-18:00 | ○ [분임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금들이 어떻게 쓰여야 할까? ■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무엇에 쓸 것인가? | ①동 교육동 (분임토의실) |
| 3부 | | |
| 18:00-19:00 | ○ 저녁식사 | |
| 19:00-21:00 | ○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거점 신협과 지역의 만남 ■ 활동가 교류 프로그램 | ①동 연회장 (저녁식사, 네트워킹) |

2019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2일차 - 11월 3일(토)

| 시간 | 내용 | 장소 |
|-------------|---|------------------------|
| 8:00~9:30 | ○ 아침식사 | ①동 : 식당 |
| 4부 | | |
| 9:30~10:30 | ○ [분임토의 발표] 2019년 실천 과제 | ②동 국제회의실 (메인행사장) |
| 10:30~10:50 | ○ [현장보고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점검 현상이 말하다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
| 10:50~11:20 | ○ [우리의 선언] 나에게 사회적경제란? ■ 이재찬(중국사회적경제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 |
| 11:20 | ○ 폐회 | |

○ 프로그램 구성(신협)

사회적경제 활동거대회 및 신협 사회적경제 부문별 교육

21일차 : 11월2일, 금

| 구분 | 활동거대회 | 신협 | 비고 |
|-------------|---|-------------------------------|--------|
| ~8:30 | | 장소 및 명단인사 | |
| 11:00~11:30 | | 활동거대회를 안내 | 회합, 선동 |
| 11:30~12:00 | 계환사 | | 회합, 선동 |
| 11:30~11:40 | 2019 TRIC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같은 변화의 필요와 과제 | | 회합, 선동 |
| 11:40~12:10 | 11:40~11:45 | 11:40~11:45 제1회(가)사회적경제포럼 | 최봉희 |
| | 11:45~11:50 | 11:45~11:50 주시백의 사회적경제포럼 | 서원호 |
| | 11:50~11:55 | (중 - 쉬) | |
| | 11:55~12:00 | 11:55~12:00 생협(분산연) | 손기영 |
| | 12:00~12:05 | 12:00~12:05 학교협동조합 | 조수현 |
| | 12:05~12:10 | (중 - 쉬) | |
| | 12:10~12:15 | 12:10~12:15 동문사회적경제협동조합 | 윤유경 |
| | 12:15~12:20 | 12:15~12:20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이해 | 김은민 |
| 12:10~12:30 | 12:10~12:30 저녁식사 | | |
| 11:00~11:05 | 11:00~11:05 [새도위원회] - 사회적경제를 지원할만한 지역사, 연보 및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 회합, 선동 |

22일차 : 11월3일, 토

| 구분 | 활동거대회 | 신협 | 비고 |
|-------------|--|---|--------|
| 10:30~11:00 | [현장보고서 발표-공급] 현상, 일반 활동거대회, 활동거대회의 분임토의 결과물 공유 | | 회합, 선동 |
| 11:00~11:30 | [현장보고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고 없고? - 고영숙 생협(분산연)(사회적경제연구소) | [장문위원(여)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를 위한 고영숙이 만난형 이영민 손혜희 - 현장 활동거대회 및 주시백(협동조합) 특강 | 회합, 선동 |
| | [공공의 현장] 나에게 사회적경제란? - 이재찬 생협(분산연)(사회적경제연구소) | | |
| 11:00~11:30 | 회합식사 | | |



○ 분임토의 내용

| | |
|--|---|
| 1조 | <p>서울협동조합협의회, 충북사람과경제, 이로운넷, (사)중구사회적경제마을, 안성의료사협, 공공디자인이즘, 상록수협동조합, 사회투자지원재단</p> |
| <p>1. 자금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경제 성장 단계별(창업, 긴급운용자금/신용보증, 성장기) 자금 수요 차이를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기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단계: 소액 필요/ 공간 지원금 필요(공공상가 ok) -성장기: 큰 금액 필요(자산화-부동산 매입) ① 인력양성 기간 고려한 인건비 지원 필요(기술 습득 시간) ① 시설 지원: 성장 단계별 시설 수준과 규모 차이 고려 ① 지역개발, 공공개발에 사회적경제 결합해 일자리, 지역재생 모색 <p>2. 우리돈 만들기와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명 뽀뽀한 자금 : 대출자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 ①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전문 조직 육성 ①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우리돈을 만들어 실험적 시도, 정부 협상력 높이기 ① 사회적경제 확대를 위한 캠페인 시도 ① 중개조직 설립 필요 : 자금의 지속적 조성을 담보하는 것 필요/ 전문적 운영 필요 ① 검증된 사례를 확대하는 것에 투자 활성화 필요 ① 개인과 조직이 지출하는 민간 보험료를 모아서 규모있게 사용하는 상상 필요 ① 다양한 큰 민간 기금과 개별의 자본을 결합하는 노력 필요. 즉, 관건은 '돈-유의미하게 규모 있는' ▶ 부동산, 금융 분야 진출 필요 <p>3. 운영상의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모화를 위해 민간+정책 기금 통합 필요 | |

- ① 신뢰 관계에 기초한 우리돈을 운영하는 경험을 많이 구축해야 함.
- ① 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임성 필요/ 모금 확대를 위한 모금 전문가 필요
- ① 기업(조직)을 위한 돈과 개인을 위한 돈을 분리해 운영하는 시도 필요, 점차적으로 함께 운영 모색

5조

주제와 무관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 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 ① 우리에게 자금이 정말 필요할까 무엇을 위한 자금 조달인지 논의 더 필요
- ①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킬 자금 운영 매니저, CFO가 필요하다.
- ① 사회적 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
- ① 사회적 기금 형성, 과영 당사자를 위한 것인가?

통합6조

1. 자금 조성 현황

- ① 한국사회혁신금융(서울) : 회원제 모집(회원 수가 관건). 관계금융 기제로 리스크 분산 관리/ 재원은 출자금과 회사채
 - ① 한국사회혁신금융(경기)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재원은 임팩트투자금(민간*)+클라우드펀딩(증권형)
- ref)민간*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기업(예탁결제원), 개인자산가, 대기업 등
- ① 협동조합함께주택 : 재원조달은 출자금(임대보증금과 건축비로 사용함)/ 토지는 정부 제공+ 조합원 출자금으로 마련
 - ① 희망만드는 사람들: 재원은 상담료(수수료)- 상담료 부담 주체는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과 단체들
 - ① 용산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정부보조금+ 프로젝트 사업비/ 신규사업으로 컴퓨터 재생(장애인 공동작업장형)
 - ① 의료사협연합회 : 회원기관 회비+공동 사업+후원금
 - ① 협동조합 상록수(마을디자인) :귀농귀촌교육 후 생산품 유통 및 수익 분배+공동 사업장 운영+ 정원 등 생태 공간 조성 사업(공공사업)

8, 9조

최봉섭, 윤미라, 박종숙, 신명화, 김윤경, 김경환, 박혜전

1.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사회가치연대기금 3,000원 자금을 활성화시켜 사용해야 한다.

- ① 의료사협 : 회원조합 21개 후원기금 모금 시도한 바 있음
- ①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선불식상조회사 운영/ 조합원 출자운동 시도하는 중. 이때 목적이 분명해야 함/ 실험 사업 이용/ 신뢰할만한 조직에 기금 운용 맡겨야.
- ① 함께주택협동조합 : 대출 통한 기금 모집/ 주택저축예금상품 만들기(실험과 함께)
- ① 주민협동연합회 : 출자금, 후원금, 사회적협동조합 구성하여 기부금 모으기
기금 유통을 이한 단위조합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2. 어떻게 쓸 것인가?

- ① 의료인 양성을 위해 : 교육, 장학금 등
 - ① 법정 자본금 : 새로운 사업운영 고민 중(장례식장 등), 사회적경제 연대 컨소시엄 방식 활용하여
 - ① 시장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에 활용할 것임.
 - ① 주민협동 실험 창립 : 주거 의료 대출사업/ 의료 공제상품 개발하고 싶음 (치과 등)
 - ① 협력과 연계 : 의료, 상조, 주거 협력 필요
 - ① 학생 학업 공간 만들기
- 어렵지만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해서 나갑시다!!

12, 13조

1. 어디에 쓸 것인가

- ① 긴급자금 대출. 규모별, 주요 조달처별 구분 필요
- ① 투자 같은 장기 용자금
- ① 용자, 보증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장기용자 투자방식)
- ① 실손보험 대신, 크지 않은 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위해 사용
- ① 사회적가치 활동에 투자. 예) 작은 장례식장 겸 장례문화센터
- ① 사회적 가치 혁신 사업. 예) 취약계층 장례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운영 자금
- ① 공동주택 매입. 공동의 사업으로 개발하여 출자금 조성
- ① 공익적 프로젝트(자산화, 공동사업). 사업인허가 자격,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치원 건립 등
- ① 대출은 개별 사경 조직보다는 여러 사경조직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대출을 중심으로 거점 시설 등에 대한 대출
- ① 자산화+합재(공동) 사업

2. 어떻게 모을 것인가

- ① 도시재생 예산 활용-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3% 예산
- ① 공적자금+선도기업 등의 출연+ 민간 자금. 평가체계 마련해야/ 정부의 return보완
- ① 착한 자본의 유입
- ① 경상이익에서 분담금 내기+ 상호거래 발생이익(협업촉진 효과)+지출 비용 중 공유자산화 방식
- ① 사회적금융 플랫폼 구성
- ① 운영주체별 : 전국기금 SWAP▷지역기금 매칭▷지역공제회 조직(3천만원 이내)지역공제회 조직
- ① 규모별 : 1~3천만원 : 공제회 지부
 - 3천~3억원 : 신탁 대출+ 신보
 - 3억~10억원(정부보조연계용자) : 공유자산 전세담보/지역기금
 - 10억이상 : 인내자본(도매금융), 기금의 SWAP
- 대출제외 사회적경제 조직 : 지원센터 인큐+사회적 가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을 선다면, 시간대 그리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무한하다면, 한낮은 피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활동가대회는 60여의 일이 뒤집지만 함께 있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땀과 소리는 강기에 남아있습니다.

2019 대회, 반대로 함께 일하시는 사회적경제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질가에 주신 격려와 후원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모두 활동가인 거대한 한이름을
소중한 자리입니다. 정감있고,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주게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한정사) 대표

사회활동가 지원과 활동가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하고, 큰 영향을 다시 주는 '재능기부'는
지속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서울지역활동가협회) 대표

사회적경제 수혜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앞으로의 기대입니다.

홍기영 (희망연대) 대표

이런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활동할 것 기대합니다.
정말 기쁘고, 앞으로 기대합니다. 꼭 꼭 꼭 꼭
꼭 꼭 꼭 꼭

최수영 (서울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

전일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를 통해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욱 (신협중앙회) 대표

사회적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어나신 활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우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대표

2019년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집행위원회

Ⅲ. 소통 채널 강화

활동 1 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과의 공식적 채널을 구축한다

1) 정부/정당에게 당사자 대표성을 지닌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한다

- | | |
|------|---|
| ▪ 목표 | 중앙의 거버넌스 통로 구축하여 회원 조직의 의지와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사회가치기금추진단,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회연대경제지 방정부협의회, 각 정당 |
| ▪ 진행 | 회의 참석, 토론회/ 간담회 실시 |

1.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1) 위원 참여

변형석(한기협), 김재경(커뮤니티와 경제), 윤봉란((사)살림), 최영미(가사노동자협
회), 안인숙

2) 활동 내용

① 정기회의 및 분과 활동

- 정기회의는 2017년 12월부터 월 1회 진행함
- 사회적경제 금융, 인재양성, 자활 활성화 등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
책 계획에 대한 자문 수행

② 분과를 구성하여, 부처별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 자문을 수행함. (전문위원
이외에 인원 추가하여 구성)

- 등록제 관련 제도개선분과 : 김혜원, 변형석, 양동수, 박향희, 김성기, 강대
성, 이종수
- 좋은 일자리분과 : 길현중, 김형미, 박강태, 변철환, 이정봉, 정광호, 정혜경,
최영미
- 전달체계 분과 : 김재경, 윤봉란, 하재찬, 박용수, 김태인, 김정목, 안인숙
- 금융 분과 : 변형석

2.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

1) 위원 참여

이상진(한국혁신금융), 하정은(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이현민(전
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 활동 내용

- 월 1회 정기 회의 : 기금의 법적 형태 논의, 연대회의 의견서 제출
- 간담회 : 기금의 법적 형태 및 운영계획 관련 간담회 제안하여 실행(6월13일)
- 연대회의 대표자워크숍에서 경과 보고하고 이사추천 및 출자 관련 논의 진행

3) 결과

-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기금에 연대회의 추천으로 이사(최영미, 이현민) 배출
- 2019년 1월 23일 기금 출범식 공동 주최
- 재단법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력사업을 모색하기로 협의함.

2) 범사회적경제 진영의 연대를 위한 활동 전개

| | |
|------|--|
| ▪ 목표 | 사회적경제 내에 있으나 관계 형성되지 않았던 신흥중앙회, 농협중앙회, 그리고 시민단체 및 노동계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
| ▪ 진행 | 신흥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기획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시민네트워크 등과의 면대면 접촉과 협력 사업 진행 · 「시민운동/사회적경제」, 「노동운동/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 ▪ 내용 | · 신흥, 농협과의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실시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와의 지방선거 대응, 사회적금융 등에 관한 협력 |

1. 신흥 사회적경제추진반

- 금융 관련 협의
- 교육위원회 워크숍 협력
-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협력
- 향후 거점 신흥과 지역네트워크 연계 활동 모색 중

2. 시민사회단체활성화네트워크

① 구성

[시민사회단체] 이태호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김홍철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연대회의 정책위원 / 윤기돈 사)시민 운영이사 / 정선애 한국시민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 박승철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마을공동체] 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5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일함) /
김중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관

[국제개발협력] 오순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회적경제]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② 취지 및 활동

- 시민사회연대회의는 기존 시민운동조직의 연대체로서 각종 현안대응 및 대변 활동 중심
- 다양한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우산조직으로서 역할 하고자 결성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추진 (시민사회활성화 전국 간담회, 법안 검토 등)

③ 그간 연계 활동

- 정기회의 3차례 참석, 활동공유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정책위 공유/지방선거 공약 공유)
-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개념과 지향에 관한 명제’ 를 준비 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음. 전국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에서 사회적경제 소개

3. 지속가능발전목표시민네트워크 KSDGs

- 워크숍 참석
- 지속가능발전목표 사례집 발간 참여하고 사례집 공유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꿈’ 사업 협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경제를 통한 정체성 실현을 돕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모금회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 모금회와의 협력회의 진행하고 ‘나눔과 꿈’ 배분 사업 파트너 기관으로 사업 홍보, 참여 독려 활동함.
- ‘나눔과꿈’ 사업 설명회 공동주최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20일 | 하재찬, 안인숙, 박용원 | - 나눔과꿈 사업소개 - 사회적경제 이슈(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

○ 주요 내용

-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출현 등에 따른 배분 영역 확대
-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글로벌,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수요 대응
- 공동모금회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 가시화 시도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참여성과

- 사회적경제 분야 : 2018년 2개 선정 → 2019년 10개 선정



6. 전국지역리더대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12일 | 지역재단, 서울시기획조정실, 서울사경지원센터, 지역순환경제센터,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용원 |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서울대회 기획회의 |

- 전국지역리더대회 서울대회의 취지와 성격, 가안으로 잡은 <지역상생과 도농공생의 시대를 향하여>, 그동안 틀에 기초한 대회 진행구성(안) 등을 설명
- 사회적경제 분과 : 지역과 사회적경제의 관계에서, 가능하면 서울의 사회적경제활동이 여하히 지역과 연계를 맺을 것인가, 서울의 사회적경제활동을 더 잘하게 하는 방안, 지역간 사업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함. 서울이 지역과의 사업을 잘하게 한다면 서울과 지역 서로에게 도움이 됨. 즉, 일반적인 사회적경제보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타 지역 사회적경제과의 관계를 잘하게 한다면 의미 있음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13일~14일 | 지역재단, 서울시기획조정실, 서울사경지원센터, 지역순환경제센터,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자치분권시대, 서로살림, 함께행복' |

- 서울과 지역, 농촌과 도시의 순환과 공생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지역리더 교류 한마당
- 사회적경제 분과 : 지역상생&도농공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모색
- 서울을 살리는 지역·지역을 살리는 서울, 지역의 필요와 사회적경제가 만날 때, 지역을 넘어선 청년 기업들의 연대, 도농 공생을 위해 필요한 것, 사회적경제 지역 간 연계를 위한 생태계 구축
- 주최 : 지역재단, 서울특별시
- 주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치와협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위즐소사이어티,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서울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청년교류공간, 지역재단 청년네트워크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7. 경제 교육 포럼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5일 | 서형수, 김정우, 정무경, 임종한, 최종민, 조현경, 주수원, 송경용, 안현호, 심재학, 배성호, 김종국, 안인숙, 박용원 | -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이기적 개인에서 협력적 사회로 |

○ 주요 내용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평화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듯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를 경제의 중요한 원리이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도 시급히 서둘러야 하고, 또한 충실하게 그 내용을 만들어가야 함
- 삶으로서 교육, 인문학적 교육이 평생학습과 맞물려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 이론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임
- 주최 : 서형수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 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후원 : KB금융공익재단,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



8. 남북교류 협력 사회적경제 포럼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18일 | 임종한, 최현호, 해피브릿지, 정명기, 안인숙, 박용원 외 약 40명 | - 사회적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 |

○ 주요 내용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현재 전면적인 경제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남북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준비들이 필요
- 연대와 공동체의 번영을 중요시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이 독일 통일과 오늘날 강한 독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통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논의
- 주최 : 김두관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 주관 : 남북교류협력 사회적경제연대(준)
- 후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동영 의원실



IV. 조직 운영

활동 1 사무국 업무 안정화

회원조직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

- 목표 연대회의 활동 상황을 전달하고, 회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결속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 진행 이메일을 통한 활동 소식 정기적으로 전달
- 내용
 - 회원조직 방문 연 1회 이상
 - 휴면 조합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하고 참여 독려
 - 위원회 및 분과 활동 참여자 발굴

■ 집행

1) 회원 조직 방문

- 정부정책 중간점검 현장 집담회 10회 진행
- 잦은 업무 협력 미팅
- 휴면 기관 상담 연 2회 실시

활동 2 위원회 및 분과의 활동

1) 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 목표 회원의 참여로 이뤄지는 위원회가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월1회 정기적 개최
- 진행 정책위원회: 제도개선, 정책일반 연구, 청년위원회 인큐베이팅 등
- 내용 지역위원회: 지방선거, 지역조직 건설, 지역전략 연구
교육위원회: 교육 네트워크 구성, 인재양성 체계 연구
사무국: 회의자료와 회의록 작성 및 공유

1. 총회

1) 정기 총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3월 9일 | 27개 단체 약 40명 참석 | - 안건 내용 |

- 임원선출
- 사업평가와 계획 승인
- 신규회원 가입 승인

2) 대표자워크숍 (하반기 총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30일 | 임종한, 박준홍, 유영우, 변형석, 하재찬, 문보경, 유유미, 최영미, 강은경, 이상진, 김대훈, 김동규, 박범용, 김기태, 김경환, 문홍석, 최현수, 이현배, 강순원, 김호영, 김현철, 신명호,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상황 - 2018년 사회적경제 보고서에 따른 후속 활동 논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간평가 실행 검토 - 신규 회원단체 승인 논의 |

○ 주요 내용

-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발기인을 추천하고, 초기 출연금을 조성하여 참여
- 초기 출연금은 기금에 대한 추가 설명회를 마련
- 2018년 보고서는 통합박람회 민간추진단과 논의하여 각 부문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결과를 모니터하도록 함
- 중간점검 수준으로 진행하며 정책평가 사업비의 일부 특별회비를 마련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원단체 승인

3) 위원회

운영위원회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4일 | 임종한, 박준홍, 변형석, 유영우, 이현민, 김경환, 강은경, 김동규, 박범용, 문보경, 최영미, 문재형, 김대훈, 안인숙, 박용원 | - 제7회 전국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제안 및 정당 협약식 논의 - 사회적경제 기념행사 관련 논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및 협력 방안 논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지지 방안 논의 |

○ 주요 내용

-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정책 작업 시작함. “777”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7대 생활 분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약 정리. 각 단위별로 공약을 취합하였고, 지역적 내용을 제외한 공통공약들을 정리함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년 평가를 추진.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현안 평가를 수집해 가기로 함
- 7대 공약의 주제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
- 박람회를 통한 선언문 발표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노력은 필요함
-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 ‘나눔과꿈’ 사업을 진행하면 공동모금회와 협력의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것임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14일 | 임종한, 유영우, 박범용, 문보경, 김동규, 박강태, 이현배, 최영미, 강은경, 안인숙, 박용원 | - 활동가 대회 제안 -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요청한 이사 2명 추천 -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 출연금 조성 |

○ 주요 내용

- 기금 발기인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금 운영 내용이 없음. 내용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이사를 추천하기는 어려움
- 또한 연대회의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연대회의가 지역대표를 추천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함. 지역이사의 대표성을 보증하는 것이 연대회의의 쓸모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임

- 연대회의 회원을 위해 기금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금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졌을 때 발기인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함.
- 기금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상황.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하고, 기금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가야 함
- 연대회의의 쓸모가 무엇일지. 사회가치기금은 당사자를 품어야 함. 각 부문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연대회의는 명확히 알아야 할 때임. 기금에 대해 바라는 바가 이런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제시해야 함
-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출연에 대한 동인이 없어졌다고 봄. 또한 기금의 사용자가 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금 사용자로서의 자기 역할-기금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을 하면 되는 것
- 대표자 회의에서는 출연에 관한 결정이 있었지만 그때 기금에 대해 기대했었던 바가 있었고, 초기출연금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현장 조직이 일조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되었던 것임.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음
- 출연 여부를 떠나서 하반기 기금이 추진되는 동안 그 기금이 현장에 신뢰를 두고 의미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은 중요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15일 | 임종한, 이현민, 김기태, 안인숙, 박용원 | - 활동가 대회 제안 -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요청한 이사 2명 추천 -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 출연금 조성 |

○ 주요 내용

-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음. 연대회의 운동성을 기반으로 우리 안에 기금에 대한 목적과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함. 연대회의가 기금 이사로 참여해야 함
- 현장에서 필요한 긴급자금 사용 등이 가능할 것인가, 기존 기금의 처리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 연대회의는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관찰할 수 있을지 고민이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기금 안에서 실현시켜야 함
- 14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연대회의가 기금에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길 요청함
-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만들어진 과정 및 사회가치연대기금 참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김기태 소장이 문건을 작성하고 간담회를 열기 제안 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10월 22일 | 임종한, 유영우, 이현민, 변형석, 박범용, 김동규, 박향희, 우은주, 최영미, 김기태,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담회 (송경용, 김영식, 김정현 참석) -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요청한 이사 2명 추천 -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 출연금 조성 |

○ 주요 내용

-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업 계획 설명&질의응답
-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역할
 - ① 첫 번째 다른 자금과 겹치지 않도록 : 자본시장에 있어서 최후의 위험 부담을 연대기금이 하려고 함(Final Risk-Taker)
 - ②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 Pricing 적용 : 재무적으로 튼튼한 경제조직은 적정 수익률을 재무적으로 약한 조직에는 낮은 수익률을 부담, 연대의 역할
 - ③ 세 번째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키우고 자생력을 강화 : 도매기금 역할
- 이사 추천(부문별 인원수는 확인 필요함), 후보는 임종한 상임대표, 안인숙 집행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결정
- 사회적 금융과 사회가치기금 운용/거버넌스 관련한 내용을 생산하는 단위를 구성. 우선 금융TF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금융TF와 논의할 것

| 일자 | 참석 | 개요 |
|---------|--|---|
| 12월 10일 | 임종한, 유영우, 이현민, 하재찬, 박범용, 문보경, 김동규, 박향희, 이현배, 김경환, 권종탁, 박용원 | - 연대회의의 활동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 주요 내용

- 연대회의의 역할 논의
 - ① 사회적경제 현장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 ②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회원참여 전략을 마련한다.
 - ③ 지역별, 업종별, 부분별 멤버십 구조를 확장한다.
 - ④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로 개편한다.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박강태, 권종탁 참여, 그 외 상임대표와 사무국에 위임

정책위원회

1) 위원

위원장 : 김대훈(아이쿱지원센터(협))

위 원 : 강민수(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 정창윤(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현경(한겨레사회경제연구소), 최영미(가사노동자협회),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 김호영(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수원(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현배(주민신협), 김현철(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2) 총평

활동은 두가지 방향, 첫째 거시적 정책 제안과 둘째 제도개선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회의와 소그룹 활동을 병행하였다.

2017년 대선에 제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협약 내용과 반영·이행과정을 평가한 ‘정부정책 중간점검 보고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제출이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제도개선과제를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 협동조합 부문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하는 후속 활동도 전개했다.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연대회의 정책활동은 거시적 접근에서 세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할 시기이다. 사회적경제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가는 전략을 제시하는 즉, 일반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라 모델을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는 종합정책을 만드는 작업보다는 제도개선과 통합적인 정책 모니터와 아젠더 형성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정기회의

| 일자 | 참석 | 개요 |
|--------|---|--|
| 3월 29일 | 강민수, 이현배, 오춘희, 김대훈, 이상진, 정창윤, 최영미, 김동언, 주수원, 안인숙, 박용원, 윤모린, 박은경 | - 2018년 연대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정책위원회 활동계획 논의 - 각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정보 공유 및 대응 논의 - 지방선거 대응 공동/지역별 정책개발 활동계획 논의 |

○ 주요 내용

- 홈페이지 정책 제안란 활용,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 보강
- 연도별 제도 개선 사항 확인 및 정리
- 대응을 위한 워킹 그룹 구성 : 기존 제도 개선 부분(강민수, 주수원, 오춘희+사무국), 공통 제도 개선 부분(김대훈, 김동언, 이원배, 이상진+사무국)
- 정부 내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 TF 현황 및 민간 참여 현황 파악
- 각 정책 생산 단위 회의 내용(쟁점 포함)정리 공유
-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공약 정리
- 4월 4일(수)지방선거 공통공약 워크숍 공약 취합(오춘희 : 의료복지, 주수원 : 학교정책, 김대훈 : 조례, 지역기금 등, 사회적기업 : 김호영, 마을, 농업 등 : 사무국)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26일 | 강민수, 김대훈, 조현경, 이상진, 정창윤, 최영미, 주수원, 김동언, 안인숙, 박용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대응 공통공약 논의 -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및 공약발표 내용 토의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현황 공유 및 토의 - 사회서비스분과 토론회 추진현황 공유 및 토의 |

○ 주요 내용

- 7대 공통 공약 취합
 - ① 사회적경제와 함께 만드는 현장기반(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 : 조현경
 - ②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조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정비 : 주수원
 - ③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부서 설치와 강화 : 김동언
 - ④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 : 최영미
 - ⑤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되는 지역기금의 조성하고 운영 : 이상진
 - ⑥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을 지원하는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 안인숙
 - ⑦ 지역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or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 강민수
- 부분별 공약(에너지, 교육, 주거(도시재생), 의료·건강, 돌봄(사회서비스), 먹거리, 소상공인) : 김대훈 정책위원장, 박용원 사무국장 취합
- 사회가치연대기금 및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소 급하게 추진되는 상황 우려. 회의 참석자를 통한 우려 지점 지속 전달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14일 | 김대훈, 최영미, 조현경, 오춘희, 이상진, 김동연,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상황 공유 -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1년 중간평가 논의 - 제도개선 과제 추진 |

○ 주요 내용

- 작년 정책 제안서가 현재 반영된 내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행요구에 대한 것은 됐는지, 안되었는지 수준으로 나올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되어있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점검해야 함
- 기본은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두고,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함
- 현장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현재의 사회적경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면 함
- 우리 자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계획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적 없었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추후 활동가 대회에서 활용되었으면 함
- 국회 원구성이 곧 될 예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대응 준비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28일 | 김대훈, 조현경, 오춘희,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정책 중간평가 계획 -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 포럼 계획 |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파악(김대훈), 부처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진행 중인 의제 파악(조현경)하여 관련 이행사항 국회에 자료 요청(사무국)
- 반영평가 작업 : 김대훈, 강민수, 이상진 + 조현경
- 이행평가 작업 : 정책위원 전체 참여(워크숍 필요), 분야별 정책 평가자 업무 분장(김대훈)
- 사무국 : 국회 자료 요청, 워크숍 계획
- 강민수, 오춘희, 주수원 1차 기획
- 8월, 9월, 11월 진행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20일 | 강민수, 김현철, 김호영, 조현경, 오춘희, 김동언, 최영미, 정창윤, 이현민, 주수원, 이현배, 이상진,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를 위한 집중 워크숍 |

○ 주요 내용

- 과제 : 지난 1년간 민간(연대회의)이 제안한 정책을 정부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현장, 당사자 조직의 평가,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활성화 방안)의 구체화 및 이행 관련 정보, 자료의 종합, 취합
- 반영평가(초안) → 이행평가(초안) → 당사자평가(설문조사) + 지역집담회 → 전문가평가(의견서), 핵심적 질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28일 | 강민수, 김대훈, 오춘희, 이상진, 최영미, 김호영, 주수원,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정책 중간점검 - 정책 이슈 공유 |

○ 주요 내용

- 설문 결과 보고 : 첫 번째 결과 공유 자리는 활동가 대회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음. 전문가 평가도 포함해야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과격적 평가라기보다 향후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니 11월에 토론회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임. 국감이후도 가능. 지방정부협의회 등과 작게라도 계속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으면 함
- 집담회 결과 : 지역 안에서 사경의 포괄범위와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정책이 현장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큰 사업들이 내려오는 것,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으로 변화자체는 체감하고 있음. 우리의 최종 목표, 대상이 정책인가? 라고 볼 때 이미 역동성으로 판은 커지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적어지는 것, 이것이 현재 연대회의에서 느끼는 위기임. 정책을 벗어나서 사업에 관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지. 3년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내다보고 대대적인 조직발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일자 | 참석 | 개요 |
|---------|-------------------------|-----------------|
| 10월 17일 | 강민수, 김대훈, 이상진,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정책 중간점검 |

○ 주요 내용

- 이행평가, 반영평가 진행 확인
- 당사자 평가 : 설문조사 내용 공유, 유의미한 지표가 드러났다고 판단되지 않음. 중요 이슈를 도출하는 형태로. 설문이 부족한 지역있음. 추가 필요. 현장 집담회 내용 재정리 필요

| 일자 | 참석 | 개요 |
|---------|-------------------------|---------------|
| 12월 21일 | 강민수, 조현경, 정창윤, 주수원, 안인숙 | - 2018년 활동 평가 |

○ 주요 내용

- 거시의 시대는 가고 세부적인 정책 대응의 시대가 온 듯
- 정책에 대해 ‘통합적’ 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정책 간 연결되어 있어서 부문/업종을 넘나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 포인트를 연결시키는 일 해야. 생활SOC, 커뮤니티 케어 등이 특히 그러하다. 주체와 대응 방식에 대해서 부문/업종 전략을 넘어선 종합적 검토 필요
- 유용하고 접근 가능한 분야를 추려, 미리 제기하고 운동이 일어나도록 촉진하고 조직하는 방식이 필요
- 정책위 구성, 각 부문 정책담당자가 모인다고 해서 되지 않을 듯. 기획 기능 중심으로. 부분 전문가 모아서 내용 확장하고 부담 줄이고
- 정책위, 부문별로 망라해서 모을 건지. 기획, 모니터, 공론장 만드는 역할 할 건지. 평가

교육위원회

1) 위원

위원장 : 박봉희 (의료시험연합회)

위 원 : 신재걸(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윤미(경남지원센터), 정선교(대학생협연합회),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송명성(전북연대회의)

2) 총평

교육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교육활동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내용을 구상하는 계획 속에서 상반기에는 ‘교육 담당자 워크숍’ 과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인재상’ 설문을 실시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는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당사자협의 회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고 보다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2019는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인재상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정기회의

| 일자 | 참석 | 개요 |
|-----------|------------------------------|---|
| 3월 16~17일 | 박봉희, 김유숙, 김윤미, 신재걸, 정선교, 안인숙 | - 사회적경제 교육 문제 의식 공유 -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사업기획 |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에 관한 철학, 지식, 태도를 지닌 사회적경제 인재상에 근거한 인재양성이 라는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학습리더 양성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요구와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생산 기획 제공
- 공감하는 조직과의 공동 기획을 통해, 해당 조직 참여자의 과제 해결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제 해결의 성과물을 다함께 공유하는 장 마련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18일 | 박봉희, 김유숙, 김윤미, 신재걸, 송명성, 안인숙, 박용원 | - 교육위 워크숍 후속 결과 점검 - 하반기 학습 및 사업계획 수립 |

○ 주요 내용

- 교육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욕구들이 발굴됨. 정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주체들을 발굴해야 함. 지역의 교육담당자들을 키워내야 하며 지역별 교육담당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면 함. 사회적경제 교육 제반에 대한 플랫폼 역할 필요함
- 워크숍 정리 자료에서 연대회의에게 요구된 것들을 정리, 성공·실패 사례를 모아보는 것, 1년에 2회 정도 교육담당자를 위한 워크숍 기획, 활동가대회와 접목한 교육 부분 기획

- 인재상에 대한 학습 필요함, 우리들의 이야기, 경험들을 꺼내 선행 정리
-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기준과 합의를 만드는 것 필요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20일 | 박봉희, 김유숙, 신재걸, 김윤미, 정선교, 송명성,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인재상에 대한 학습 및 논의 |

○ 주요 내용

- 인재상을 왜 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 인재상을 그려야 그것에 맞춰 교육을 구성할 수 있음
-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두고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는 방식
- 지식(사회적경제 운영 원리, 개념, 절차 등에 관한), 기술(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도구, 방법, 능력 등에 관한), 태도(마음가짐, 철학, 사상 등), 관계(동료와의 신뢰)
- 사회적경제 키맨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느슨하게 조사한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2차 조사하는 방법
- 각 단체별 100명 선정 온라인 설문 진행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27일 | 박봉희, 김유숙, 김윤미, 송명성,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인재상 논의 - 사회적경제교육 포럼 논의 |

○ 주요 내용

- 설문 추가 독려. 30, 40대 활동가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가의 의견 수집 필요
- 기재부쪽에서 주류 경제교육 단체 및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임
-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기재부가 후원하고 KDI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경제교육 관련 단체들의 민간협의체임
- 9월 초 정도 사회적경제 분야 경제교육 포럼 후원 형식으로 참여

| 일자 | 참석 | 개요 |
|--------|--|----------------|
| 8월 29일 | 박봉희, 신재걸, 정선교, 김유숙, 김윤미, 송명성,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인재상 논의 |

○ 주요 내용

- 30, 40대 설문 추가, 기존 받기로 했던 그룹은 계속해서 받기로
- 원래 세웠던 목표치 100인은 채우는 것으로
- 설문지 양식 수정 필요(연령, 성별, 현재 소속 추가)
- 설문지 취합 작업 필요(9월 13일, 대학생협 예정)
- 교육위 워크숍에서 지역의 교육담당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요청이 있었음. 교육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10월 10일 | 박봉희, 신재걸, 정선교, 김유숙, 송명성, 안인숙, 박용원 | - 사회적경제 인재상 논의 |

○ 주요 내용

- ‘활동가 100인에게 묻다’ 설문조사 정리
 - ① 핵심가치 : 연대, 민주성, 공동체, 사회정의, 공공성, 생태주의, 호혜성, 협동, 혁신, 지역중심, 균형감, 상생, 창의성, 공유, 공정성, 관계성, 자립, 협치, 사람중심, 도전, 존중, 이타심, 도덕성, 사명, 책임감, 주체성, 신뢰, 미래지향, 인내, 포용, 공감, 긍정성
 - ② 핵심역량 : 의사소통, 학습능력,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민주적 리더십, 통찰력, 성찰, 갈등관리, 촉진, 네트워킹, 기획력, 정보 및 도구 활용, 분석력, 추진력, 의제 발굴, 협상
-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각 5개씩 추리는 2차 설문 진행

| 일자 | 참석 | 개요 |
|---------|--|-----------------------|
| 12월 14일 | 박봉희, 신재걸, 정선교, 김유숙, 송명성, 김윤미, 안인숙, 박용원 | - 2018년 활동 평가 및 사업 계획 |

○ 주요 내용

-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가 있었음
-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음. 교육담당자를 지역별로 세우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전국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장의 사회적경제 교육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음. 전국조직의 교육위원회라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함
- 내년에 현장과 어떻게 연동하여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과정을 함께한 것 기억에 남을 것
- 19년 계획 :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진행, 지역별 교육 담당자 발굴, 사회적경제 교육 정책 모니터링

※ 인재상 설문조사 경과

1. 1차 설문조사(2018년 6월~7월)

-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전략 수립의 전단계로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을 위한 활동가 100인에게 묻다’ 설문 진행
- 1차 설문조사 내용

| | |
|--|----------------------|
|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가치관, 자세 등) | |
| 핵심 가치 | 주요 내용 / 선정 이유 |
| | |
|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기술, 정보 등 전문성) | |
| 핵심 가치 | 주요 내용 / 선정 이유 |
| | |

- 총 70명 참여를 통해 키워드 정리
- ① 핵심가치 : 연대, 민주성, 공동체, 사회정의, 공공성, 생태주의, 호혜성, 협동, 혁신, 지역중심, 균형감, 상생, 창의성, 공유, 공정성, 관계성, 자립, 협치, 사람중심, 도전, 존중, 이타심, 도덕성, 사명, 책임감, 주체성, 신뢰, 미래지향, 인내, 포용, 공감, 긍정성
- ② 핵심역량 : 의사소통, 학습능력,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민주적 리더십, 통찰력, 성찰, 갈등관리, 촉진, 네트워크, 정보 및 도구 활용, 분석력, 추진력, 의제 발굴, 협상

2. 2차 설문조사(2018년 8월~11월)

- 도출된 키워드 중 우선순위 선정
- 2차 설문조사 내용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 5가지 선택해주시시오)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5가지 선택해주시시오)

- 총 520명 참여를 통해 6대 핵심가치, 6대 핵심역량 선정

① 핵심가치 : **협동, 공동체, 연대, 사람중심, 공공성, 민주성**

② 핵심역량 : **의사소통,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네트워킹, 민주적 리더십, 갈등관리**

지역위원회

1) 위원

위원장 : 하재찬 (충북)

위 원 : 유정배(강원), 주영덕(경기), 김종수(충남), 박진영(대구), 이현민(전북), 윤봉란(광주), 조세종(대전), 김기태(세종), 김윤미(경남), 김태인(경기), 문보경(서울), 박찬무(충남)

2) 총평

2018년 지방선거 대응활동은 유의미했고, 향후 사회적경제가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대회의가 힘을 실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젠더 등 사회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트렌드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감수성을 높여가는 활동도 전국적으로 함께 벌여 나가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의 현황과 사례 공유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제는 지역의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현장의 전략을 공유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활동가들이 지역위원회에만 묶이지 말고, 연대회의 각 위원회와 분과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기회의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4일 | 하재찬, 김기태, 권세진, 박희성, 김태인, 김종수, 김윤미, 박진영, 안인숙, 박용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3 지방선거 지역 활동과 현황 -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협조 방안 - 공동모금회 협력사업 관련 논의 -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1년 평가 관련 논의 |

○ 주요 내용

- 충북 : 6월 4일 충북 교육감 등 정책제안 형태로 진행
- 대구 : 대구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구성, 협약식 진행
- 충남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정책위원회, 후보 공약 중 4대 정책 포함
- 세종 : 세종시사회적경제협의회 준비위 발족, 후보별 협약식 진행
- 경남 : 협약식 진행, 지역 변화 움직임
- 경기 :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와 공동 작업, 후보별 정책제안
- 광역과 기초의 역할(전달체계)에 대한 좌담회 14일(토) 오전 개최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논의
- 성공적인 공동모금회와의 사업 수행으로 지속적인 연계 구축 도모
- 우리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까? : 정책위에서 고민
- 1년 만에 평가를? : 점검, 모니터링 수준으로 진행
- 기금 조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 있음. 차라리 근거 법령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2) 조직적 실천 사항을 마련하는, 긴급 이슈 분과 운영

| | |
|-----|--|
| ▪목표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에 개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과 행동 방안을 도출한다. |
| ▪진행 | 이슈에 따른 실행 방안 도출 |
| ▪내용 | 사회서비스분과 (사회서비스사업연합, 통합돌봄센터 모델 추진) 자조기금분과 |

사회적금융TF

1) 위원

위원장 :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위 원 : 김동연(사회투자지원재단), 김재현(그래비스파트너스), 김혁(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노영한(신나는조합), 박향희(신나는조합), 변형석(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안준상(사회연대은행),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 이현민(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정은(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김동규(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 평가

① 성과

-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 : 사회적경제 기업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조직과 사회적금융 전문 조직(중개기관, 투자기관)
-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금융 및 자본 연대의 필요성을 공유
- 공동의 실천 활동으로 공제 영역을 확보하고 활동 팀을 구성

② 한계

- TF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음.
 - : TF는 사회가치기금과 관련 된 연대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이어야 했음.
 - : 연대회의의 의사결정 단위가 내용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느슨한 회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TF의 활동 내용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 또한 추진단의 일정을 쫓아 TF가 대응한 결과 TF의 판단이 우선되는 상황이 만들어 졌음.
 - 사회가치기금의 내용을 공동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인 구조
 - : 느슨한 회의체 방식으로 논점 이외의 대안을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 진행 중인 추진단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에 TF는 시기적으로 후행할 수밖에 없어 내용 주도성을 갖기 힘들.
- ※ 이런 경우 추진단 참여 인사들의 회의체를 마련하고 그 회의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참여시키는 구조가 좀 더 현실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3) 정기회의

| 일자 | 참석 | 개요 |
|--------|--|--|
| 3월 19일 | 문보경, 김동언, 강두진, 안준상, 이상진, 손영지, 김혁, 박향희, 노영한,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현황 공유 및 참여 방안 -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 주요 내용

- 추진단은 사회가치연대기금(가칭)설립 및 금융협동조합과의 연계 방안 연구를 9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 연구분야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성격, 기능, 업무, 법적형태 및 지배구조, 조성방안 및 운영체계, 금융협동조합과의 연계협력 방안임
- 기금 조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 있음. 차라리 근거 법령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제도 마련 중요함. 도매 금융을 고민함에 있어서 지자체를 고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필요함
- 굳이 지역의 자금을 중앙으로 올리는 것보다 기금 협력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고려 필요함
- 이 회의를 연대회의 내 자본연대TF 성격을 가져가기로 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16일 | 문보경, 김동언, 노영한, 안준상, 이상진, 하정은, 김선영, 김영식,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한 각종 이슈 - 분야별 이슈 발제 |

○ 주요 내용

1) 기금의 목적

- 금융 소외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이어야 한다는 점
- 기금의 조성방식, 용도, 운용에 있어서 혁신성을 담보해 정부정책자금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2) 기금의 성격이 ‘기업 금융’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사회목적 프로젝트, 지역기금 조성, 자조기금 조성 등에 대한 고려 속에서 정책기금과 차별성 없는 기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
- 정부기금 매칭 프레임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음.

3) 조직형태

- 보조금, 투자 등이 가능한 조직 형식이어야 함. 그런 점에서 재단법인은 투자 제한을 겪게 됨으로 적절한 조직형태는 아니라는 점. 따라서 특별법이 필요할거라는 점

4) 중개기관 인증 등

- 중개기관 인증 이전에 평가기준부터 마련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
- 중개기관의 인증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사숙고 할 것
- 중개기관에 대한 대손손실의 책임을 누구 질 것인가
- 중개기관 운영비 필요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31일 | 문보경, 김동언, 노영한, 안준상, 이상진, 변형석, 하정은, 김선영, 김혁,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연구팀(안) 검토 및 제안 - 연구팀과 간담회 추진 |

○ 주요 내용

- 사회가치연대기금 연구팀(안)에 법인격, 사회가치측정, 중개기관 육성 등에 대한 방향성 제시 필요하나, 내용 확인 어려움
- 사회가치연대기금 연구팀(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함
- 과정이 중요한 것은 인정함. 실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
-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내용, 방식, 조직화에 대한 논의 필요함
- 연구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연구팀(안)에 대한 의견(총론, 기금의 역할, 용도 및 성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제안문서 검토 의견, 총론, 기금의 역할, 용도, 성격에 대한 (안)을 만들고 TF명으로 제안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30일 | 문보경, 안준상, 하정은, 손영지, 김대훈, 김혁,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간담회 후속 대응 방안 - TF 구성 확대 재편 |

○ 주요 내용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보내고 상황을 공유할 필요 있음
- 추진단의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하여야 함

- 당사자 조직에서 배제된 마을기업, 자활 등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 추진단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기획위원회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현장 수요자 조직(협동, 마을, 자활 등) 참여 필요함
- 각 부문별 TF 참석 의사 확인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12일 | 문보경, 김동연, 하정은, 이상진, 변형석, 김혁, 노영한, 김동규, 박기홍, 안준상,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토론회 대응 방안 |

○ 주요 내용

-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보내고 상황을 공유할 필요 있음
- 기존의 심사기준과는 달라야 함. 사회적가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 연구진은 운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 우리는 가치 측정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 진흥원의 가치측정지표는 지원사업에 비중이 큼. 우리만의 지표를 산출하면 기금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봄
- 실행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음. 가능성과 내용을 보고 법인격을 판단해야 하나 판단 근거가 부족함
-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하는 자리였으면 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6월 19일 | 문보경, 변형석, 박향희, 김혁, 박기홍, 안인숙, 박용원 | - 공식질의서 및 추진단 회의 논의 |

○ 주요 내용

- 재단법인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안) 필요
- 연구팀의 (안)과 비교해보는 토론회 등 개최 고민
- 공식 질의서 제출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4일 | 문보경, 김동연, 안준상, 김재현, 이상진, 하정은, 박향희, 노영한, 김혁, 변형석, 안인숙, 박용원 | - 공식질의서 및 추진단 회의 논의 |

○ 주요 내용

- 공식질의서 전달 및 추진단 상황 공유
- 양동수 재단설립준비위원장과의 간담회
- TF의 역할 전환 결정. 향후 TF는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기금에 대한 안건은 다루지 않기로 하며,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자기계획과 관련 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7월 26일 | 문보경, 김재현, 하정은, 김선영, 김동규, 안인숙, 박용원 | - 김재현 대표(크레비스) |

○ 주요 내용 - 사례 학습 1

| 일자 | 참석 | 개요 |
|--------|---|--|
| 8월 27일 | 문보경, 하정은, 김선영, 김동규, 신재민, 박소담, 유유미, 안인숙, 박용원 | - 하정은 단장(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유유미 상임이사(전국주민협동연합회), 김동규(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

○ 주요 내용 - 사례 학습 2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21일 | 문보경, 하정은, 김선영, 김동규, 유유미, 김기민, 박종찬, 전우진, 여진, 안인숙, 박용원 | - 김기민 이사장(청년연대은행), 박종찬 팀장(한살림편당), 여진 사무처장(공익활동가사협 동행) |

○ 주요 내용 - 사례 학습 3

| 일자 | 참석 | 개요 |
|---------|--|---|
| 10월 22일 | 문보경, 하정은, 변형석, 김동규, 김선영, 이현민, 안인숙, 박용원 | - 사회가치연대기금 간담회와 운영위 결정사항 공유 - 금융TF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 주요 내용

- 도매기금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민간협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함
- 금융TF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것이 좋겠음
-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2-3개 되는 케이스를 확인해보고, 연대기금이 생기면 지역과 어떤 연결을 가져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 지역의 중계기관을 어떻게 만들지 그려볼 수 있을 것. 돈을 모으기 위한 고민 등. 현재까지 고민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거리가 나올 것
- 최대한 지역 금융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분석
- 도매기금 활용과 소매기금 연결 & 실천사례 보기, 대구의 지역기금 계획과 진행과정, 이슈에 대한 사례 공유하기로 함
- 공제조합 모임은 금융TF산하에 별도 모임으로 진행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종사자나 활동가들을 위한 공동의 공제 상품 개발 모색을 중심 주제로 한 공제조합 활동 주체들의 모임 단위를 구성하기로 함

| 일자 | 참석 | 개요 |
|---------|-------------------------|---|
| 11월 16일 | 문보경, 김선영, 김기민, 유진선, 안인숙 | * (가칭)공제조합추진단 - 공제조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 구성 - 공제조합 추진 실행방안 |

○ 주요 내용

- 사회보장, 사보험으로 대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완
- 대상자 연령, 직업, 사회보험 보장형태 등의 다양성
- 단일화된 조직(구조)가 아님으로 외부재정지원이나 정책적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 상호부조기금을 납부하는 납부자(기부자), 상호부조금을 지원받는 수혜자를 분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할 필요성 有
- 법률검토를 통한 외부동향 조사, 구매공제, 설계공제 사례 학습,개인상태 조사(사경 설문지, 자활공제 천원의행복 설문지 참고)

| 일자 | 참석 | 개요 |
|---------|---|--|
| 12월 19일 | 문보경, 하정은, 김선영, 김기민, 유유미, 유진선, 김동규, 여진, 안인숙, 박용원 | ※ (가칭)공제조합추진단 - 법률검토를 통한 외부동향 조사 -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호부조 실태조사서 공유 -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소액대출사업 대상자 조사결과 공유 |

○ 주요 내용

- 공제로 연대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함. 각 단체의 상품들을 공유해보는 것을 어렵지. 그 과정에 속에서 플랫폼 구성까지도 갈 수 있을 것
-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우선으로 명확해져야 함
- 플랫폼에 대한 고민의 기반은 어떻게 연대할까였음. 상품이 단순해야 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팀으로 구성할 것인지 등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됨
- 법 제정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지부터 확정을 지어보는 것 필요
- 모임의 목적 ‘왜, 어떻게, 무엇’ 을 우선 명확히 규정, 공동구매 방식으로 연대해보는 것까지도 고민

사회서비스분과

1) 위원

위원장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위 원 : 정영화(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병원(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오춘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장경익(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총평

사회서비스분과는 한시적으로 1년을 활동기간으로 잡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정부 정책과 논의가 ‘사회서비스원’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통적 복지기관 중심의 사고를 견지함으로써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차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을

정부에 제기한 점, 전국 단위의 주요 조직과 일부 지역조직이 결합한 점은 소정의 성과였다. 반면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해 사회적경제 스스로의 사회서비스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 참여단위가 협소했고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은 매우 아쉬웠다.

사회서비스는 특히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향후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업종-지역을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우리의 관점과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분과는 활동을 종료하고 정책위원회가 이 의제를 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정기회의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10일 | 최영미, 장경익, 정영화, 오춘희, 이병원, 박용원 | - 사회서비스 소포럼 대응 -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포럼 추진 |

○ 주요 내용

- 영역별로 논의 테이블이 상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난감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 민간 쪽에서는 천천히 접근하자, 적극적으로 접근하자, 조건이 이루어지면 진행 하자 와 같이 의견이 갈리고 있음.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임
- 포럼 참석해보니 상반기 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 선도 사업이 추진될 계획 있음 확인
- 연대회의 사회서비스분과 차원에서 의견 제시 필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효성 확인 필요. 사회서비스 관련하여 학습과 공유(포럼 등)사업 기획 필요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17일 | 최영미, 정영화, 오춘희, 이병원, 박용원 | - 토론회 기획 논의 - 사회서비스 분야 공약 논의 |

○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의미와 정부 역할,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
- 사회서비스진흥원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함. 폭넓게 가게 될 경우 애매할 수 있음

- 문재인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어디까지 왔나? 를 중심으로 분석, 비판하는 내용으로 또 하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기획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24일 | 최영미, 정영화, 오춘희, 이병원, 박용원 | - 토론회 기획 논의 -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상황 확인 및 선거공약 확인 - 복지부 사무관 미팅 논의 |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어디까지 왔나? 사회서비스 현안과 과제
- 각 영역별로 조례가 제안되고 있으니 사회서비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논의, 공동 작업으로 해보면 좋겠음
- 거버넌스,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진행상의 고충 등 나눔
- 보육, 의료복지, 돌봄(바우처), 가정내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특성화 컨설팅으로 인력양성교육을 제안

| 일자 | 참석 | 개요 |
|-------|-------------------------|--|
| 5월 3일 | 최영미, 정영화, 오춘희, 이병원, 박용원 | - 사회서비스 분과 포럼 '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어디까지 왔나? 사회서비스 현안과 과제' |

○ 주요 내용

-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에서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에서 진출 촉진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음.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현안과 과제를 짚어봄
- 주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춘숙 국회의원실
- 주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서비스분과(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일자 | 참석 | 개요 |
|-------|---------------|-------------------------------|
| 9월 4일 | 최영미, 오춘희, 이병원 | -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 - 일자리 의견서 작성 |

○ 주요 내용

- 연대회의의 평가작업에 발맞추어 사회서비스분과도 의견서 작성. 연대회의 집담회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집담회가 끝나면 자료를 정리하여 회의 개최, 의견서 논의
- LH와 접점들이 있으니, LH-사회적경제 협업 아이디어 공모를 같이 준비
- 일자리의제모임에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노협에 관한 의견문을 확정할 예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권한이 없어서인지 잘 보이지는 않음. 9월 중 범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계획이 발표될 예정
- 사회서비스에 관해 연대회의 내에서도 담론과 관심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련 사업조직이 적고 또 사업조직은 사업 현안이 많아 크게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됨
-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일자리의제모임에 그간 논의된 사회서비스 확충 및 관련 일자리 내용을 포함시킴

3)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집행력을 높인다

| | |
|-----|--|
| ▪목표 |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하여 큰 틀의 결정을 내리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재설치한다. |
| ▪진행 | 각 위원회 위원장, 분과장 및 운영위원 일부로 구성하여 월 1회 정기 회의 진행 ·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힘있게 진행한다. |
| ▪내용 | · 위원회 및 분과의 활동을 공유하며 협업력을 높인다. · 역동적인 환경에 시의성 있는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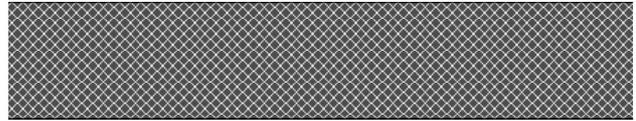
| 일자 | 참석 | 개요 |
|--------|--------------------|--|
| 4월 13일 | 김대훈, 하재찬, 안인숙, 박용원 | - 위원회 및 분과 활동 공유 - 사회적경제 공통 핵심 정책 과제 선정 - 사회적경제 기념주간 추진 기획 |

○ 주요 내용

- 정책포럼 진행 후 5월 초 정당 협약식 추진 예정
- 지역만의 이슈이지만 연대협력이 필요한 공약들을 모아내야 함
- 정책위 : 공약 정리, 지역위 : 지역 공약 공유, 사무국 : 취합 공약 전국 공유
- 대구 추진 계획(안) 공유, 실무추진을 위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
- 사회적경제 비전 선언 : 사회적경제의 존재 목표
- 상황이나 이슈를 보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 비전선언문과 연결 지어서 진행
- 지역 또는 영역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발표, 현황과 과제 점검

[안건심의] 1호의 안

2018년 결산보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년 수입결산

| 구분 | 관 | 항 | 목 | 예산 | 결산 | 비고 |
|----|------|------|------------|------------|-------------|--|
| | | 합 계 | | 87,000,000 | 109,720,648 | |
| 수입 | 이월금 | 이월금 | 이월금 | 2,281,746 | 2,281,746 | |
| | 회비 | 회비 | 미납회비 | 3,500,000 | 4,850,000 | |
| | | | 회원단체회비 | 50,000,000 | 45,160,000 | |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교육위원회 사업 | - | 7,850,000 |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참가비 4,250,000원+신협 3,600,000원) |
| | | | 박람회(대구) | - | 10,200,000 | 사회적경제 역사관-선언문-보고서 |
| | | | 사회서비스분과 사업 | - | 643,500 | 사회서비스 현안과 과제 토론회(사회서비스분과 분담) |
| | | | 행사참가비 | 6,000,000 | 1,540,000 | 지방선거공약 워크숍(140,000원), 활동가 대회(1,400,000원) |
| | | | 활동가대회 | 20,000,000 | 19,714,300 |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서울사회적경제센터, 신협사회적경제추진반 협력사업비 |
| | 후원금 | 후원금 | 단체후원금 | 5,000,000 | 16,096,000 | - 신협 후원(5,500,000원/미추홀, 동작, 가평, 서구, 의왕, 동수원, 안산중앙, 원당, 단원, 경기광주, 전주파티마, 광명, 믿음, 연수송도, 계양, 화성제일, 양촌, 화서, 만수중앙, 이천, 경기시흥, 장안, 주민) - 박람회 기획팀 후원(5,000,000원/신명호, 문보경, 김정원, 최준, 김이경, 안인숙) - 정책 집담회 후원(1,300,000원/전국주민협동연합회, 신나는조합, 사회투자지원재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사회적경제센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아이쿱프로젝트(3,416,000원) |
| | 잡수입 | 잡수입 | 이자수입 | 2,000 | 3,727 | |
| | | | 기타잡수입 | 216,254 | 81,375 | 캐시백 할인 등 |
| | | | 일자리안정자금 | - | 1,300,000 | 사무국장 일자리안정자금 신청(130,000원×10개월)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년 지출결산

| 구분 | 관 | 항 | 목 | 예산 | 결산 | 비고 |
|-----|-------|-------|-----------|------------|-------------------------------------|--|
| 합 계 | | | | 87,000,000 | 95,089,500 | |
| 지출 | 운영비 | 인건비 | 인건비 | 25,000,000 | 19,045,300 | |
| | | 법정복리비 | 퇴직적립금 | 2,500,000 | 2,200,000 | 적립 |
| | | | 사대보험료 | 3,000,000 | 2,268,360 | |
| | | 업무추진비 | 집행위원장 활동비 | 18,000,000 | 18,000,000 | |
| | | | 통신지원비 | 960,000 | 1,100,000 | |
| | | | 출장여비 | 1,000,000 | 1,224,940 | |
| | | 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 500,000 | 99,000 | 휴대용 녹음기 |
| | | | 복리후생비 | 500,000 | 500,000 | 명절 복리후생비 |
| | | | 기타수용비 | 500,000 | 494,710 | 홈페이지 연장, 명함 제작, 우편물 배송 등 |
| | | 사업비 | 회의비 | 총회 | 700,000 | 777,600 |
| | 대표자회의 | | | 300,000 | 894,010 | 워크숍 형식 진행(활성화 정책 중간점검 실행 계획, 사회적경제 보고서 후속 활동 논의 등) |
| | 운영위원회 | | | 500,000 | 1,654,920 | 이슈 대응에 따른 회의 횟수 증가(사회가치연대기금 등) |
| | 정책위원회 | | | 1,000,000 | 614,100 | |
| | 지역위원회 | | | 1,000,000 | 146,700 | |
| | | 교육위원회 | 500,000 | 949,530 | 이슈 대응에 따른 회의 횟수 증가(인재상 정립을 위한 설문 등) | |

2019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 | | | | |
|--|------------|------------|------------|-------------------|---|
| | | 집행위원회/분과 | 2,500,000 | 516,400 | 사회적금융TF |
| | | 사무국회의 | 200,000 | 140,300 | |
| | | 기타회의비 | 500,000 | 647,020 | 시민단체연대회의, 친환경자조금위원회, 신흥중앙회, 진흥원 등 |
| | 정책대응사업비 | 정책대응사업비 | 5,000,000 | 3,932,310 | 아이쿱프로젝트, 지역별 정책 집담회 여비, 시민행동 회의비 등 |
| | 활동가대회 | 활동가대회 | 20,000,000 | 19,714,300 |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
| | 공동협력사업비 | 공동협력사업비 | 2,000,000 | 1,670,000 | 시민행동분담금(1,000,000원), 협동2.0토론회 발제비(670,000원) |
| | 연대사업비 | 연대사업비 | 500,000 | 150,000 | SDGs 연회비 |
| | 교육위원회 사업 | 교육위원회 사업 | - | 6,450,000 | 사회적경제 교육담당자 워크숍 |
| | 박람회(대구) | 박람회(대구) | - | 10,200,000 | 역사관-선언문-보고서 기획, 원고료, 회의비 등 |
| | 사회서비스분과 사업 | 사회서비스분과 사업 | - | 400,000 | 사회서비스 현안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등 |
| | 예비비 | 예비비 | 340,000 | - | |
| | 기타잡지출 | 기타잡지출 | - | 1,300,000 | 사무국장 일자리안정자금 지급(130,000원×10개월) |
| | 이월금 | 이월금 | - | 14,631,14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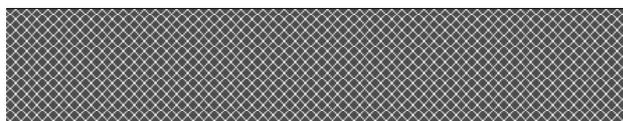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비납부 현황

| | 단체명 | 월회비 | 납부회비 |
|----|-------------------|---------|-----------|
| 1 |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회 | 100,000 | 950,000 |
| 2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50,000 | 600,000 |
| 3 |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 100,000 | 1,200,000 |
| 4 |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50,000 | 600,000 |
| 5 | 경동신협 | 100,000 | 0 |
| 6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50,000 | 600,000 |
| 7 | 논골신협 | 100,000 | 1,200,000 |
| 8 | 대경협동경제네트워크 | 50,000 | 0 |
| 9 |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 50,000 | 600,000 |
| 10 | 동작신협 | 100,000 | 1,200,000 |
| 11 | 두레생협연합회 | 100,000 | 1,200,000 |
| 12 | 사람과경제 | 30,000 | 360,000 |
| 13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50,000 | 600,000 |
| 14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50,000 | 600,000 |
| 15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 100,000 | 1,200,000 |
| 16 | 사회투자지원재단 | 100,000 | 1,200,000 |
| 17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50,000 | 600,000 |
| 18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50,000 | 0 |
| 19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50,000 | 600,000 |
| 20 |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 50,000 | 0 |
| 21 | 신나는조합 | 100,000 | 1,200,000 |
| 22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 500,000 | 6,000,000 |
| 23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50,000 | 250,000 |
| 24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50,000 | 0 |
| 25 |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 100,000 | 1,200,000 |
| 26 |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 50,000 | 600,000 |
| 27 | 장안신협 | 300,000 | 3,600,000 |
| 28 | 전국실업단체연대 | 50,000 | 0 |
| 29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100,000 | 1,200,000 |
| 30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50,000 | 600,000 |

| | | | |
|----|------------------|------------|------------|
| 31 | 주민신탁 | 100,000 | 1,200,000 |
| 32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 50,000 | 0 |
| 33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 50,000 | 600,000 |
| 34 | 커뮤니티와 경제 | 50,000 | 0 |
| 35 | (사)플뿌리사람들 | 50,000 | 0 |
| 36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 50,000 | 600,000 |
| 37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50,000 | 600,000 |
| 38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 200,000 | 1,800,000 |
| 39 |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 50,000 | 600,000 |
| 40 | 한국여성노동자회 | 50,000 | 0 |
| 41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70,000 | 840,000 |
| 42 |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 50,000 | 600,000 |
| 43 | 전국주민협동연합회 | 50,000 | 600,000 |
| 44 |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0 |
| 45 | 한국자활기업협회 | 50,000 | 0 |
| 46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200,000 | 2,400,000 |
| 47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50,000 | 600,000 |
| 48 | 한살림연합회 | 300,000 | 3,600,000 |
| 49 | 함께일하는재단 | 100,000 | 0 |
| 50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50,000 | 600,000 |
| 51 | 화랑신탁(단원신탁) | 100,000 | 0 |
| 52 | 한국YMCA | 50,000 | 600,000 |
| 53 | 한국사회혁신금융 | 30,000 | 360,000 |
| 54 | 경기도마을기업협회 | 50,000 | 200,000 |
| 55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200,000 | 1,400,000 |
| 56 | 환경정의 | | 0 |
| 57 | 나눔의집협의회 | | 0 |
| 58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 0 |
| 59 | 안중제일신탁 | | 0 |
| 6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0 |
| 61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 0 |
| 합계 | | 57,720,000 | 45,160,000 |

[안건심의] 2호의 안

임원선출



[심의안건] 2호의 안 _ 임원선출의 건

- 선출 사유 : 현행 정관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

정 관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7인 이내
2. 상임대표 1인
3. 운영위원 25인 이내
4. 집행위원장 1인
5. 감사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대표자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공동대표들이 선출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정회원의 추천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 ④ 운영위원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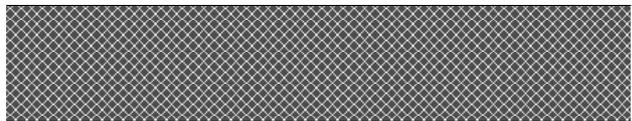
-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019년 추천회원 명단

| | 2018년 | | 2019년 | |
|-----------------------|---------------------|---------|--|-------------|
| 공 동 대 표 7 | 기본법/한국의료복지사회협연합회 | 임종한 | 기본법/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유영우 |
| | 사회적기업/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변형석 | 사회적기업/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변형석 |
| | 신협/논골신협 | 유영우 | 생협/ 신협/주민신협 | 총회 후 이점표 |
| | 자활/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박준홍 | 자활/전국자활기업협의회 | 오인숙 |
| | 지역/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송병주 | 지역/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 김혜경 |
| | 지역/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 송재봉 | 지역/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총회 후 |
| | | | | |
| 운 영 위 원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 김경환 기본법 | 지역 추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김동규 기본법 | | |
| |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 박강태 기본법 | | |
|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최영미 기본법 | | |
| | 한살림연합 | 곽금순 생협 | | |
| |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 박범용 생협 | | |
|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강은경 생협 | | |
|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 김진아 생협 | | |
| | 주민신협 | 이현배 신협 | | |
| | 사회투자지원재단 | 문보경 전문 | | |
| | 신나는조합 | 박향희 전문 | | |
|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강민수 전문 | | |
| |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 최현수 지역 | | |
| 감 사 | 임정빈 동작신협 | | 두레생협연합회 | |
| 지 표 위 원 자 | 안인숙 | | 안인숙 | |

[심의안건] 3호의 안

2019년 사업계획



[심의안건] 3호의 안 _ 2019년 사업 계획(안)

2019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업은 아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는 것을 목표로 수립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론과 전략의 생산자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과 조정을 해나갈 때의 이론적 기초와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간의 발전을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잃은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의 전개와 활동가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선제적인 정책 제안 활동이 요구된다.

(2) 거버넌스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대표성 상징

중앙 정부와의 거버넌스에서 단일하고 유일한 사회적경제 전국과 부문의 대표자로서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한다. 이를 위한 부문과 지역 협의 조직과의 논의구조를 공식화하여, 협의와 조정을 통한 공동의 정책과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목표가 되는 내용을 산출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참여와 인정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최대 연대의 전선

사회적경제 부문과 지역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연합체로의 발전을 전망하며, 이행과정을 설계해 나간다.

그동안 회원 조직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협약에 기초한 활동만으로도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자발성과 협의의 운영 원칙은 연대체의 뿌리에 전통으로 깊이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에, 당사자의 의지와 실천을 담보해 나가기 위한 깊은 협동과 의사반영 구조를 갖춰 나감으로써, 위임 없는 당사자성이 실현되는 구조로 개편하고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실천이 집단적 성과로 축적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회적경제 부문과 지역협의체의 지지자

부문과 지역의 이슈를 중앙과 전국의 이슈로 확장시키고 해결과정에 힘을 실는 동반자가 된다. 이를 위해 현장 이슈 및 현황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문과 지역의 이슈를 전국화할 때 기획 능력뿐만 아니라 합의와 존중,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규범도 형성해 가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결사를 통해 상호부조하고, 인간중심의 행동규범으로써 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화로서의-를 재조직하려는 시민사회의 대응이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부분적 해결책이 아니고, 시장과 정부의 작동 원리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시스템으로 현실화하는 실천력 그자체이다.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결사체 운동에 더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조직이 등장하여 저마다의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바야흐로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어 분주한 움직임과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2019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외부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칙을 뿌리 내리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다양한 실천적 도전을 수행할 시기이다. 이를 위한 연대회의의 활동 역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내생적 발전전략과 연대망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첫째, 정책활동은 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내부적으로는 부문과 지역의 정책을 발굴/협의하는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 파트너 및 채널 형성에 있어 범위의 확대와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책 발굴과 정책 내용 소통에 있어 부문과 지역의 소통 인프라 및 활동 담당 주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연대망 강화에 있어, 회원 정비 및 지역협의체 확대를 통해 지역 참여를 독려하고, 부문 및 기능별 참여 및 협의 활동을 확대해 간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우리가 위치한 영역, 시민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협력과 연대 전략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 바, 외부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이슈를 발굴하고 공동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목적 1 사회적경제 담론과 정책 생산

활동 1 정책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조정회의 진행

1)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조정회의 정기적 운영

- **목표** -부문과 지역의 제도개선 사항 확인 및 해결 방안 마련
-정부 정책 추진 상황 모니터하고 보완 사항 정리
-사회적경제 공통의 발전을 도모하는 아젠더 생성
- **진행** 월1회 정기적 개최
- **내용**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과제 점검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전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평가
-정부 정책사업과 사회적경제의 대응 관련 대응 전략 점검

2) 정책 내용 수집을 위한 조사 및 소통 인프라 조성

- **목표** 정책 기획을 위한 상시 정보 및 통계 획득을 위한 공간/통로 확보
각 이슈별 핵심 활동가 발굴, 담당자 확보
- **진행** 홈페이지 개편, 회의/좌담회 개최
- **내용** -홈페이지 제도개선 사항 수시 접수, 개선활동 공유하는 공간 추가
-부문과 지역과의 제도개선/정책 발굴을 위한 오프라인 회의구조 정착시키기

3) 정부정책 모니터링

- **목표** 분야별 모니터단 구성하고 정책기획위원회 및 각 위원회 협력 추진
- **진행** 분야별 년 1회
- **내용** -인재양성, 금융, 전달체계 등
-보고서 제출 및 공유

활동 2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 구체화를 위한 실천적 담론 형성

1) 쟁점 토론을 통해 담론과 전망의 소재를 발굴하는 월례회 개최

- 목표 현안과 이슈 및 담론 차원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과 토론 진행
- 진행 월 1회/ 운영을 맡아줄 회원 단체 섭외하여 진행
- 내용
 - 사회적경제의 본질, 시장과 정부의 실패의 보완제에서 시민경제로
 - 사회적경제와 젠더,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약속
 -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노동의 윤리와 일의 세계
 - 사회적경제와 민주주의의 진전
 - 사회적경제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평가지표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관성
 - 그 외

2) 현안과 정세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읽어내는 칼럼 발행

- 목표 주요 사회 이슈를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가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 시사
- 진행 월 1~2회

목적 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참여 구조화

활동 1 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및 아젠더 분과 구성

1) 각 위원회 정기회의

- 목표 정책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지역위원회, 사회적금융위원회
- 진행 정기회의 진행
- 내용
 -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 위원 친화력 증진을 위한 워크샵 권장
 - 위원회 성과물 외화하여 보람찬 활동 되도록 지원

2) 신규 분과 개설

- **목표** 공제사업추진단(기 구성), 추가 발굴하여 개설
- **진행** -주제에 따라 한시적 운영, 결과물 외화하여 이후 운동의 과제로 설정
 - 개설 필요한 아젠더 발굴 작업 (월례회, 정책기획회의 등을 통해)
 - 학습, 좌담회 등으로 진행

활동 2 경제적 참여 독려

- **목표** 회비 납부액/비율 높이기, 협력예산 증대
- **진행** 협력사업 제안하고 인적, 경제적 참여의 기회 제공
- **내용** 활동가 네트워크 사업, 정책 모니터, 토론회 등

활동 3 조직발전위원회를 통한 연대회의 조직발전 방안 제출

- **목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발전 방향 제시
 - 조직도 및 조직 방안 제시
 - 조직의 목적과 활동 재정립
 - 사명선언과 강령 그리고 활동/성과보고서 양식 제출
 - 정관 작성
- **진행** 대표단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학습 및 연구 작업

활동 4 회원확대를 위해 연대회의 활동과 사회적경제 정책내용 발신 강화

1) 사회적경제 내부로의 교신 강화

- **목표** 양적 증대
- **진행** 월 1회
- **내용** -연대회의 활동 소식과 사회적경제 뉴스 발송
 - 메일, 페이스북 이용

2)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상호소통 증진

- **목표** 멋지게, 아카이브 기능 강화, 일부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 **진행** 상반기 중. 회원기관 후원 혹은 기업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

2) 신협 등과의 협력사업 강화

- **목표** -신협 사회적경제추진팀과의 협력 사업
-사회적경제 거점신협 지역협의회와의 정기회의 진행
- **진행** 교육, 사회적금융 분야
- **내용** -교육위원회 워크숍 공동주최
-사회적금융위원회 참여 독려
-거점신협과 연대회의 지역협의회와의 소통 연계
-연대회의 회원간의 연계 협력 사업 발굴

활동 5 지역 회원과의 소통구조 강화

1) 사업 공유 및 평가를 위한 지역 간담회

- **목표** -사업공유 및 평가를 위한 지역 간담회를 실시
- **진행** 연 2회
- **내용** -연대회의 사업계획 공유하고 사업평가 받기
-지역

2) 위원회 및 아젠더 분과 참여자 확보

- **목표** 지역 16명, 분야별 각 명
- **진행** 지역을 다니면서 발견 및 차출 요청, 부문별 요청
- **내용** 위원회 및 분과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가 정보 제공 및 챙기기

목적 3 협력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활동 1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사업

1) 사회적경제 박람회

- 목표 조직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할 사회적경제 강령 및 네트워크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진행 추진위원회 참여

2)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등 내부이해관계자와의 협력사업

- 목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에 관한 대외적 인식 제고
- 진행 년 3회
- 내용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한기협,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와 공동 주최

3) 국회 사회적경제 포럼 등 외부이해관계자와의 협력사업

- 목표 국회 및 각 정당과의 협력 사업
- 진행 수시
- 내용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토론회 및 좌담회
-사회적경제 예산 분석 등
-각종 정책 사안 발굴하여, 국회 내 여론 형성

활동 2 사회적경제 친구단체와의 협력사업

1)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 목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실천의 네트워크 형성
- 진행 이슈 공유, 학습 및 교류

2) 지속가능발전시민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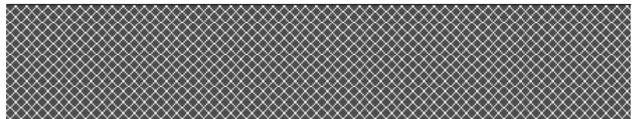
- **목표** 사회적경제 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확산과 적용
- **진행** 학습 및 교류

2) 사업 협약 맺기

- **목표** 여성단체와 젠더 이슈 대응하기 위한 사업협력 약속하기
정책 제안활동의 법률적 검토/자문을 위한 사업협력 약속하기
기타
- **진행**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동천 등과 업무협약

[심의안건] 3호의 안

2019년 예산(안)



[심의안건] 3호의 안 _ 2019년 예산(안)

2019년 수입예산(안)

(단위:원)

| 항 | 목 | 2018년 결산 | 예산 | 비고 |
|----------|-----------|--------------------|--------------------|---|
| | 합계 | 109,720,648 | 100,000,000 | |
| 이월금 | 이월금 | 2,281,746 | 14,631,148 | |
| 회비 | 미납회비 | 4,850,000 | 3,300,000 | |
| | 회원단체회비 | 45,160,000 | 50,000,000 | 2017년 4,000만원 |
| 사업 수입 | 교육위원회 워크숍 | 39,947,800 | 20,000,000 | ✓ 2018년 사업수익 총액 약4,000만원 ✓ 교육위원회 워크숍외 확정 사업 없음 |
| | 박람회 | | | |
| | 서비스분과포럼 | | | |
| | 행사참가비 | | | |
| | 활동가대회 | | | |
| 후원금 | 단체후원금 | 16,096,000 | 12,000,000 | |
| 잡수입 | 이자수입 | 3,727 | 3,852 | |
| | 기타잡수입 | 81,375 | 65,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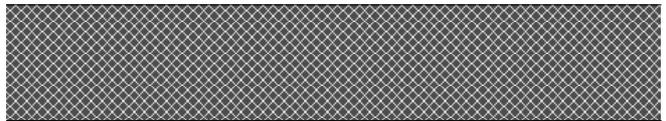
2019년 지출예산(안)

(단위:원)

| 관 | 항 | 목 | 예산 | 결산 | 비고 |
|-------------|------------|-----------|------------|-------------|-----------------------------|
| 합계 | | | 95,089,500 | 100,000,000 | |
| 관 영 비 | 인건비 | 인건비 | 19,045,300 | 30,000,000 | 250만×12월 |
| | | 퇴직적립금 | 2,200,000 | 2,500,000 | |
| | 법정복리비 | 사대보험료 | 2,268,360 | 2,500,000 | |
| | | 집행위원장 활동비 | 18,000,000 | 18,000,000 | |
| | 업무 추진비 | 통신지원비 | 1,100,000 | 1,200,000 | |
| | | 출장여비 | 1,224,940 | 2,000,000 | |
| | | 사무용품구입비 | 99,000 | 100,000 | |
| | 수용비 | 복리후생비 | 500,000 | 1,000,000 | |
| | | 기타수용비 | 494,710 | 1,000,000 | 회계사무위탁 연 60만 |
| 총회 | | 777,600 | 1,000,000 | 연2회 | |
| 사 업 비 | 회의비 | 대표자회의 | 894,010 | 5,000,000 | 조직발전위원회 사업 |
| | | 운영위원회 | 1,654,920 | 1,500,000 | 15만×10회 (총회준비위원회 포함) |
| | | 정책위원회 | 614,100 | 2,000,000 | 협력조정회의 5회×20만/ 정기회의 |
| | | 지역위원회 | 146,700 | 500,000 | 분기별 4회 정기회의 |
| | | 교육위원회 | 949,530 | 1,000,000 | 월 1회 정기회의 |
| | | 금융TF | 516,400 | 1,000,000 | 사회적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월 1회 공제사업추진단 |
| | | 사무국회의 | 140,300 | 500,000 | |
| | | 분과 | 0 | 2,000,000 | 신설 |
| | | 기타회의비 | 647,020 | 800,000 | 내외부 이해관계자 협력회의 2만×40회 |
| | | 행사비 | 정책대응사업비 | 3,932,310 | 26,000,000 |
| | 활동기대회 | | 19,714,300 | | |
| | 공동협력사업비 | | 1,670,000 | | |
| | 연대사업비 | | 150,000 | | |
| 교육위원회 사업 | 6,450,000 | | | | |
| 박람회(대구) | 10,200,000 | | | | |
| 사회서비스분과 사업 | 400,000 | | | | |
| 기타 | 기타 | 1,300,000 | 0 | | |
| 예비비 | 예비비 | 0 | 400,000 | | |

[심의안건] 4호의 안

회원가입 승인의 건



[심의안건] 4호의 안 _ 회원가입 승인의 건

1.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가입신청서

| | | | |
|-----------------|-----------------------|--------|---|
| 단체명 | 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 웹사이트 | |
| 전화번호 | 044-415-2521 | 팩스번호 | |
| 대표자명 | 김대형 | 전화번호 | 010-4009-1011 |
| | | E-mail | kdh1997@naver.com |
| 주소 | 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197 | | |
| 회원수 | 1,514개사('18년) | 조직유형 | ①연합조직(협의체) ②지역네트워크/ 지역협의체 ③단위조직 ④전문·기능조직 ⑤기타 |
| 주요 활동내용 | 별첨 | | |
| 회비납부 | 월(10)만원 최소회비 5만원 | 납부방식 | 매월 납부 (○) |
| | | | 연회비 납부() * 12개월 선납 |
| 연대회의 참여 대표자명 | 김대형 | HP | 010-4009-1011 |
| | | E-mail | kdh1997@naver.com |
| 연대회의 실무 담당자명 | 방태형 | HP | 010-8954-8648 |
| | | E-mail | jjangga0705@daum.net |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후원계좌 : 131-016-097486(신협)

본 단체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회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소개

□ 주요 목적 사업

1.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 연구 사업
2.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3.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판매, 농·수·축산업 도·소매, 유통사업
5.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출판, 인쇄사업
6. 마을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육성사업
7.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력,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사업
8. 마을기업 박람회, 사진전, 미술대전 등 이벤트 사업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조직도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임원현황

| 직위 | 지역 | 성명 | 연락처 | 비고 |
|----|----|-----|---------------|----|
| 회장 | 부산 | 김대형 | 010-4009-1011 | |
| 이사 | 경기 | 한희주 | 010-8215-4948 | |
| 감사 | 대전 | 김미정 | 010-3485-0985 | |
| 이사 | 울산 | 윤재필 | 010-8682-0674 | |
| 이사 | 전북 | 김종록 | 010-3689-1344 | |
| 이사 | 충북 | 이은대 | 010-3221-2001 | |
| 이사 | 경북 | 신길호 | 010-9489-9006 | |
| 감사 | 인천 | 박상휘 | 010-2269-8197 | |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시·도 회장단

| 직위 | 시도 | 성명 | 연락처 | 비고 |
|--------------------|----|-----|---------------|----|
| 회장 | 부산 | 김대형 | 010-4009-1011 | |
| 시·도 협 회 장 | 경기 | 한희주 | 010-8215-4948 | |
| | 세종 | 윤종욱 | 010-5458-8302 | |
| | 경남 | 구영민 | 010-4034-1411 | |
| | 광주 | 장미라 | 010-2575-8524 | |
| | 대전 | 김미정 | 010-3485-0985 | |
| | 울산 | 윤재필 | 010-8682-0674 | |
| | 충남 | 이상진 | 010-7385-1115 | |
| | 강원 | 전경래 | 010-8505-6221 | |
| | 충북 | 조철호 | 010-3434-9484 | |
| | 서울 | 박꽃별 | 010-5441-2541 | |
| | 전북 | 김종록 | 010-3689-1344 | |
| | 전남 | 김한주 | 010-7979-8844 | |
| | 경북 | 신길호 | 010-9489-9006 | |
| | 인천 | 박상휘 | 010-2269-8197 | |
| | 제주 | 현재봉 | 010-3698-4280 | |
| | 대구 | 서영희 | 010-8599-6171 | |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5월~: 16개시도 지역별 마을기업협의회 구성
- 2012년 10월 6일~7일: 2012 전국마을기업박람회(경북 문경)
- 2012년 10월 7일: 전국마을기업협의회 구성(1대 회장선출)
- 2013년 1월 17일: 부산은행 업무협약 체결
- 2013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협회 설립 인가
- 2013년 2월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 2013년 6월 15일~16일: 대전·충청권 마을기업 지역박람회
- 2013년 7월 1일~3일: 경기도 마을기업 지역박람회(킨텍스)
- 2013년 9월 6일: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순천만)
- 2013년 9월 8일: 마을기업 창작작품대전(사생대회, 순천만)
- 2013년 9월 6일~8일: 2013 전국마을기업박람회(전남 순천)
- 2013년 8월 ~ 12월 : 롯데백화점 특판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영등포, 창원, 울산, 분당)
- 2013년 11월 13일: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 2013년 12월 22일~27일: 부산메가마트 기장점 특판전
- 2014년 1월 7일: 협회 정관개정 및 14년도 사업수립(임시총회)
- 2014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14년 4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참가
- 2014년 5월 회장단 워크숍 개최
- 2014년 5월 6.4 지방선거 정책제안
- 2014년 6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인천)
- 2014년 6월 꿈돌이 장학금기부
- 2014년 8월 마을기업 상품 추석특판 행사(신청업체)
- 2014년 8월 (사)숲힐링문화협회와 MOU체결
- 2014년 9월 e-bay코리아 쇼핑몰 입점(신청업체)
- 2014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참가
- 2014년 9월~12월 화성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개최
- 2014년 10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경남)
- 2014년 10월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개최

- 2014년 10월 꿈돌이 장학금기부
- 2014년 10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협약
(우리은행,파이낸셜뉴스)
- 2014년 11월 사회적경제 협동장터운영
- 2014년 12월 마을기업상품 설 명절특판 행사 (신청업체)
- 2015년 1월 29~30 :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샵 (충남 예산)
- 2015년 4월 15일 : 2015년 온라인 박람회 추진
- 2015년 5월 6일 : 춘천박람회 캐치프레이즈 모집 공고
- 2015년 6월 18일 : (사)한국마을기업협회 홈페이지 개설
- 2015년 6월 20일 : 온라인박람회 개최
- 2015년 9월 9일 :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 참가
- 2015년 9월 18일~20일 :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춘천)
- 2015년 12월 ~ : 마을기업 법률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2. 사단법인 상생나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가입신청서

| | | | | |
|------------------|---|--------|--|---------------------|
| 단체명 | 사단법인 상생나무 | | 웹사이트 | www.jnsec.kr |
| 전화번호 | 061-287-1102 | | 팩스번호 | 0303-0955-9571 |
| 대표자명 | 김종익 | | 전화번호 | 061-287-1102 |
| | | | E-mail | sstreetree@daum.net |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3층 | | | |
| 회원수 | 100 | 조직유형 | ①연합조직(협의체) ②지역네트워크/지역 협의체 ③단위조직 ④전문·기능조직 ⑤기타 | |
| 주요 활동내용 |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와 조사, 컨설팅, 시민교육 및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부설로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기업의 인·지정,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모델발굴과 설립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 | |
| 회비납부 | 월(5)만원 최소회비 5만원 | 납부방식 | 매월 납부 () | |
| | | | 연회비 납부(○) * 12개월 선납 | |
| 연대회의 참여 대표자 명 | 정총복 | HP | 010-3278-2949 | |
| | | E-mail | b2bop@hanmail.net | |
| 연대회의 실무 담당자 명 | 김태현 | HP | 010-4007-0429 | |
| | | E-mail | goemadl2@naver.com | |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후원계좌 : 131-016-097486(신협)

본 단체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회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사단법인 상생나무 현황

□ 설립목적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회, 시민사회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출판, 자문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

□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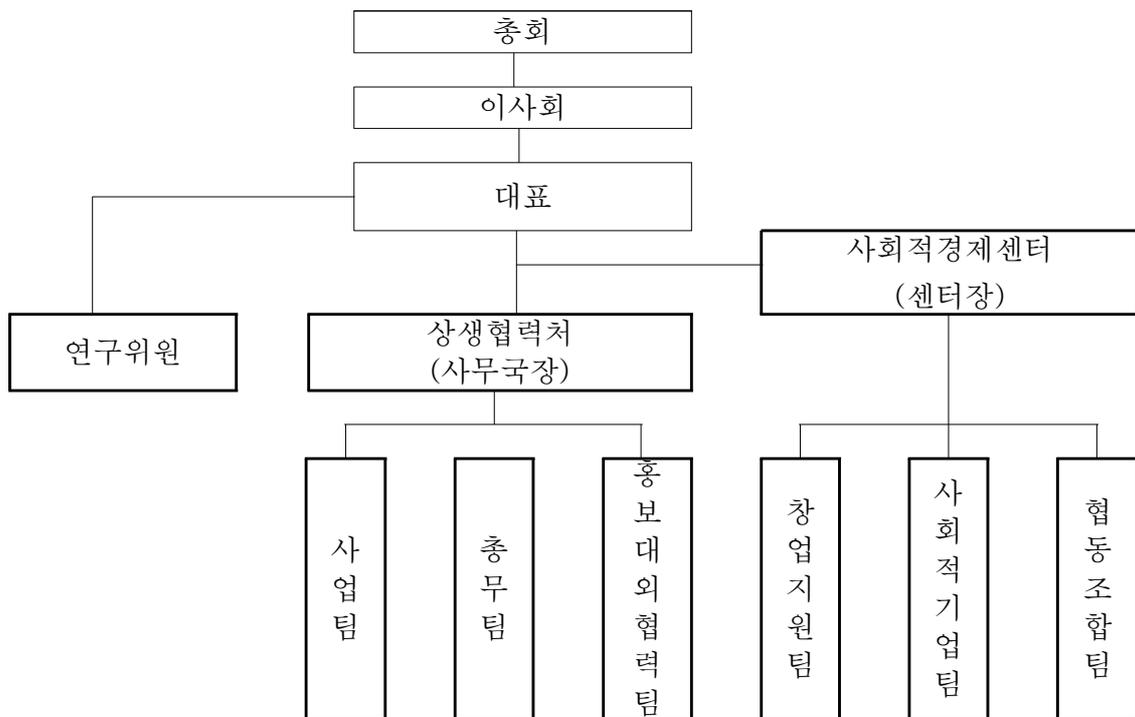
- 2014년 10월 법인설립허가(중앙부처)
-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 기부금단체 등록
- 2016년 1월~현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위탁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7년 1월~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사업 위탁운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8년 1월 법인명칭변경 사단법인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사단법인 상생나무

□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업
 - 환경 소재 기업 경영컨설팅 및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현황분석
 - 물관리 일원화 대비 조직진단 포럼 운영, 환경부 조직진단
 - 환경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방안 마련 연구
- 사회적경제 분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위탁 운영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사업, 공공구매 지원사업 등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제안

- 사회적경제 국제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교류사업
-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분야
 - 지속가능한 목포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 기초자치단체 도새재생 주민공동체사업 모델개발 교육 및 워크숍
- 연구사업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 기초자치단체 등 연구사업 추진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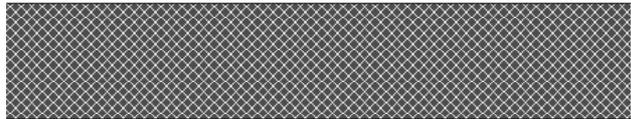
□ 조직 구성현황

| | | | |
|---------------------|---------|-----|---|
| 센터장(1) | | 정총복 | 사회적경제센터 업무 총괄 |
| 사무국장(1) | | 김태현 | 법인 사무 및 상생협력처 총괄, 창업지원 총괄 |
| 연구위원(1) | | 장 미 | 법인 연구사업 지원, 해남군 동행일자리 사업 |
| 사회적경제 센터 (8인) | 창업지원팀 | 2인 | 팀장 : 손기영 선임연구원 : 고경우 |
| | 사회적기업팀 | 4인 | 팀장 : 김태현(겸직) 선임연구원 : 차태환, 유옥경, 최승희 연구원 : 최은지 |
| | 협동조합팀 | 2인 | 팀장 : 정총복(겸직) 연구원 : 오석진, 강주선, 차선미(겸직) |
| 상생협력처 (2+ 추후1) | 총무팀 | 1인 | 연구원 : 차선미 총무 및 회계 |
| | 사업팀 | 1인 | 선임연구원 : 차태환(겸직) 기획 및 발굴 (환경 및 도시재생 사업 발굴,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발굴) 연구원 : 이하나 해남 동행일자리 및 청년연구원 양성 |
| | 홍보·대외협력 | - | 선임연구원 유옥경(겸직) 법인 및 센터 홍보 업무, 대외협력 지원 |
| 총 인원 | | 13 | |

[심의안건] 5호의 안

기타

제안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9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운동' 계획안

1 추진 배경 및 목적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기본법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불리·불필요하거나 확산에 장애되는 요소가 존재하는 제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 현장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상법상의 회사에 비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실질적인 지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
 - 해당되는 업종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 평가기준 등이 회사나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 그동안 협동조합 제도개선 활동은 행정, 중간지원기관, 민간, 국회의 역량이 분산되어 진행, 2018년 역량 연계 제도개선 활동의 시범사업 추진 및 일정한 성과 창출
-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제도 이슈를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취합하고, 정리하여 구체적인 개선활동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정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운동의 실효성 증진 및 현장 의견제시의 효능감 강화

2 '18 제도개선 공동활동 평가

○ 활동 개요

활동 주체 : 경기도따북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활동 시기 : 2018년 7월~10월 (이후 개선 활동 지속 전개)
활동 방식 : 현장 의견의 온라인 수렴, 전문가 검토 후 10대 과제 도출, 각 과제별 법개정안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 대안의 국회 법안 발의 및 각계 전달 추진

○ 활동 성과

1건 해결(협동조합의 상조사업 허용), 지속적 및 범사회적경제 진영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
10대 과제 중 2건 법안 발의(혜산요건 간소화, 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1건 관련 부처 전달, 1건 현장 의견에 따라 포기(전문직 협동조합 법인 허용)

○ 활동 평가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신속한 진행 가능
지속적인 전달 및 현황 파악 플랫폼 기능 미흡, 간헐적 진행
현장 의견 수렴 기간과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수렴 미흡

○ 개선 방안

연중 활동 추진 체계 정립
활동 주체의 확대를 통한 과제 해결역량 강화

3 '19년 여건 분석 및 활동 방향

○ '19년 여건 분석

정치권의 대립과 2020년 총선을 앞둔 기세 싸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주요 3법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움.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현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요 3법의 20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19대 국회의 평균 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40%를 하회하며, 가결 법안의 통과기간도 7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19년 활동의 법안 개정안 제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확률은 미쟁점 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공동공약 개발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전국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첫 해로서 성과를 만들려는 의욕이 높을 것으로 보임

○ 활동 방향

따라서 '19년 공동활동은 현장의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요구 사항을 법안 및 행정 개선 활동의 과제로 제시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효과성이 높으며, 공동활동의 효능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다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공약 작성을 위한 활동이 상당한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입법발의가 이뤄진 내용은 공약 반영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각 정당 공약작성에 대한 민간의 활동도 구체화, 활성화 될 수 있음. '19년 제도개선 공동활동의 방향은 1단계 조기 법안 통과, 2단계 21대 총선 공약화로 설정할 수 있음

4 '19년 제도개선 공동활동 계획안

○ 조직 : “사회적경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연대회의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이 1개월 이내(3월말 이내)에 회원단체들의 협력을 전제로 회원단체 구성원 및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안 작성, 공동대표단의 추인을 받아 확정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상황점검, 역할분담 등을 통해 공동활동의 추진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연대회의의 내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출 (중간지원기관들의 참여범위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활동 계획 수립)

○ 연대 :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등의 활동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

현장과의 접점이 많은 중간지원기관과 다른 민간 운동체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간지원기관 등과 더 넓은 한시적인 공동활동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함.

○ 행동 : 민간운동체 연대조직으로서의 장점을 발휘

중간지원기관이나 전문가조직이 하기 어려운 활동 영역을 담당

민간 사회적경제운동의 대표적 연대조직에 부합하는 국회에 대한 개정 청원활동, 직접 행동 등을 조직(예 : 회원조직 대표들을 중심으로 주 1회 국회 방문 설명활동 등)

정기적인 논평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여론 형성 진행

참고 1 2018 협동조합 제도개선 제안 모집 서식

1 협동조합 제도개선 제안 모집 취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기본법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불리·불필요하거나 확산에 장애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많은 제도적 불합리·불편을 모아 정리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협동조합 제도개선 제안 사업 일정 안내

| | |
|---------------------|--|
| <p>1. 제도개선 제안모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제도개선 제안 모집 : ~08.17(금)까지 ◦ 2차 제도개선 제안 모집 : ~08.28(화)까지 - 경 기 도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 서울지역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 <p>2. 제도개선 시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상 : 9월 중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최우수(1명) : 30만원상당, 우수(3명) : 10만원상당 |
| <p>3. 전문가 간담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분류 및 정리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14:00~ |
| <p>4. 제도개선 논리개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간담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논리개발 |
| <p>5. 제도개선 토론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 주제 :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 일시 : 2018년 10월 4일(목)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 <p>6. 토론회 이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제안자 및 협동조합 관계자 |

| | |
|---------|--|
| 대응상황 공유 | - 제안자 이메일 및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개간지등에 대응내용 공유 |
|---------|--|

3 협동조합 제도개선 제안 방법

○ 현장에서 겪었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불리·불합리·역차별의 내용 정리

○ 제안 신청 방법

1) 기관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motive92@ddabok.or.kr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 lovecoop2@15445077.net

2) 구글 설문지 신청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ddabok.or.kr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15445077.net

2018년 제도개선 제안 신청서

| | | |
|-----------|--|--|
| 제안명 | | |
| 제도개선 제안이유 | - 애로사항 및 협동조합이 불이익이나 역차별을 당한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 |
| 관련법, 규정 | - 관련법을 모르시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 가능하면 작성해주세요 | |
| 제도개선 방향 | - 제도개선 제안내용에 비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작성해주세요 | |
| 연락처 | * 단순 정보 취합용이 아닌 구체적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처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공해주신 이메일은 제안 내용에 대한 대응과정을 공유할 용도로 사용됩니다. | |
| | 핸드폰 | |
| | 이메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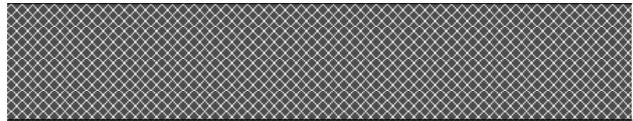
| | |
|---|------------------------------|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
| <p>○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협동조합 제도개선 제안사업 내용 취합 및 시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p> <p>○ ○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보관되며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p>○ ○ 본인은 협동조합 제도개선 제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진행 기관에서 제도개선 상황파악을 위한 연락 및 대응과정 상황 공유를 받기 위하여 연락처와 이메일의 개인정보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위와 같이 협동조합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2018. 8. .

2019년 정기총회

붙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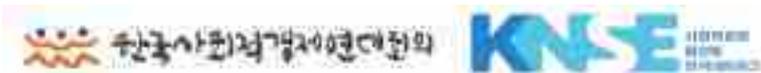
붙임자료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 제안

연대·협동·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 제안

2018. 5.



PART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 연대·협동·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 |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 |
| 1 | <p>[광역/기초]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협의회, 연합회) 등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 순환·자립형 지역발전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 2 | <p>[광역/기초] 사회적경제 통합조례 및 책임조달/우선구매 조례의 제정과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초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시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 • 공공기관의 책임조달 및 사회적경제 상품,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
| 3 | <p>[광역/기초]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책 및 시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통합부서 설치 및 강화 |
| 4 | <p>[광역/기초]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분과 설치 • 광역, 기초 단위의 당사자협의체 지원정책 수립 |
| 5 | <p>[광역/기초]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초, 지역기금의 조성 and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지역기금 조성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 및 사회가치를 이해하는 중개기관 육성 |
| 6_1 | <p>[광역/기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 신사업개발, 시장개척, 연대협력을 지원하는 통합지원기관 설치, 운영 |
| 6_2 | <p>[광역/기초]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지원 공간인 가칭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 7 | <p>[광역/기초]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일 경험 확대 •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과 경험의 장 확대(교육청) • 지역을 기반으로한 돌봄 및 방과후 교육(지자체+교육청) |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1

[광역/기초]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 수립

-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협의회, 연합회) 등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 순환·자립형 지역발전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촉진·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제안배경

- 거제·통영·군산의 조선업 몰락, 군산 GM공장 폐쇄 등 지역사회의 앵커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상실감과 불안감이 높아지며 지역사회가 흔들리는 일까지 발생.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기업 공장 등 큰 산업 유치에 매달리지만, 고용이나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지방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부의 역류현상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가는 접근법으로서 순환·자립형 사회적경제 부각. 지역주민의 연대와 협동,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방법론이 지역경제에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다양한 자원을 소량 이용하는 특성으로 지역 내부 자원을 순환하거나 재이용하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

■ 추진내용

- 지역의 자원에서 출발하고, 지역 내 여러 행위자가 모여 실행주체를 만들며, 노동자협동조합 등 소유권 다양화한다거나, 생협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를 조정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 지역발전에 관여하는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이 취약한 실정. 지역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협의회, 연합회), 풀뿌리 주민자치조직, 시민단체 등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 지역 단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

■ 기대효과

- 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관건.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민자치 체계를 구성하고,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 생산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방법론의 적극적 활용은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한 정부 운영체계 전환 및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2

[광역/기초]

사회적경제 통합조례 및 책임조달/우선구매 조례의 제정과 정비

- 광역/기초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시책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있게 정비
- 공공기관의 책임조달 및 사회적경제 상품,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 제안배경

- 통합조례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도 단위에서는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가 제정되어 있음. 17개 광역지자체중 10곳(58.8%)임. 교육청의 경우 광주와 세종 등 2 곳에서 통합조례가 마련됨.
- 공공구매 조례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 대전, 인천, 광주, 도 단위에서는 충남, 전남이 제정되어 있음. 17개 광역지자체중 6곳(35.3%)임.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의 경우 우선구매 지원이 통합조례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음. 교육청의 경우 경북, 세종, 전남, 제주, 충남 등 5곳이 마련됨.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통합조례 제정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시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 사회적경제 조직 범위, ▲ 지자체장의 책무(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 시도 정책 수립 및 사업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적극 고려 등), ▲ 사회적경제 위원회, ▲ 지원체계구축(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조직, 예산, 절차 및 추진체계의 근거를 마련해야함
- 공공구매 조례 제정시 사회적경제 상품, 서비스 우선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 지자체장의 의무(구매계획수립 및 공고), ▲ 적용대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교육훈련,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정보제공, ▲ 판로지원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함.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통합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의 공신력 부여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공공구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유통, 판로시장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기회 확대 및 자립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3

[광역/기초]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와 강화

-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책 및 시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통합부서 설치 및 강화

■ 제안배경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이 활성화 되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일자리관련부서, 지역경제 관련부서 등 단위 행정조직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부서의 핵심과제에 따라 사회적경제정책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사회적경제 정책 안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 부서가 있다하더라도 담당자의 근속기간이 짧거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중장기적 과제의 대응력이 낮아 사회적경제 육성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일정분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가치를 증진하고 사회적 성과 등을 내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사회적경제가 일정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이 지역정부정책의 전(全)분야에 투영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의 설치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의 강화
 -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관 제도 도입 및 활성화
 - 지역계획 및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 부서 경유 제도 도입 및 활성화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연대와 협동,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성숙
- 지방정부의 일관된 사회적경제정책 안정적 집행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성장
-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지역세수 증가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4

[광역/기초]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

-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분과 설치
- 광역, 기초 단위의 당사자협의체 지원정책 수립

■ 제안배경

-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수는 지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자리, 교육,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정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함.
- 하지만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지방 차원의 민관거버넌스 규정이 없거나 극히 미약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3조)해야 하며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5조)해야 함. 민관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조는 명시되지 않음.
- 협동조합기본법 : 국가 및 공동단체는 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에 노력하며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적극 협조(10조)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외에는 없음.

■ 추진내용

-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 행정과 당사자조직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
- 지역 전체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점검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분과 설치
- 광역, 기초 단위의 당사자협의체 지원정책 수립

■ 기대효과

- 경제, 환경, 주거, 문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로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정책 효과 제고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5

[광역/기초]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초, 지역기금의 구성과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지역기금 조성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 및 사회가치를 이해하는 중개기관 육성

■ 제안배경

- 지역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6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624개)의 자금수요는 1,240억원 수준이나 자금공급량은 10% 수준이었음¹⁾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알맞은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자금이 선순환되기 어려운 상황임

■ 추진내용

-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밀착형 운영체계 마련
- 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혁신기금(행안부) 등과 연계하여 조성, 운영
- 사회적경제를 잘 이해하는 중개기관과 협업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 중개기관 육성
- ①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자금 지원, ② 지역 자산화, 사회주택, 도시재생 지원, ③ 마을기금, 자조기금 등 공동체기금 지원
- 기금규모가 지역 내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미흡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보증을 통해 10배 이상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통합지원기관 컨설팅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성장 촉진

■ 기대효과

- 지역사회 혁신을 리드해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 마을, 기초지자체 중심의 민간기금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동 강화
-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1) 한국사회혁신금융,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계획 수립연구(2017.12.)

연대·협동·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6_1

[광역/기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 신사업개발, 시장개척, 연대협력을 지원하는 통합지원기관 설치, 운영

■ 제안배경

-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체계가 미비하거나 분절화,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는 중앙센터와 권역/광역별 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부처별 전달체계 칸막이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중앙지원기관이 직접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 창업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민간주도’ ‘지역중심’이라는 사회적경제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을 수립 중임.

■ 추진내용

- 지방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부처별로 집행/관리되던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운영할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광역지자체는 사회적경제 발전모델과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금융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포괄적 역할을, 기초지자체는 당사자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현장과 밀착한 지원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민간주도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 행정 칸막이 해소를 통해, 예산 활용 효율성 증대
- 지역수요 및 현장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하여 사업 효과성 증대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6_2

[광역/기초]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지원 공간인 가칭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제안배경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경진대회, 사업화 지원, 자금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이중 창업자를 위한 혁신공간으로서 창조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숍, 리빙랩 등 다양한 창업공간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 기업만을 위한 창업인프라 공간이 매우 부족함
- 특별히 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별, 지방정부별 재정규모, 사업의 유형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 간 연계부족, 유사중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추진내용

- 가칭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사회적경제 ▲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멘토링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 초기창업자를 위한 상품개발, 자금조달, 네트워크 구축 ▲ 성장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보육 공간임
- 한편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전문적인 창업보육기관 뿐 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한 통합지원기관 또는 당사자 조직의 연합회나 협의회가 사업수행의 주체가 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음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창업 및 성장공간이 조성, 운영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 기대됨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공통정책 제안 7

[광역/기초]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일 경험 확대
-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과 경험의 장 확대(교육청)
- 지역을 기반으로한 돌봄 및 방과후 교육(지자체+교육청)

■ 제안배경

-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청소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교육, 돌봄이 학교나 개인의 책임이 아닌 지역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

■ 추진내용

-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일경험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서의 현장 프로젝트 수행 및 일터기반 학습지원 활성화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타입사업, 강원 청년 JoBs 프로젝트,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활용 등)
-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과 경험의 장 확대(교육청)
 - 초중등 교원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연수과정 실시 (2015년부터 서울, 경기, 강원, 대구 등에서 1정 연수, 자율연수, 진로교사 연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
 - 자유학기와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및 체험 확대 및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전국적으로 73개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한 돌봄 및 방과후 교육(지자체+교육청)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돌봄 및 방과후 교육 질 제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등 협력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경기도 꿈의 학교, 서울의 마을결합형 학교 등)

■ 기대효과

-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 청소년, 청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 경험 활성화
- 지역이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

PART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분야별 정책

■ 제안 배경

-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절실하게 추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과 계층 간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성의 극심한 변화,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자원의 소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 나눔과 돌봄,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기업의 사업 활동에 내재화한 경제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생활과 삶의 필요의 충족을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민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해법을 실험하고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복지와 돌봄의 영역,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 생산과 소비,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공급,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인간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기나 과시의 대상이 아닌 정주의 터전을 만드는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높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확장성도 매우 높음.
- 복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먹거리와 농업, 주거와 도시재생, 교육,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은 특히 지역,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분야임.

■ 정책 방향

- UN은 지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동참과 노력을 호소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발전의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부합함.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민의 기초적인 생활영역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부문별 정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지역개발 및 사회발전의 방향이 될 것임.

연대 · 협동 ·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살리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경제 7대 분야별 정책 제안

분야 1 : 사회적경제로 생산, 소비하는 에너지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촉진
 - 시민 주도형 재생가능 에너지 협동조합, 사회저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에너지 기업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목표 수립
 -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2.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의 보장
 - 시민주도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유희공간의 장기 임대

분야 2 :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지역 돌봄과 지역사회복지

1. 보육과 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 가산점 부여 (부모+교사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위탁, 성남시와 서울 노원구 진행 중)
 - 사회적경제조직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위탁 운영 확대방안 마련
 - 정부 주도 평가 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 시스템, 사회적 가치 반영 (예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된 운영방식 인정)
 - 보육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성화 컨설팅 및 연합회 설립 및 운영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마을방과후/ 품앗이육아 등에 토지구입비 지원 또는 저리 용자, 무상임대,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시설비, 장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및 우호적 조세 환경 조성(지방세 감면, 수도권 중과세 제외)
2.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사회서비스 확충
 - 종합돌봄 : 산전후 종합돌봄 / 육아가사종합돌봄 / 농어촌 및 노약자 생활 종합돌봄
 - 예방보건 : 마을건강위원회 설치 및 건강조례 제정 / 정신장애인 코디네이터 및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 취약계층 실태환경 개선서비스

-
- 공영장례 : 공영장례조례 제정 및 기초단위 작은 장례식장 설치운영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고독사 장례지원서비스

3.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거버넌스 구축

- 광역, 기초 사회서비스 협의회 설치, 운영
- 우리동네 건강돌봄센터 설치,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모사랑방 설치, 운영

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돌봄특화사업 : 고령기 통합돌봄사업단(고령 전기 건강관리/재활훈련/호스피스/장례 및 유품 정리) 운영사업 및 일자리창출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 일자리사업의 10%를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시도단위 노인일자리시범사업 시행
- 공공근로 민간위탁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형(직업체험형·실습형) 일자리제도 도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위탁)

분야 3 : 사회적경제로 주거와 도시재생을

1.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택의 공급 확대

-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주거 공급 확대

2.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시행

- 공공택지의 저렴한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의 대상을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나 비영리단체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주택(사회주택) 공급을 확대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국공유 재산의 사회적 활용 촉진

- 사업시행자인 주민조직이나 해당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역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률을 일관되게 정비

4.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유희공간 신탁제도 도입

- 유희공간(건물, 주택,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할 경우 재산세 등 세금감면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
5.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지역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

분야 4 : 사회적경제로 교육과 학교의 혁신을

1. 학교에서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학교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교육
 - 창의적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중학교) 운영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에 대한 주제학습,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학부모 교육, 활동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
 - 중학교 선택교과목이나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보급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구(서울, 대전, 세종, 제주, 경북 등의 경우 교육청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됨)

 2.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청과 학교협동조합·지역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사회적경제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자문을 맡음
 -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특히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기본조례, 공유재산의 사용 관련 조례 등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원(현재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등에 관련 조례 제정됨)
 - 방과후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돌봄교실 포함)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연대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학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및 조합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과 특성화고교·특수학교, 햇빛발전 등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
-

분야 5 : 사회적경제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1.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활성화
-

-
- 농림어업분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정비

2.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직접 거래 및 교류활동 활성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강화 : 농업의 부가가치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예 : 농축산물 가공사업, 도-농 직거래 사업, 농축산물 계약생산-책임소비 활동, 친환경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분야 6 : 사회적경제로 주민의 참여와 지역에 기반한 의료와 건강을

1.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지역기반 마련

- 지역주민 건강기본 조례 제정
- 노인,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주민참여형 건강관리 모델 개발

2.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 보건복지 통합돌봄센터 운영

3.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배치
- 사회서비스 틈새 공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분야 7 : 사회적경제와 함께 지역경제, 소상공인 활성화를

1.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소상공인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종사자수 36% 소상공인).

-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거나 분절화,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 효과적인 지원 정책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역지역센터체계 : 중앙지원기관이 직접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 지원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추진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운영, 사업개발, 시장개척, 연대협력, 경영 세무 법무지원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전담기관 설치 운영
- 지방정부가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마련
- 이를 통해 1)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정책 추진하고 2) 민간주도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3) 소상공인 창업, 경영유지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소상공인 전문지원기관 및 소상공인 지원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당사자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현장과 밀착한 지원시스템 조성
 - 광역지자체는 기초 지역별 소상공인 전문지원기관의 운영을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

20대 국회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개시에 즈음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 야의 대승적 협력과 조속한 법 제정 노력을 촉구한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공전을 거듭해 왔다. 2018년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공정경제로의 혁신과 민생 문제 해결을 이루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여야 협력을 통해 해결됐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는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바탕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1. 20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행동’이 출범하면서 밝혔듯이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사업과 일자리는 단지 수치로서의 일자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랜 빈곤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자활의 상징이며,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상징이다. 또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결과물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2. 사회적경제조직은 이윤, 영리의 추구를 우선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과 정책은 소관 법률과 부처에 따라 각각 이뤄지다보니 부처 간 칸막이행정에서 오는 분절화의 한계와 파편화의 폐해, 비효율이 심각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환경 조성은 부처 간 협력이 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3. 또한,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사회적경제가 그간 이룬 성과와 잠재력에 주목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 260여건의 조례와 사회적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발 앞서 조례와 시책을 내어놓고 있는 마당에, 국회는 이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관련 조례 및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4. 사회적경제 현장은 정부의 칸막이 정책과 개별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 간의 상호협력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보다 촉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의 설립과 공동사업의 개발, 사회적경제의 자본 조성 촉진과 운용, 부족한 자원의 공유와 상호거래의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근거로 민간 주체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연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 사회적 기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적경제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나 정책에 대한 장벽도 일소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금융연계, 정책자금, 연구개발지원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숨어 있는 장벽, 제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교육훈련,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기초하고 민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 부처를 명확히 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원리가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나 성장단계에 따라 개별 당사자와 사회적경제의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조속히 되어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단기, 장기의 정책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6.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2018년 하반기 국회의 새로운 출발에 앞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전달하며, 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역행동을 개시하여 국회를 응원할 것임을 밝힌다. 민의를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제 정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경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조속한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8 협동조합 현장 제안 10대 과제

□ 과제①: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도입(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 개정)

○ (개정이유)

협동조합은 현실에서의 회의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1인1표의 원칙에 기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협동조합이 직접 출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면 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결권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총회의 성립 등 협동조합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상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서도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있어 총조합원의 수에 해당 조합원을 계속 산입한다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상당수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경우에는 총회의 성립이 매우 어렵게 되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즉 실제 협동조합에 관계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특별결의요건을 상회하는 정도로 해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으로서는 총회의 성립이 어려워 해산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협동조합의 해산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조합원은 협동조합에서 탈퇴할 수도 있지만, 해산결의를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자 등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산결의의 실익이 있다.

이에 2년간 총회 출석이 없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고, 이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1년 간 도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총회 성립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해산결의에 있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조합원 및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자 등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산신고시 협동조합이 총회소집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총회) ① ~ ⑤ (생략) <신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 제28조(총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서면 또는 각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
|--|--|
| <p>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p> <p>제57조(해산) ① (생 략) ② (생 략)</p> <p><신 설></p> | <p>③ 제28조제6항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통지가 조합원에게 계속 1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제2항의 총조합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57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29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통지가 조합원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
|--|--|

□ 과제③: 해산간주제, 해산명령제의 도입(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57조의3·제66조의2·제102조의2 신설, 제29조·제57조·제83조 개정)

- 1) 휴면협동조합 및 2) 불법적협동조합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따른 해산방법 도입

1) 해산간주제의 도입(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66조의2·제102조의2 신설, 제29조 개정)

○ (개정이유)

2017년 협동조합 제3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설립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이 10,615개에 이르고 이 중 법인등기 협동조합은 9,547개이며, 법인등기 협동조합 중 4,447개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실제로 사업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등기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사실과 등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때로는 사기 등의 목적을 위해 남용되기도 하며 다른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명칭 사용에 제약을 주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4조), 설립·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1조·제64조·제84조·제106조·제110조), 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4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동법 제35조제1항·제79조·제92조·제115조)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등기가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5년의 기간 동안 등기가 없었던 협동조합에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실과 등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휴면협동조합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휴면협동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 6. (생략)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 10.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해산·휴업 또는 계속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 |

합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7항제7호의 의결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의 경우에 이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p><신 설></p> | <p>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p> <p>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p> |
|--------------------|--|

2) 해산명령제의 도입(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3 신설, 제57조·제83조 개정)

○ (개정이유)

최근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악용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을 명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경우,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협동조합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해산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공익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산명령제도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에만 도입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해산명령제도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로 야기되는 설립 남용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데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에 관해 인가주의가 운영되고 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를 통해 설립인가의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 제57조(해산) ① ----- |

| | |
|---|--|
| <p>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p> | <p>----- ----- ----- ----- ----- ----- -----</p> |
|---|--|

□ 과제④: 협동조합의 상조사업 인정(협동조합기본법 제81조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개정)

- 1안)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으로서 회원조합 조합원에 대한 상조사업 인정,
- 2안) 협동조합에 대해 선불식할부거래업 인정

1안)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으로서 회원조합 조합원에 대한 상조사업 인정(협동조합기본법 제81조 개정)

○ (개정이유)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상부상조의 원리에 기초하여 공제사업으로서의 상조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어서 협동조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제45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93조제4항, 제115조제2항),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겐 예외적으로 공제사업을 허용하면서(제80조의2제1항, 제115조제2항) 연합회의 다른 사업과는 달리 회원조합에 대한 사업으로만 할 수 있고 회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업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81조제2항, 제115조제2항)

그러나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합회에겐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하며,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 또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제80조의2제1항·제2항, 제115조제2항),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조합 조합원에게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리와 실제 운영사례를 볼 때 합

리적이지 않다.

이에 연합회의 경우 현행 인가제 등을 전제로 전면 허용하거나, 특별히 금지할 영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원리에 충실한 사업에 대한 당연한 입법정책이며, 나아가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조사업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 (개정안)

(1-1안) 단서 삭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생략)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생략) ② ----- ----- -----. |

(1-2안) 단서 개정(공제사업 중 연합회의 회원조합 조합원에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영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생략)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u>공제사업의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생략) ② ----- ----- ----- .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u>공제사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안)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인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이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될 수 있는 주체를 상법상 회사로 한정함에 따라 협동조합이 상조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상부상조의 원리에 따른 공제사업으로서의 상조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어서 협동조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다.

따라서 협동조합도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에 부합하는 요건을 마련하여 상조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3. 4. (생략) ② ~ ⑥ (생략) |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이상(출자금의 경우 3억원 이상)----- 2의2. 총조합원이 1,000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한다) 3. 4. (현행과 같음) |

| | |
|--|---|
| <p>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p> |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자본금 등)</p> <p>-----</p> <p>-----</p> <p>-----<u>이상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서 출자금 납입총액이 3억원 이상이고 총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u></p> |
|--|---|

□ **과제⑤: 영농영어조합의 농어업경영체육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제19조의2 신설)

○ (개정이유)

영농협동조합과 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어업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 및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는 등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체 자본에서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농어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즉 영농·영어협동조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로 인정함으로써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3.·4. (생 략)</p> <p>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6. ~ 8. (생 략)</p> <p><신 설></p> |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2에 따른 영농협동조합을 -----.</p> <p>3.·4. (현행과 같음)</p> <p>5.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2에 따른 영어협동조합을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영농협동조합 및 영어협동조합의 설립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협동조합이 된다.</p> <p>1.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같음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p> |

있는 협동조합

2.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같음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③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어협동조합이 된다.

1.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같음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2.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같음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 | |
|--|--|
| | <p>⑤ 영농협동조합 및 영어협동조합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협동조합 또는 영어협동조합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영농협동조합 및 영어협동조합의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영농협동조합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영어협동조합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p> <p>⑧ 영농협동조합 및 영어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준용한다.</p> |
|--|--|

□ 과제⑥: 안마사 협동조합의 인정 등(의료법 제33조 개정)

○ (개정이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치고, 동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2항에 따라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82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제33조제2항제1호를 안마사에게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마사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안마사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마사가 의료법의 제규정을 준용받고 있어 제33조제2항 각호에 협동조합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한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제33조제2항제4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즉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개인으로 창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개설 등) ① (생략) | 제33조(개설 등) (현행과 같음)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②----- ----- ----- ----- ----- ----- ----- |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1. -----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2. ----- |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3. ----- ----- |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③ ~ ⑩ (생략) | ③ ~ ⑩ (현행과 같음) |

□ 과제⑦: 협동조합 액셀러레이터 인정(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9조의2 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 함)의 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획자”를 말하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4의2호·제19조의3·제19조의4).

그런데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상법상 회사와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납입자본금 및 해당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3호), 특히 협동조합의 창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 특성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운영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도 부합할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추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 ----- ----- 나. ----- ----- ----- ----- ----- ----- ----- |

발행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들의 실제 출자를 기초로 설립동의자들이 출자하면서 출자금 납입총액이 형성되고, 다만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만을 정하여 실제 조합원들이 출자함과 동시에 출자금 총액(자본금)이 형성되므로 실질상 상법상 회사의 발기설립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상법상의 회사와 같이 출자금(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인의사록을 공증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협동조합은 1인1의결권의 두수주의(頭數主義)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용의 여지도 적다고 하겠다.

○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u><신 설></u> 2. ~ 3. (생략) ② ~ ⑤ (생략)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 ----- ----- ----- ----- 1. ----- ----- ----- <u>1의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다만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과제⑩: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출자출연 인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한국 사회적경제 대구 선언문

대구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추진위원회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60여 년 간 지속되어온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 전략은 이제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다. 과거 정부들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저성장과 저고용, 실업난과 빈부격차, 자연생태계 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이 그 징후다.

이것은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운영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우리에게 경쟁과 승자독식의 사고체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동과 연대의 가치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몇 가지 사회문제를 푸는 해결책이라기보다 시장자본주의 이후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은 괄목할 성장을 이룩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그들 네트워크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고 사회적기업을 아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의 양적 확대가 일어난 데는 지원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던 정부의 역할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 성과는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동반하는 법이니,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정부관계자 모두에게는 새롭게 바꾸어야 할, 자기 혁신의 과제 또한 남겨져 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를 기준 삼아 앞으로 당사자 조직과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고 결정해야 한다. 자발성과 자주성, 평등과 민주적 의사결정, 독립성과 자율성 등의 원칙이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 부문에 종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성찰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키우는 토양이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믿기에 시민들이 신뢰하고 기꺼이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이며 시민들께 우리의 착한 소비자가 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 우리는 각 조직유형의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경제라는 한 지붕 아래,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공동의 보조를 취해 나간다.
- . 우리는 사회적경제 법제화 이전에 있었던 역사 속 공동체 운동의 정신과 이념, 선배들의 지혜와 경험을 오늘날 사회적경제 운동의 좌표로 삼고 장래에 이룩할 사회적경제 진영 전체의 전망과 목표를 수립해 나간다.
- . 우리는 제도화의 결과로 나타난 자발성과 주체성의 약화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타성과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한다.
- . 우리는 자기조직 우선주의의 세파 속에 희석돼가고 있는 협동과 연대의 원칙을 되살려내고, 협동과 연대가 당위적 명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전략이 되도록 협동과 연대의 현실적 실천 방안을 강구한다.
- .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종래의 성장제일주의가 가져온 공동체의 해체 및 인간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상생의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라 확신하며,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 .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야말로 사회적경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며, 단지 형식요건에 머물고 있는 민관협 의기구가 정책 수립 및 실행과정의 동반자로서 민간 당사자들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상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체계, 일정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의지를 모으고 또한 단합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구 대회가 사회적경제 부문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시민들의 힘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결연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2018년 7월 14일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과제

2018. 7. 14.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1. 사회적경제, 우리의 오래된 미래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인의 삶에도 사회적경제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도 우리 생활 속에는 호혜와 협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전통적 협동조직인 계(契)의 시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 사람들은 농사일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농계와 두레를 조직했고, 자녀의 혼례를 치르거나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서민들은 혼상계(婚喪契)를 운영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원리로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상이며 또한 실천 활동이다. 사회의 원리란 함께 무리 짓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상생을 위해서 지켜온 가치들— 상대방에게 베풀기, 서로 돕고 협력하기, 약자를 보살피고 배려하기, 공정하게 분배하기 등 —이다. 이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숙명과도 같은 ‘함께 살기’를 위해서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필연의 규칙들이다. 그래서 어떤 경제사학자의 말처럼 이 같은 사회의 원리는 애초부터 인간의 디엔에이(DNA) 속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찍이 한국인의 역사에서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은 별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생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위험과 위기를 더불어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함께 당면하고 있는 목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하잘 것 없는 자원이거나 각자 염출하였다.

이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혹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십시일반의 부조에 나섰던 것은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가 오직 같은 처지의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국가도, 시장도, 정치지도자도 그들의 문제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단합해서 해결

책을 공리했다. 자조, 자립, 자발성의 원칙은 바로 이 같은 조건에서 유래한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푼돈을 모아 자본을 마련했으므로 그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게 마땅했다. 공동소유의 자본이니만큼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출자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과점하려 들 때 그것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이렇듯 오늘날 사회적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운영의 핵심원리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연발생적인 방식들이다. 특별한 누군가가 어렵사리 고안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준 무엇이 아니었다. 차라리 민중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리하여 20세기가 저물 때까지 한국사회에는 미처 ‘사회적경제’ 라는 이름표는 달지 않았으며, 사회적경제의 원리와 방식으로 추동되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다. 자연재해를 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사업을 일으키려니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절실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조직했다. 농업용품과 생필품의 저렴한 구매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소비조합을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 생산자와의 상생이라는 가치와 만나 오늘날의 소비자생협으로 발전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서울 낙골의 산동네 주민들은 1976년,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전국화되기 전까지 이 조합은 12년간 가난한 서민들의 건강을 지켰다.

재개발사업으로 살 곳을 잃게 된 서울 양평동의 철거민들은 경기도 시흥군으로 집단 이주해서 「복음자리」라는 공동체 마을을 일구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건축비와 땅값을 주택조합에 상환하고 자기 소유의 집 한 채씩을 마련했다.

서울 하월곡동의 일용건축노동자들은 불규칙한 노동과 저임금에 지친 나머지 「건축일꾼 두레」라는 생산공동체를 결성했다. 일하는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일종의 노동자소유기업이었다. 그게 1990년의 일이다.

한결같이, 이런 조직들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이런 조직을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법이나 지원 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하등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눈앞의 문제, 충족해야 할 필요가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이고, 자신들 말고는 기댈 곳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 사회적경제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낳은 것 역시, 정부의 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와 갈망이었다. 인간답게 살려면 꼭 필요했던 것, 삶이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요구됐던 것— 현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돕고,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 나갔다.

2. 왜 사회적경제인가?

왜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 새삼 사회적경제에 눈을 돌리고 지원하는 법이며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오로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수출 증대 전략에만 매달려왔다.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이 전략이 주효한 듯했으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졌다. 경제성장률이 꺾이면서 저성장의 시대가 찾아왔고 장기실업과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국가 재정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성장 전략의 낙수효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처럼 보였던 실업과 계층 양극화가 어느새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틀었다. 만인이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평등해지는데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었다.

또한 고도성장 시대의 부작용들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각종 공해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 지역공동체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상업화, 자살률의 증가 등등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설상가상의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이 심각했다. 예전에 혈연이나 지연으로 유지되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각자도생, 개별화의 경향이 만연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려오던 무연사회(無緣社會)에 대한 고민— 연고 없는 사람들의 고독사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앞에 다가왔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등장은 결국 시장자본주의와 성장주의 발전전략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였다. 실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민중들이 시도했던 수많은 사회적경제의 원형(原形)들도 성장주의 정책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자 자기방어의 몸부림이었다.

점차 저성장과 저고용, 빈부격차와 고령화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유럽 국가들이 실업과 사회적 배제, 커뮤니티의 쇠락 등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끝에 사회적경제 부흥정책이라는 칼을 빼들었듯이, 한국 정부 역시 앞서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희망을 사회적경제에서 구하기 시작했다. 제도화의 시초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현재의 자활기업)의 육성을 명시한 것이었다.

이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관련법이 제정되고 마을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성격이 비슷비슷한 모두를 묶어서 ‘사회적경제’로 통칭하는 관습이 생겼다. 유럽에서 사용하던 용어(Social Economy)를 들여와서 부처별로 관리하던 조직유형들을 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도 강조했거니와,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합집합이 아니다. 정부 제도가 규정한 이들 조직유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를 일컫는 개념이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정부 통계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종사자가 모두 36만여 명이라고 하니 그 수만ك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내려갔다거나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규모는 거시적 경제·사회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결정되므로, 작은 규모로 아주 천천히 생성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가 그 모든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사회적경제를 오래 연구해 온 학자들 가운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인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편적 정책수단은 아니” 라거나 “사회적경제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임무가 실업이나 그 밖의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 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이 사회적경제 정책의 가치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대안적 이념인 사회적경제를 단지 고용정책의 수단으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여기서 하나의 국가 정책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목표한다는 것(담론의 차원)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효능을 갖는다는 것(과학적 사실의 차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이 두 가지 차원을 혼동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의미와 가능성을 간과한 채,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 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만으로 모든 걸 평가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수단화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를 경쟁과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공생과 호혜 및 협동의 가치체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상이고,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활동이다. 달리 말하면,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살림살이의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가치 지향이다. 그런 한에서 실업, 빈곤 및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 영역일 뿐이다. 아마도 공생의 관계 회복, 포용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는 속에서는 설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들 현재의 우리 삶이 더 나아진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리라.

3.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 변화다. 당사자인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과 그들 간 네트워크의 숫자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괄목상대할 수준으로 증가했다. 필요를 가진 당사자들이 자립적으로 해결하고자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움직임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증거다.

또한 경제활동의 주체도 다양해졌다. 자활공동체 시절에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던 참여자들이 이제는 일반기업의 퇴직자나 청년, 주부 등으로 다채로워졌다. 무엇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 단지 일거리를 찾아 사회적경제기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참여자들 가운데는 역량이 자라서 조직의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생겨났다.

민간 네트워크들이 조직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민과 관이 함께 협의하는 회의체도 상설화되었다. 당사자 조직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민관거버넌스 구성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도 변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작게나마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과 공감대가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사회복지체계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혁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도 생겼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데는 법을 제정하고 지원제도를 운영해온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국민 인식의 변화도 전국으로 뻗은 제도화의 경로를 타고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난 면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관련 정책들이 국민생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제도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을 꾸러가는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낳은 1차 원동력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본인들의 자구적(自救的) 열정이야말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의 힘과 같기 때문이다. 이상이 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라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까?

첫째, 민간 당사자 조직들의 주체성이 약한 반면, 정부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사회적경제의 저변이 단시간 내에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공이 크다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주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당사자 조직의 주체성이 약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i) 당사자 조직들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조건 없이 따른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가리키는데, 대개는 민관협의기구의 감투와 돈(지원 예산)이라는 권력을 가진 정부관계자와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이다.
- ii) 당사자 조직들의 연합체 차원에서 필요한 법제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먼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원만히 실행되도록 협조하는 데 급급하다.

- iii) 개별 당사자 조직들은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 등에 의지해서 근근이 꾸려나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경제 차원의 큰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자기 조직의 경영에 매몰되어 각개약진 하는 성향을 보인다.
- iv) 사회적 가치, 창립 당시 설정했던 미션과 목적 등에 비추어 자기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성찰하지 않고 재무적 성과를 내는데만 골몰한다. 사회적경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채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생존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당사자 조직의 처지가 얼마나 허약한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은 ‘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한 번도 골똘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대로 고민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기본법의 제정을 일찌감치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안(案)에서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에 뒤늦게 물어왔다. 결국 기본법 제정에 대해 한 번도 ‘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 없는 연대회의는 정치인들의 일정에 맞춰 ‘어떻게’를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연대회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법 우선주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 대응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지원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이미 제공해놓고 있던 터였다. 당사자끼리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졸속함을 문제 삼거나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따지던 소수의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다물었다. 좋은 취지를 일부러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 사이에는 ‘뭔지 몰라도 법이 제정되면 하나라도 좋아지는 게 있겠지’ 하는 기대와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하나 없다’는 냉소가 교차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은 정치권력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절실한 필요’였지만, 현장 조직들은 아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정치판도 변화에 운명을 맡긴 채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처음의 입법 취지조차 무망한 채로.

이것을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의 제정 과정과 비교해보면 주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가들은 1970년대 말부터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책임지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법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확대된 공익성’을 담기 위해서는 다중이해관계자 구조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실제로 전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1985년 전국 집회 때는 550개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앞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였다.

정부와 당사자 조직 모두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다르게 행동했다.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위로, 철저히 상향식의 경로를 따랐다. 한 가지 서글픈 것은 이런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일부 논자들이 ‘한국적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하향식 법제화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족: 혹여라도 이상의 논의가 기왕에 발의된 기본법안조차 통과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민간의 당사자 조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관거버넌스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된다. 형식적으로는 전국에 수십 개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기구가 존재하지만 양자 간에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잘 찾아볼 수 없다. 요식행위처럼 이따금씩 회의가 개최되고, 그나마도 정부가 이미 확정된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의 회의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이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책임을 분담하는 식의 민관파트너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태도의 기저에는 민간부문 관계자를 함께 일을 도모하는 동반자라기보다 자신들이 주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신들이 기획한 것을 실행하는 자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들에게서는, 예외적 일부를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를 기존 정책의 도구로만 여기는 정부기관의 협소한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들은 보다 민주적인 미래 사회를 향한 큰 그림 속에서의 종합적 평가보다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 전시효과에만 관심 있어 한다. 자연스럽게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자기 성찰과 혁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당사자 조직들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가 배분하는 자원을 쫓는 데 열심인 반면, 타성을 벗기 위한 자기 성찰에는 소홀하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요소인 자발성과 자주성이 약한 조직들이 자주 발견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위기의식도 열은 편이다. 제도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성향—스스로를 돕고자 전심전력하는 태도의 중요성은 퇴색하는 분위기이고, 사회적경제 1세대 중에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자기 조직에만 몰입하는 경향은 연대와 협동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잘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기 조직 이기주의가 그 하나라면, 조직 간의 다름을 존중하거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 또한 다른 이유다. 연대를 위한 그간의 모임들이 시간만 축내며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기억도 협동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세 번째 이유다. 그래서 협동과 연대를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실에서는 서로 힘과 뜻을 모으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와 정책적 환경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지방이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또한 한 번 자원의 접근성과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오래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과제

1)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단지 일자리 정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복원되는 새로운 사회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당사자 조직이 대등한 동반자로서 실질적 의미의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걸치레에 불과한, 그리고 민간 참여자가 정부관계자의 보조자 내지 협력자에 머무는 작금의 구조는 개혁돼야 마땅하다. 만약 (청와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위에서 민간의 의견과 실천의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진척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진다면 역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타율적이고 형식적인 집체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인식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순환근무제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회적경제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관계가 수년 씩 제자리에서 맴도는 경우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관 제도나 개방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적용을 고려해볼직하다.

2) 민간의 당사자 조직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힘이란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에서 오는 권위와 조직의 세력이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과 철학을 잇고 관성에 젖어있는 조직들이 적잖게 생겨난다. 협동과 연대의 원칙은 아랑곳없이 영리기업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회적경제의 근본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과 자정(自淨)의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조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결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찰과 자정의 운동은 누군가가 다중을 향해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공감하는 당사자 그룹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실천해나감으로써 눈덩이 커지듯 서서히 확산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지침—가령,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공유하며, 이를 실천하는 조직들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실천지침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의 평가도구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용해 자기 조직의 미션과 목적 등에 비추어 어떤 내용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산출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자기 의무화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실천 과제는 민간이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촉구해도 그것만으로는 정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당사자 조직들이 실제로 힘을 갖고 힘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관행을 만들어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유의미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모델 혹은 사례를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워크숍은 연대의 당위성 때문에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돼온 종래의 회의체들에 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대는 사업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키워야 한다. 이러한 사업 연합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종업체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큰 사업(예컨대, 공공재정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인접한 영역과의 협력사업 또한 적극 모색하고 개발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역시 참여 기업들이 연대의 효용을 직접 체감하게 돼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상의 연대는 조직유형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끼리, 혹은 협동조합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조직유형이나 소관부처에 상관없이, 오로지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합되는 관계여야 한다. 물론, 같은 조직유형들의 협의체도 필요하긴 하지만, 협력의 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로 열어놓을 때 비즈니스 측면의 실질적 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역에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민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계획 중인 전국 차원의 금융 전달체계만 바라보지 말고, 기존의 금융 기관들 가운데 각 지역에서 사회적 금융의 중심 노릇을 할 곳을 찾아서 지역의 독자적인 자조기금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중간지원기관은

자기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중간지원기관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만, 현장 조직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중간지원기관의 기능 중에는 행정기관이 해도 좋을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 주관 행사의 대행 내지 보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조직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는 거리가 있는 잡다한 일들이 포함돼 있다.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지원 같이 정작 사회적경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역할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사자 조직들의 사업 네트워크 조직화를 지원하는 일이다. 사업 연합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은 당사자 조직들만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흩어져 있는 당사자 조직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데도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지속적 접촉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터로서 중간지원기관이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으면서

외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을 수입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서 그것의 본질을 실행해온 전통이 있다. 우리는 그 전통이 지녔던 건강함을 거울삼아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쳐보아야 한다. 그 건강함의 문화 속에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침이 들어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은 그간 소홀했던 협동과 연대의 원칙을 되살려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작은 협동들을 실천하면서 큰 연대의 경험을 쌓아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민간부문의 연합체는 정부의 피동적 대화상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요구하며 관리하고 배분하는 책임 있는 실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원주에서는 이런 제안이 들린다. 과거 시대에 혈연, 지연, 학연이 기능하던 자리에 이제는 협연(協緣)—협동으로 맺어진 인연—을 채워 넣으면 어떨겠느냐고. 불평등과 차별의 칼바람이 자꾸 거세지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사람 관계의 끈을 열심히 이어서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것일지도 모른다.

붙임자료 6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간점검 리포트

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간점검 리포트

2018. 12.



[정책위원회]

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제안과 정부 정책의 개요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7년 대선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3대 핵심 정책과제

1.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인정하는 체계로 구성,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

2.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3.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

1)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

-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정비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협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고용/창업/연구개발/금융 등 기업지원정책 및 공적자원 연계
- 사회적경제의 공공조달분야 및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

2) 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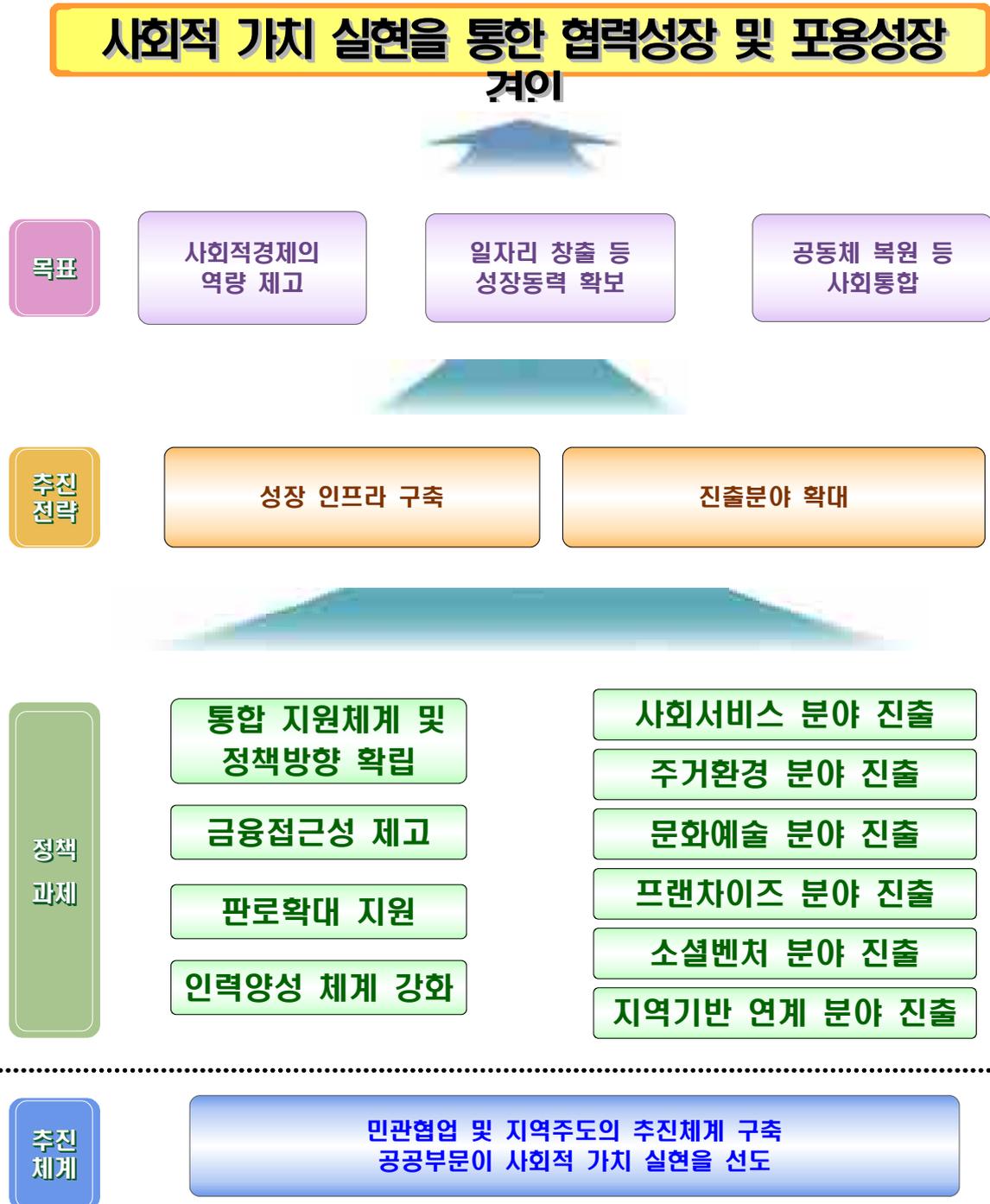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 X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
- 사회적경제 X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체계의 확산 (에)
- 사회적경제 X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생산, 소비 체계의 확산 (식)
- 사회적경제 X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실현 (주)
- 사회적경제 X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 (교)

- 사회적경제 X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일)
- 사회적경제 X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현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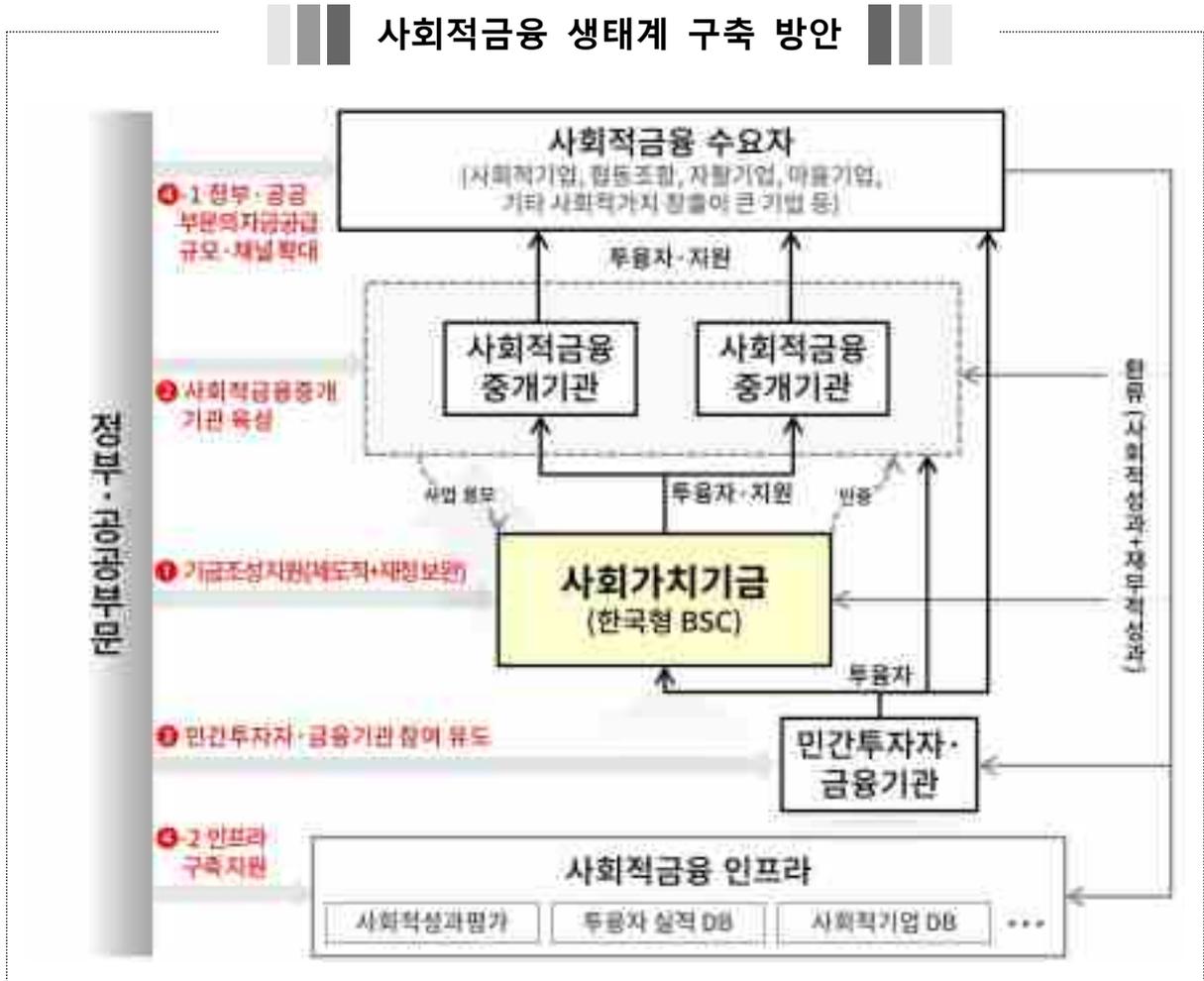
* 특별제안 1 :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육성하는 헌법 개정 추진

* 특별제안 2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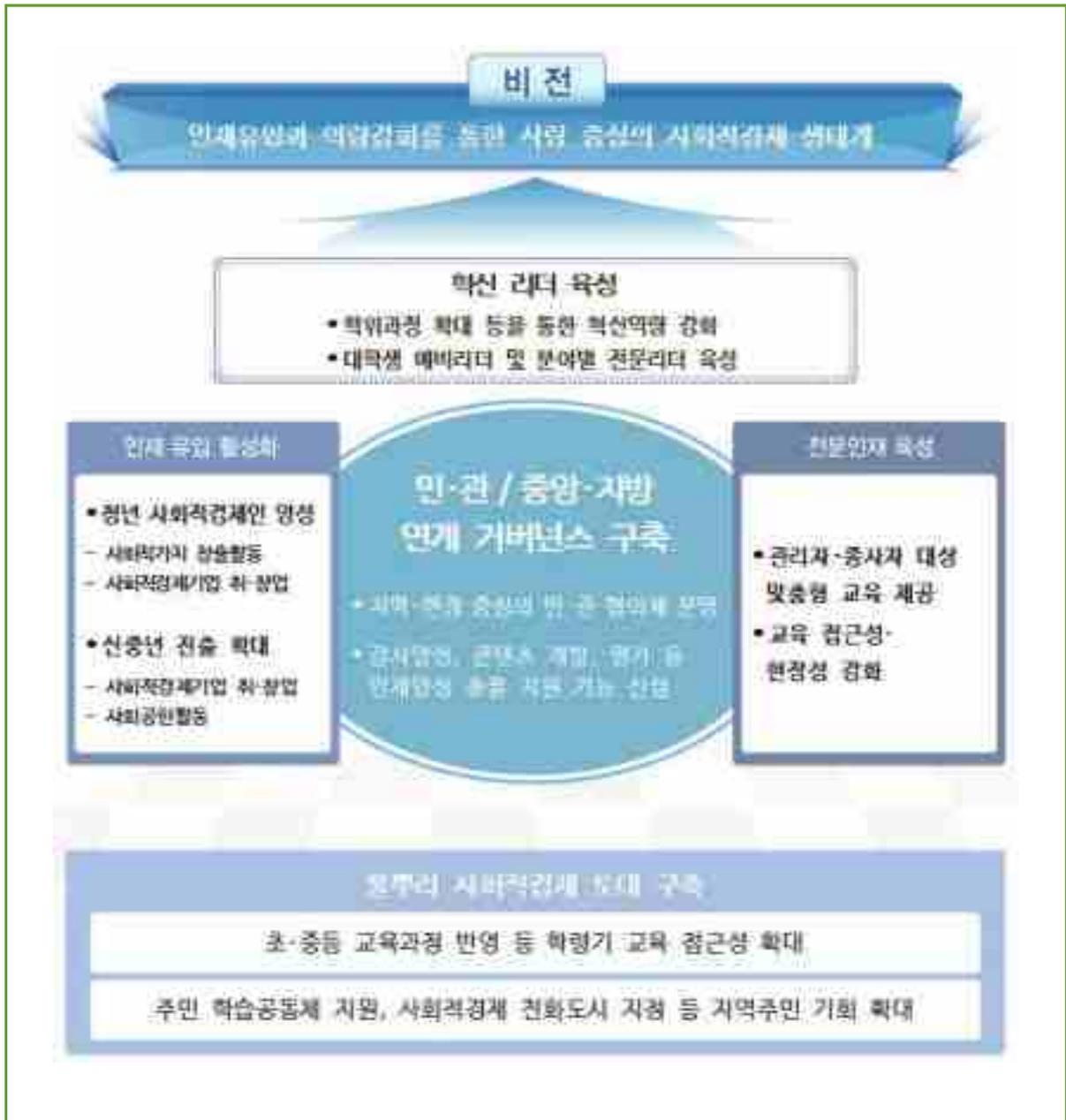
2) 정부_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년 10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3) 정부_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 8일, 관계부처 합동)



4) 정부_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년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



- 다양한 인재가 유입되고, 전문가로 키워지는 육성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 양성
-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하도록 지역·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

II 연대회의의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1) 연대회의의 대선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

| 구분 | 연대회의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인정하는 체계로 구성,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음. 2. 대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학교 협동조합 지원방안 등의 범 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3.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공식 직제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여 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음. 4.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관계부처 T/F 구성 및 운영 (기재부 및 12개 관계부처 참여)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부 - (역할) 정책방향 제시, 쟁점조정·의결, 정책대안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부처간 협의·의견 조율 수행 등 |
| 내 실 있 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 규정 및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 인정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정책,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환경의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가치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그러나 정부여당 및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및 비협조로 인해 20대 국회에서도 법률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 <p>신협, 농협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상호금융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정비</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137개 신협을 지정 2. 신협이 타 법인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18.4.3~5.14)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개위 예비심사('18.7.23) |
| <p>1.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정비</p> | <p>중소기업은행과 같은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금융기관 설립방안의 검토와 추진</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논의, 추진상황 없음. 2.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되어 있음. (협동조합이 금융,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
| | <p>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기획재정부) 2.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조성은 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불가한 반면 민간 주도의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추진하고 있음(2018년 재단법인 설립추진 및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도매기금 조성)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음. |
| | <p>사회적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거래소 설치</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체적인 논의없음. 2. 민간 차원에서도 사회적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제기 및 검토는 아직 없음. |
| | <p>협동조합의 자조적 자금조달수단 확대 : 우선출자제도, 조합원차입제도의 도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 2월, 정부(안)으로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2.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검토 중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 <p>이종 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 허용 : 협동조합조합기본법 개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 2월, 정부(안)으로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2.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검토 중 |
| <p>2.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협력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p> | <p>사회적경제 조직간 연합조직 설립 허용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
| | <p>연합조직을 통한 공동사업, 기금조성, 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2.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직접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조합의 참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음. 3. 생협법의 경우,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준비 지연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
| | <p>법인세/취등록세 감면 등 사회적경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 법인세법, 지특법, 조특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일괄 인정 -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2. 그러나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 | <p>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간 상생, 협력을 촉진</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었고 국회에 생협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법률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p>3. 고용/창업/연구개발/금융 등 기업지원정책 및 공적자원 연계</p> | <p>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고용/창업/연구개발/금융 등 기업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p> <p>사회적경제 조직이 차별 없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제도, 기업지원 정책 및 공적자원(금융, 자금, 공간 등 공적 인프라)을 차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요소의 일괄 점검 및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책 정비</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 - 총액 대출목표 운영 중(2018년 350억원) 2. 2018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중 100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전용으로 편성 3.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 상품 개편 4.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확대 (2018년 1,000억원 예상) 5.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모형 구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 시 활용) |
| <p>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p>4. 사회적 경제의 공공조달 분야 및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p> | <p>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조달 입찰 기준 마련</p> <p>공공조달 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설정 및 실천</p> <p>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약계층 일자리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 2.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 신설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 책임) 조정으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개정안 초안 마련('17.11월)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평가비중 확대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17.12.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격심사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근거 신설('17.12.28)로 우선구매 촉진 2. 입찰 가점 및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가점)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시행('18.1.1.)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발령·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시행('18.7.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확대 방안을 제시 (과제별 추진현황 5. 사회서비스 분야 참조)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개선</p> | <p>신협의 신규 설립 확대</p> | <p>1. 신협의 신규설립은 금융 당국의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않음. (부실, 군소 신협 난립 우려)</p> |
| <p>5. 신협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p> | <p>신협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설립, 운영교육, 홍보,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p> | <p>1. 신협의 사회적경제 지원기능 강화 : 거점신협 지정, 운영 등</p> |
| | <p>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별도의 공공조직(각종 진흥원 등)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의 연합회(생협), 중앙회(신협)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p> | <p>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지연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체계의 개편, 개선에 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p> |
| | <p>신협을 『사회적경제 특화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으로 활용</p> | <p>1.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거점신협의 지정 등 신협의 역할 확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1.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p> <p>1_1. 육아와 보육</p> | <p>1. 국가는 육아의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경제는 운영의 공동체성을!</p> <p>1)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p> <p>2)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의 10%를 사회적경제가 운영</p> <p>3) 보육료 지원 현실화, 누리과정 보조금의 중앙정부 책임 명확화</p> <p>4) 바우처 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p> <p>2. 육아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의 확대</p> <p>1) 공동육아 돌봄공동체와 같은 품앗이 모임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간 지원</p> <p>2)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와 운영 안정화</p> <p>3)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p> <p>3. 학교 밖 방과 후 교실 활성화 : 생애주기에 따른 공동체 돌봄의 실현</p> <p>1) 사회적협동조합과 학교 방과 후 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활성화</p> <p>2) 협동조합 방과 후 교실의 활성화</p> <p>3) 지역사회 내 초등방과 후 및 체험활동 위주의 학교 밖 방과 후 클럽 활성화</p>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추진 (2018.3.12)</p> <p>3. 참고 : 보건복지부 _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 / 2018.11.20)</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1.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p> <p>1_2. 의료와 돌봄</p> | <p>1.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p> <p>1) 노인 주치의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70대 이상 노인에게 대해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후 전 노인계층으로 확대 적용 - 지불 보상방식 전환 :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로 전환 - 주치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 <p>2) 장애인 주치의 사업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 중증장애인 주치의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행 <p>2.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 병원비 무상지원 (18세 미만)</p>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케어 (Community Care) 추진 (2018.3.12)</p> <p>3. 참고 : 보건복지부 _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1단계 : 노인커뮤니케어 / 2018.11.20)</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1.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p> <p>1_2. 의료와 돌봄</p> | <p>3. 지자체 수준의 돌봄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센터 설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돌봄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위원회 설치, 운영 -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센터 설치, 운영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p>4. 우리 동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설치 - 정부의 노인종합돌봄서비스 2배 이상 확대 - 공공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 <p>5. 수요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에 대한 부가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교육훈련 지원 - 한부모가정 돌봄서비스, 산후관리 서비스의 확대 및 돌봄협동조합 우선 위탁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추진 (2018.3.12)</p> <p>3. 참고 : 보건복지부 _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 / 2018.11.20)</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2.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의 확산</p> <p>2_1.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p> | <p>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도형 재생가능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목표 수립 -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p>2.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소비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 단가의 보장 -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 안정적인 시민주도 에너지 사업의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유희공간의 장기 임대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재생에너지 3020 (2017년 10월)</p> <p>1) 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 -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p>2) 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확대 : 협동조합형, 시민참여펀드형, 농촌태양광 확대 등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생산, 소비 체계의 확산</p> | <p>1. 도-농의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정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존의 농림어업 분야 경영체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정책 및 지원대상 정비 <p>2.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지, 마을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 -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 간 직접 거래 및 교류활동 활성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강화 : 농업의 부가가치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예 : 농축산물 가공사업, 도-농 직거래 사업, 농축산물 계약생산-책임소비 활동, 친환경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지역기반 연계분야 : 사회적농업 등의 내용 참조</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4.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실현</p> | <p>1.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택의 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주거 공급 확대 <p>2.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택지의 저렴한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대상을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나 비영리단체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주택(사회주택) 공급을 확대 -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예: 시세 80% 이하) 책정 등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 - LH, 지자체 공사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를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에 저렴하게 우선 공급 -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농촌의 기존 노후주택의 재생과 임대사업을 촉진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6. 주거환경분야 참조</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p> <p>5.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실현</p> | <p>1.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지역사회, 마을교육의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확대 - 더불어 행복한 경제교육, 청소년들의 지역참여 활동 활성화 - 지역밀착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p>2. 협동을 통한 교육복지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과 후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의 설립 촉진 -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 확대 : 매점운영 및 교복/교과서 공동구매 등 <p>3. 각급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학교협동조합활성화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효과와 공공성을 인정하고 비영리성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의 재정, 행정적 지원의 근거 및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학교 내 시설(시설, 토지, 물품 등) 무상 사용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 내 학교협동조합을 주관하는 부서의 설치 및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기타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회 보고 정기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타 연관 법률 등 개정 추진, 학교평가에서의 우대 가산점 부여,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상업화 제한, 교육기관 내 재화와 용역에 대한 비과세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부, 2018.9.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2)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 3)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예정)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 4) 대학생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6.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p> | <p>1. 불안정노동,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하는 현실의 개선을 위한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계약직 노동 등 불안정노동,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실업대책의 보장을 위해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을 도입, 활성화 <p>2.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기존 기업의 노동자 인수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협동조합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기업을 노동자가 직접 인수하여 경영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필요한 기업인수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마련 (사례 : 이탈리아 마르코라법 등) -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같이 노동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여 우리사주가 될 경우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노동자협동조합에도 제공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일자리분과에서 기획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p> <p>3.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소셜벤처 분야 참조</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6.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협동조합의 활성화</p> | <p>3.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청년, 장기실업자, 장애인, 조기은퇴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 및 고용확대 지원 <p>4.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대학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강화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4. 인력약성체계 강화 참조</p> <p>3.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소셜벤처 분야 참조</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신의 형성</p> | <p>1.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의 자치력과 지역비즈니스 수행 역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또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주민 사업체계 구축 <p>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국공유 재산의 사회적 활용 촉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인 주민조직이나 해당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역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국·공유지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 - 도시재생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률을 일관되게 정비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현황 참조 (6. 주거환경분야)</p> <p>3. 참고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3) 참조</p> <p>1) 정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2) 도시활력 회복 (3) 일자리 창출 (4)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p>2)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2)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3)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 (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5)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p> <p>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형성</p> | <p>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유휴공간 신탁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가 유휴공간(건물, 주택,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할 경우 재산세 등 세금감면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유휴공간 신탁이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취약계층, 예술가에게 재임대하여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유휴공간 신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공동체토지 신탁(CLT) 육성 : 공동체토지 신탁을 통해 지역사회(비영리조직 등)가 토지를 사실상 영구히 소유(장기신탁)함으로써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집주인과 임대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 2. 참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현황 참조 (6. 주거환경분야) 3. 참고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2) 도시활력 회복 (3) 일자리 창출 (4)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2)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2)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3)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 (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5)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사회적 경제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p> <p>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도시재생과 시민자산의 형성</p> | <p>4.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 및 복지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지역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p>5. 도시와 농촌의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준비부터 마을정착까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 플랫폼 마련 - 농어촌 정착 기반 확보를 위한 후견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 <p>1. 해당 업종/분야에서의 세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p> <p>2. 참고 : 과제별 추진현황 10. 지역기반 연계분야 : 사회적농업 등의 내용 참조</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p>특별제안</p> <p>1.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육성하는 헌법 개정 추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가치로서 자유 및 창의와 함께 상생을 기본 가치로 삼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정으로 개정 - 농어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육성과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보장한 헌법 제123조 제5항을 확장하여 1987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자조조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 <p>1. 정부 여당의 개헌(안)에는 제안내용이 반영, 포함되었으나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p> |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
|---|--|---|
| 특별제안 2.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재벌에 편중된 경제, 산업, 기업정책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수립 - 사회혁신, 포용적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 불공정거래 및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정과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의 시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2.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3.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 추진 4.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추진 중 (서울시, 경남도 등) 5.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 추진 (2018년 9개 조합 선정) |

2) 연대회의 사회적금융 정책제안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

| 구분 | 연대회의 정책제안 (2017.9) |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2018.2) |
|------------------|---|--|
| 정책자금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 1.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사회적 경제 지원자금>으로 편성 및 운용 - 2021년까지 정책자금 1조원 집행 -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사회주택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도 정책자금과 지원대상에 포함 - 자금 심사 및 집행은 신용협동조합, 민간 사회적금융회사와 협업 | 반영내용 - 신보가 5년간 5천억 조성 등 정책자금이 크게 확대될 예정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등이 확대될 예정 -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 |
| | 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반영내용에 대한 평가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확대는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제안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 업종별 제한 철폐, 비영리법인(사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 여성기업 지정요건 변경 등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음 |
| | 3.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자펀드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운용기준 마련 | 반영내용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형태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구 신설 - 기존 사회적 금융회사가 운용사(GP)가 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별도 운영팀 신설, 적절한 성과보수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의 자펀드를 확대하고 기대수익률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용기반 마련 - 최근 전문투자형 PEF, 벤처,창업전문 경영참여형 PEF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임팩트 투자사의 참여기회 확대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가장 중요한 자금공급 확대는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나, 사회적경제에 알맞은 투자기구 마련에 대한 제안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금융을 위한 적합한 투자기구 마련도 고려되어야 함 |
| <p>공제 및 기금을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p> | <p>1.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적 민간기금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이 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경우 세제 지원 - 사회책임투자(SRI) 연계, 공공기관 사회적가치평가와 연동, 공익신탁 연계방안 등 조합원이 아닌 출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재투자제도를 도입을 통해 민간기금 조성 촉진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일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에 따라 반영여부 결정 |
| | <p>2. 당사자 조직의 공제기금(또는 공제조합)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 마련 - 조성된 공제기금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매칭 - 사회적경제조직이 출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 - 사회적 경제기업 혹은 종사자 대상으로 손해공제, 생명공제 등 다양한 공제사업 허용 - 공공입찰시 공제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반영 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조합) 설립을 제안했으나 본 활성화방안에는 제외됨. |
| | <p>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금액 조성 - 중앙정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사회적경제조직의 민간기금, 민간 사회적금융사에 매칭·운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소매금융기관이 운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3천억원 규모를 목표로 사회적경제연대기금(도매기금) 조성하고, 소매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민간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추진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일부 반영</p> |

| | | |
|---------------------------------------|---|---|
| | <p>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기금은 정부의 반대의사가 강해 추진되지 못함. - 지자체 별 사회투자기금 등 조성, 운영하고 있음. -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민간기금으로 추진 |
| <p>상호금융 기관의 사회적 경제 지원 강화</p> | <p>1. 공동유대 확대, 신규설립 허용, 조합원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광역단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거나, 거점별 단위신협을 지정하여 사회적 경제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공동유대 확대 - 신협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 신협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단체조합) 설립 허용 -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협 정조합원(법인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공동유대를 이탈하더라도 정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개선 - 신협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목적의 법인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 유도 - 신협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 거점신협의 지정, 운영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일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설립허용은 고려되지 않음 |
| | <p>2. 상호금융기관의 기업평가시스템, 위험관리규정, 감독규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제도 개선 - 신규 대출상품 출시 - 단위신협의 신용보강,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기금 조성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신협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취급 허용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 마련 <p>반영수준에 대한 평가</p> <p>일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스템 마련, 감독규정 개정, 위험관리규정 개정은 제외 - 신협의 정책자금 운용은 제외 |
| <p>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체 자금조달 역량 강화</p> | <p>1. 협동조합 출자제도 개선방안 연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자본증권, 우선주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자금조달방안 연구하고, 이 경우 조합원 1인 출자좌수를 30%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 <p>반영내용</p> <p>본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정부발의안)에 반영</p>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출자 조합원 제도의 경우 본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정부발의안)에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과제로 추진 중 |
| | <p>2.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메자닌 투자, 융자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집행사원(GP) 자격 기준 완화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 제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P2P대출회사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대부업법 개정) |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일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소매 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은 제외 - P2P 활성화방안 제외 |
| <p>사회적금융 성장 기반 강화</p> | <p>1.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기관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가치등급을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 공공조달, 지원사업에 활용 | <p>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맞춤형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협의회 방식의 협력관계 구축 |
| | <p>2. 사회적 경제정보 DB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및 폭을 확대 |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일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은 제외 |
| | <p>3. 사회적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자격제도를 통한 전문가 양성 | <p>반영내용</p> <p>반영내용에 대한 평가</p> <p>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요도가 떨어져서 언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금융 인재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은 제외 |

Ⅲ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과제별 추진현황 [정부 자료]

1. 통합지원체계

1-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정부대안 마련(~ '17.10월)
- 법안소위 위원 대상 법제정 필요성 설명 등 입법노력('17.9월 중순 ~)

1-2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

- 사회적경제 관계부처 T/F 구성 및 8회 운영
 - (구성) 기재부 및 12개 관계부처* 국장이 팀원으로 참여
 - *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부
 - (역할) 정책방향 제시, 쟁점조정·의결, 정책대안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부처간 협의·의견 조율 수행 등

1-3 사회적경제 통계 기반 구축

-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업체정보 현행화(~'18.7월)
- 금년 시범 작성을 거쳐 '19년에 국가승인통계로 공표 추진 예정

2. 금융접근성 제고

2-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 상품 개편 완료 ('17.10.25)
- '18년 중 4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향후 재정 지원 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계정 신설 예정 ('18.1~7월까지 591억원 지원)

<지역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및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으로 확대 시행('18.2.22~)
- 향후 전문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개별기업 홍보 강화 및 16개 지역신보별 지원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내실화

2-2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보증기준 개선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신용보증 심사기준표를 마련('17.10.25)
 -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18년 중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 예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
 - 연구용역 완료('18下) 후 평가모형 구축('19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심사 및 금융지원 시 활용 예정

2-3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목표('18년 350억원) 운영
- '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실시('18.1월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 '18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중 100억원(목표대비 50억원 상향)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전용으로 편성 ('16년 15억, '17년 17억)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은 '18.9월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19.1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예정

2-4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개발완료('17.12월) 및 평가지표 운영 중('18.1월~)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평가외에 사회적경제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

2-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사회적기업펀드 100억, 임팩트투자펀드 200억)
- 펀드운용·관리 평가시 '사회적성과'를 평가, 우수 사회적기업에 적극적 투자 유도,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2-6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 민간의 참여와 투자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정부가 보상하는 체계 확산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
 -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매뉴얼) 마련·배포('17.10.),
 - * 지자체·민간 대상 설명회('17.10.) 및 권역별 심화 설명회('17.11.3회),
 - *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17.12.),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입법안 마련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18.12월)

2-7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 접근성 제고
 - 크라우드넷 內 사회적기업 정보사이트 오픈('18.1월)
 -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4월)
- 제도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2-8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 기부금인정제도 도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258개)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일괄 인정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 기부자는 손금산입(세액공제) 혜택 가능토록 조치('17.10.31)

2-9

감면조례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세제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유도
- 지자체별 감면조례 신설 현황파악('18.3월, 28개) 및 지속 관리

2-10

사회적경제기업 등 국유건물 입주시 우대

- 대부로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작업 중(기재위 법안소위 계류중)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동법제정을 통해 우대조치 적용 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등 확정 필요

2-11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 확대

-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PC, 책상 등) 무상 양여 대상 확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기여
- * 불용품 현황 조사 실시(~'17.11)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 부칙으로 물품관리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마련(금년 중)
- 금년 중물품관리법 개정안 검토 및 정부입법계획 제출 예정

2-12

신협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투자 확대

- 신협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18.4.3~5.14)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위 예비심사('18.7.23)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제출('18.10월) 예정

2-13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
 - * 협동조합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17.4~9월, 인하대.금융연구원),
 - * 우선출자 제도를 반영한「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안」마련 및 입법예고('17.10.19~11.29)
- 연내 개정안이 국회심의 완료토록 대응 및 하위법령 준비(연중)

2-14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 민간 주도로 사회적금융 전용기금(5년간 3,000억원 규모)을 설치하기 위해 사회가치 연대기금 추진단 구성·운영(2.28~, 총7회 회의)
 -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용기금의 법적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결정
- 전용기금의 기능,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 추진단 내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금년중 설립·운용 예정

2-15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
- 추진단 중심으로 인증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기금 설립 일정과 연계하여 마련 예정

2-16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추진단내 기금설립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정

2-17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

-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 민간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정관변경 실시('18. 6월)
- 신규 민간 사업수행기관,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7월~)

2-18

신협이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기금 설치 및 전용상품 개발을 통한 사회적금융 역할 제고
 -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예보료 인하('18.2.23)
 - * 기금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신협법 개정 추진
 - * 조합별 기금 출연 동의서 취합(7월말) 및 기금조성(8월말)
- 향후 전용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마련(9월말), 기존 대출상품 취급 기준 완화(9월말) 및 신협 사회적금융역할강화 방안 발표('18.下)

2-19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 지신보 연계 보증부 대출을 통한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방안」 연구용역 실시(금융연구원, ~'18.6월)
 -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협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 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시범지원 실시
- 사회적경제조직 대출 전용상품 실효성 검토를 거쳐 시범실시 추진예정

2-20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 * 금융위원장 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1차 회의 개최('18.4.4)
 - * 담당기관별 추진실적 점검(4.20, 서면)
- 향후 정례적으로 회의 개최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공통과제 진행 관리 예정

2-21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심사평가 개선에 활용
 - * 3.23일 1차 DB 개발일정 협의를 위한 Kick-off 미팅 개최
 - * 7.16일 신정원을 통한 정보공유 확대 방안 협의(금융위, 신보, 신정원)
- 정보공유 포맷·세부내용 및 표준 정보동의서 검토 → ('19.상반기) DB 구축 착수 예정

2-22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사업수행기관지원위원회' 설치(안) 및 운영세칙(안) 마련(4월),
 - * 위원회 개최, 민간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 배정 심의(6월)
- '18. 7월 현재 신규 사업수행기관과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중

2-23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엑셀러레이터 참여 유도
- 사회투자펀드(임팩트투자 부문) 운용사로 사회적기업 특화 엑셀러레이터인 크레비스 파트너스를 공동 GP로 선정('18.4월)

2-24

정부·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 정부·공공재원으로 사회적금융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매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선별기능 보완을 추진
 - 신보·지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 투융자 레코드·운영경험 축적중
- 사회적금융협회의의 투융자 DB 구축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경험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 검토

2-25

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성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사회적금융협회로 송부하여 별도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
- 기관별 18년도 성과계획 수립('18년 상반기)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배포(협회, 18.4분기) 및 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 홈페이지 게시('19.1분기)

3. 판로확대 지원

3-1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

-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 신설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책임) 조정으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
 - * 국가계약법 개정안 초안 마련('17.11월)
 -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평가비중 확대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17.12.28)
-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예정 : '18년 하반기

3-2~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및 구매비중 확대

- 적격심사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근거 신설('17.12.28)로 우선구매 촉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18.5월), 공포('18.5월)
- 입찰 가점 및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
 - * (입찰가점)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시행('18.1.1.)
 -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발령·시행('18.7.24.)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시행('18.7.27.)

3-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 · 공유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 * '17 권역별·업종별 공공구매 행사 실시(설명회 4회, 교육 4회, 상담회 2회 등)
 - * 공공구매 지원기관 전국 16개 권역 선정 및 운영
 - * 사회적가치 실현 지역 순회 워크숍 실시(8회)
- 전국 공공구매 지원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구매연계 및 우수사례 발굴 추진(~'18.10월), 사회적기업·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 추진(~'18.11월)

3-6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개편
 -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 ('17.12월) 및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18.4월~7월)
- '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 예정(~'18. 12월)

3-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온라인 사이트 확대 · 개편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분석·설계 완료, 개발착수
- 통합플랫폼에 등록할 상품 발굴 및 콘텐츠 제작(~'18.10월) → 사회적경제기업·공공기관 등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18.10월~)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정식 운영('18.12월)

3-8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존 유통채널 연계 강화

- 대형 유통채널 연계 및 맞춤형 유통채널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 '18년 현대·롯데백화점 설 사회적기업 특별전(1회, 67백만원)
 - '18년 GS홈쇼핑 등 기부·순환방송 송출(75회, 962백만원)
 - '18년 사회적기업 자체 유통채널 진출 지원 3차 대상자 선정 및 지원(28개소)
- 사회적기업 자체 유통채널 진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18.9월),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MD상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추가 개최(~'18.10월)

3-9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18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18.7.12~7.14, 대구 EXCO)

3-1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17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한 48개 상품개선 및 유통채널 연계 및 입점
- 상품 개선 실행 및 유통채널 연계 예정(~'18.11월)

3-11

사회적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평가지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대상 평가 시 가점부여 및 밀착지원
 - 주요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수출마케팅 우대 선정
 - 아트콜라보 매칭·상품화 마케팅 사업 우대 선정
 - 수출역량별(수출역량강화, 수출첫걸음, 수출확대)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 서비스 지원
- 아마존 입점 전주기 프로세스(판촉·물류 등) 지원 및 대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정, 무역관 전시 및 현지홍보 실시

3-12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 및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컨소시엄을 우대선정하고, 사전준비→현지활동→사후관리까지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과제를 우대선정하고,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입점 등 지원
- 우대선정 근거마련을 위한 지침 개정 및 관련제도 홍보('18.3~),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18.상~)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4-1~2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자료 개발진 선정('18. 4) 및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자료 개발진 합동 워크숍('18. 6)
- 사회적경제 관련 교원연수 실시('18. 7~8) 및 초·중·고 학교급별 사회적경제 교육내용 자료 개발·보급예정('18. 12)

4-3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이 사회적경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 진행(국평원, ~'18.4)
 - 학교협동조합 관계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18.5), 관계 부처·부서 등 의견수렴('18.7)
-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18. 9)

4-4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 보급 확대

- 노인의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 반영
 - 양코르라이프캠퍼스(구. 노인취업교육센터) 추진계획 수립('18.2월)
- 노인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콘텐츠 마련 및 강사 양성('18년) 및 양코르라이프캠퍼스(구.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교육 실시('18년 중)
- 새일센터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지속실시, 새일센터 종사자 워크숍 개최 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소개('19.2월)

4-5

공무원,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신설(인사처)

- 공무원 일반 및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신설, 강화
 - 국가인재원 각급 기본교육과정(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 등) 내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관련 교과목 반영
 - 전문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사회적가치 이해과정('17.11)' 및 '일자리경제 과정('17.9, '17.11)' 운영
- 부처별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과목 편성

- 및 연중 운영, 사회적경제 이리닝 교육과정 개발 추진('18년)
- 조달전문교육과정에 '사회적가치' 교과목 편성 운영(계속)

4-6

사회적경제 관련 평생학습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프로그램 확산 및 사회적경제조기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공모('18.4~5) 및 선정('18.6)
 - * 신규 지정 7개 시·군·구, 특성화 지원 13개 시·군·구
-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속 실시('18.7~)

4-7~8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 인력풀 구축

- '17~'1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사이버 교육 과정 개설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 공직자 및 민간전문가 91명 양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의를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 공개('18.8월)

4-9

사회적경제 리더 과정 확대 운영

-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으로 변경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대학 선정 및 운영
 - 현재 4개 대학 운영 ('18년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국민대, 충북대)

4-10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 연구개발·학부개설 등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 현재 한양대와 숭실대 학부과정 개설('18.3월) → '19년 신규 3개 대학 지정,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문제해결형(사회적경제 등) 유형 등 신설
 - '19 예산안 반영 추진('18.7.~8.) → 예산 반영 시 사업추진('19.상반기)

4-11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지역 대학·선도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기관 대상 정책 홍보 (~'18.8월)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직업훈련 실시 예정 ('18년 下)

4-12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장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18.7.3)
- 종합계획 추진과제 이행 및 인재양성 정책협의회 구성(~'18.12)

4-1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및 유형별 지원 차별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최종 선정 (565팀, '18.2월)
 - 추경 반영을 통한 추가 창업팀 선정 (128팀, '18.7월)
 - KOICA 등과 연계한 해외진출형, 전문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 등
- '18년 7월 현재 창업팀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4-14

'소셜캠퍼스 온' 조성·운영

- 창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

- '17년 서울, 부산, 전주 캠퍼스 운영 (159개기업 입주)
- '18년 3개소 추가 조성(자치단체 입지 수요 조사 및 현장 실사 및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및 입지 선정 ('18.~4월) * 경기, 대구, 대전
- 디자인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18.7~11), 입주 및 운영 ('18.10.~)

4-15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 '18년 상반기 공모·심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680개소 선정
 - * (예비)사회적기업 636개, 사회적협동조합 19개, 마을기업 25개
- '18년 하반기 지자체 사업개발비 추가 공모 심사 지원예정 ('18.8월~)

4-16

창업 아이템별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계획 수립(2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2차) 및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선발·지원(5월)

4-17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 유형별 R&D지원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확산 지원
 - R&D 신규과제 20개 선정완료('18.6월)
 - 커뮤니티비즈니스 추가공고 신규평가위원회('18.7.월, 3개 추가선정)
-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정('18.下)

4-18

사회적경제기업의 R&D 기획역량강화교육 우대

- R&D 전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수요조사, 신청 사회적기업에 방문형 교육 실시 및 수시 접수에 따른 교육 시행('18. 상)
- '18. 하반기 수요조사 실시 및 교육계획을 관련 지원기관에 안내하여 교육 참여 독려

4-19

대학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및 질 제고

-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활용,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
 -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 장학생 전원 사회적 경제 관련 직무 교육 의무화 완료('18-1학기 창업지원형 선발 장학생 267명)
 - *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시행계획」 반영 완료 ('18.4.9.)
- 사회적경제 포함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대학 컨설팅 지속 실시

4-20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 국가시책사업화 준비
 - 청년실업 문제 관련, 추경 통과(5.21.) 후 공모.심사, 추진체계 구축 등을 거쳐 사업 시행(7월~)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수립.발표(3.15.)
-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성과분석 및 후속조치(지속)
 - * 민관합동 TF 주관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 주기적 홍보(7월~)

4-21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 폴리텍 內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 운영,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베이비부머 등 퇴직인력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폴리텍) `18년 서울강서·정수·인천·대구 신중년 특화 캠퍼스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 `22년까지 34개 쏢 캠퍼스로 확대
 - (민간자원연계) 매년 신중년 200명 대상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 제공,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으로 연결
- 향후 동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지속 확대 실시
 - (폴리텍) `22년까지 34개 쏢 캠퍼스로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총괄관리자 양성과정) 사업 성과에 따라 지속 사업으로 확대
 - (민간자원연계) 매년 2억원씩 `22년까지 10억원 투입(신중년 1천명 취업연계)

4-22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창업과정을 확대 지원

< 시니어 창업입문과정 운영 세부현황(상반기) >

| 운영기관 | 지역 | 신청인원 | 수강인원 | 수료인원 | 수료율(%) |
|---------|----|------|------|------|--------|
| (주)상상우리 | 서울 | 58 | 25 | 22 | 88 |

- 중장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창업과정 확대 예정 (`19년 예산) 60백만원(2개소×30백만원)

4-2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퇴직인력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확대하고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허브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
 - (전문위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등 지원, 향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기업 등

과 연계하여 전문위원 pool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정

-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프로보노 등 재능기부자와 사회적경제기업 수요 검색, 매칭, 평가 등의 기능을 갖춘 온라인사이트 재능기부뱅크 운영, 향후 대기업, 직능단체 등과 협력하여 프로보노 DB를 확대 구성하고, 1:1멘토링, 교육, 맞춤형 지원(ex. 외국어 통번역, 상품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매칭 및 활동 지원 예정

4-24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17년부터 5일이내의 중소기업탐방 사업 추진 중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탁기관(37개소)이 1일 5시간~5일 이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참여청년 모집·기업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1천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확대할 예정

4-25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봉사활동을 종료한 귀국단원에게 KOICA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18년 하반기 중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교육 제공 및 사회적경제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우수인재 추천, `19년 하반기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개최 예정

4-26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 대학생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협 활동배경과 다양한 학내 협동조합 활동 등 교육 실시
 - `18년, 한국 대한생활협동조합협의회 교육과정 지원(2과정)
- 향후 연간 대학생협 관련 교육 3과정 내외 지원 예정
 - `19. 3월 사업공고→ 4~5월 교육기관모집·확정 → 6월~10월 교육 실시

4-27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8년 시범사업으로 중간관리자 대상 통합실무역량강화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예정 (8~10월)
- '19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추진
 - 세무·마케팅·인사 등 필요 역량별로 모듈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통해 중간관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4-28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사회적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 탄력적으로 운영 검토
- 연 1회 수요조사 실시 후 맞춤형 훈련 제공 예정

4-29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을 운영('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하여 민간 전문교육 콘텐츠를 탑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 '15~'17년간 무크 선도대학(매년 10개, 총 30교)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대학 등과 협력하여, 총 324개 강좌 개발·제공
- 사회적 경제 우수강좌 발굴·탑재(~'19.상.) 및 K-MOOC 사회적경제 분야 강좌 공모 및 선정 및 운영 예정('19년)

4-30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 중간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중심 전문교육 확대
 - 훈련 제공시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등 지원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모델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

4-31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 ('10년~) 사회적기업 → ('18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업개발비를 통해 종사가 역량강화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4-32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 ('18년) 교(원)장 자격연수에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 포함 운영(~'18.12.)
- ('19년) 교(원)장 자격연수 기본계획 작성 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추진

4-33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 (전국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협력사업 및 워크숍,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
 - (19년) 장기적으로 전국네트워크 및 지원센터의 재정자립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업종네트워크) 공동프로젝트 외부기관과 연계 추진(6건) 및 지원서 작성지원(4건) 추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시범추진
 - (19년) 업종별 공동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를 사회적경제 주요 업종으로 확대

4-34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 사회적경제 영역의 업종별 직무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부족함에 따라 현장과 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제공

| 기관명 | 추진 교육내용 |
|--------------------------|--|
|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 ○ 교육업종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로봇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 |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 ○ 돌봄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케어(치매돌봄) 기초교육 추진 |

- (19년)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네트워크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요 업종으로 확대 예정 (18년 2개소 → 22년 20개소)

4-35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 온라인 플랫폼, 네트워킹 기능을 갖춘 '인재양성센터' 설립
- '19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인재양성 정책 연구 및 패널 조사,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인프라 기능을 갖춘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연수 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설립 준비

5. 사회서비스 분야

5-1~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위탁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주체 명시, 공정경쟁을 위한 위수탁 규정(과도한 재정부담 기준 지양, 문제 법인 참여제한)을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 내」 개정하여 배포 완료('18.1월)
- 추후 사회적경제 위탁 활성화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보급('18년)

5-4~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제공기관 정보접근성 제고
 - 장기근속 장려금의 근속기간 산정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수가 고시 제11조의4, '18.1.12 시행)
 - 사회적 가치 관련 품질평가지표 공표 및 제공기관 설명회 개최('18.7월)
- 향후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방안 추진 및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확대 및 이용자 품질평가체계 구축('18년)

5-6~7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서비스 품질제고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강화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활동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도 및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지자체 평가포상 실시('17.9~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18. 하반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조직 이용 활성화 지속 독려(연중)

5-8~9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자활기업 및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규모화 · 전문화 지원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 시행('18.5월),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18.8월)
- 2018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지정('~18년 하반기)

5-10~11

新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충
 - 교육·컨설팅 확대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등) 진행
 - 관련 지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개정('18년)
- 향후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자체 독려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통한 '사회서비스 진출 사회적 경제기업' 제공기관 컨설팅 추진 및 실적관리 지속 실시 예정

6. 주거환경 분야

6-1~6

주거환경 부문

-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지원 상품모델(수요자중심형)을 개발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17.4분기~)
 - '18년 도시재생 기금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시행 중
- (임대주택)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기금 및 보증 지원방안 마련*, 토지임대부 시범 사업 추진 및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개소(6월)
 - 향후 수원조원 시범사업 착공 및 고양삼송 입주자 모집('18.12월), LH 매입임대 운영관리 위탁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18.8~9월) 예정

7. 문화예술 분야

7-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창작활동 기반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정책을 실시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재원조성 모델 개발 지원사업 추진(25개 기업 선정·지원)
-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홍보 지속 실시

7-2

사회적경제기업 유희·공공시설 지원(사용료 할인)

- 공연연습공간 사용료 할인, 우선사용권 부여 등 관련, 내부지침 검토(~'18.6월)
- 공연연습공간 사용료 할인, 우선 사용권 부여 등 관련 규정 수립 및 시행(~18년.7월)
 - 지침 마련 후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공연연습공간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22년)

7-3

문화시설, 프로그램 위탁기관 선정시 참여 유도

<작은미술관 확대>

- '17년 작은미술관 2개소 신규 조성(1.2차 공모 각 1개소) 및 작은미술관 7개소(누적) 운영 지원, 작은미술관 확대 운영 방안 연구 완료('17.11.~'18.4.)
- 향후 작은미술관 지원 체계 정비, 작은미술관 간 협력 증진
 - 문예회관 등 지역 유희공간의 작은미술관 활용 추진('18.4.~.12.)
 -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회 운영, 발전 및 협조 방향 모색(분기 1회)

<작은영화관 시설 확충>

- '17년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지속추진

| 구 분 | 대상지역 | 비 고 |
|-----|-------|---|
| 신 규 | 8개 지역 | 강원 315백만원(고성 225, 정선 90), 경기 500백만원(포천), 경남 1,550백만원(함안 850, 산청 700), 충남 500백만원(청양), 전남 500백만원(화순), 제주 500백만원(제주) |
| 계 속 | 5개 지역 | 강원 1,100백만원(횡성 400, 양구 400, 인제 300), 경북 450백만원(칠곡군 250, 울진군 200) |

○ '18년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예정

| 구 분 | 대상지역 | 비 고 |
|-----|-------|---|
| 신 규 | 6개 지역 | 경기 500백만원(연천), 경남 1,750백만원(고성 1,000, 하동 750, 경북 358백만원(의성 100, 봉화 258), 충북 600백만원(보은) |
| 계 속 | 3개 지역 | 강원 685백만원(정선 410, 고성 275), 경북 150백만원(칠곡) |

<실버극장 시설 확충>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버극장 시설 확충 검토
 - (전문가 의견청취) 실버영화관(舊 허리우드 극장) 및 안산명화극장 운영자(대표이사) 의견청취('17.10월, '18.1월)
- 고령화 시대에 실버극장 활성화 등 어르신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마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한 '19년 '어르신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예산확보 추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홍보 및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모집 공고 및 선정('18.1월~2월)
-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알림 노력은 지속하나 향후 도서관의 기본가치인 공공성을 기반한 경우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재검토

<토요문화학교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 토요문화학교('17년 186억 원, 800여 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 분야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18.5월~)

7-4

관광두레 조성(지역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육성)

- 관광두레를 통한 지역의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고용창출*(누적/명) | 76 | 243 | 290 | 374 | 495 |

* 고용창출(누적) :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민사업체의 상시 근무인력수

- 관광두레 선발 지역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별 주민사업체 발굴 확대하여 '22년까지 주민사업체 1,125개 육성

* 주민사업체(누적) ('19년) 475개 → ('20년) 670개 → ('22년) 1,125개

- 관광두레 '지원기간'에 집중되었던 육성체계를 『준비 > 창업(지원기간) > 유지·발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18년 중)

7-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확충

- 18년 스포츠클럽 1차 공모, 7개 클럽 선정(총63개소)

* '13년 8개소, '14년 9개소, '15년 12개소, '16년 7개소, '17년 20개소 선정 56개소

- 가칭『스포츠클럽육성법』제정 지원(의원입법, '19년)

- '22년까지 229개소로 확대하여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완성 목표

7-6

지역문화재단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지역문화재단 문화행사·공연 공모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향후 예산확보('19년~) 시 지역문화재단-사회적경제기업 공동 지역특화 문화행사 개최 지원(지역별 10개소 내외)

8. 프랜차이즈 분야

8-1~2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및 연구용역

- '18년 프랜차이즈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계획 공고('18.2월) 및 9개 조합 선정 및 사업수행 협약체결
- '17년 육성사업 지원조합(3개) 성과조사(~'18.12월) 및 '18년 육성사업 선정 조합 공동사업 지원 예정(~'18.12월)

9. 소셜벤처 분야

9-1~4

소셜벤처 육성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18년 1천억원 규모, 6개 운용사 선정)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18.7월 1개)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 향후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통해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공고 및 사업관리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추진

9 - 5~8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 '18.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된 소셜벤처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중이며, 전문가 협의회 주도로 판별 가이드라인 개발 중
 - *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대기업 담당자(SK 행복나눔재단, 현대자동차, LG 등), 소셜벤처 지원기관(기보), 학계 등 총 18명
-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 모형 개발을 완료예정('18.8월)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는 서울 성수동에 건물 임차하여 개소('18.하)
- 소셜벤처 정밀실태조사는 '19년 신규 예산 반영하여 추진('19.상)

9 - 9~11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 '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예산 협의 중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 확보('18.하) 및 소셜벤처 전문지원 기관 및 지방 혁신기관 선정 예정('19.상)

9 - 12~15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방안 구축
 -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시 서류심사 가점사항으로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항목 신설 ('18년 공고문에 반영 완료)
 - 소셜벤처 오픈바우처 지원사업 공고('18.9월)
 - 가을학기 (예비)창업자 550명 추가 선발(8월)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12개 신규 개소 ('18.9월)
- 우수 청년 소셜벤처와 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협의('18.하)

9 - 16~18 소셜벤처 성장 촉진

-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해 '18년 상반기까지 보증 97억원, 융자 176억원 공급하여 원활한 금융지원 수행 중
-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 (보증) '18년 300억 → '19년, 700억원 (융자) '18년 350억 → '19년, 400억원
-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구축 이후 '세부추진방안** 협의 ('18.하)
 - *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가치평가모형 개발,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 운영
 - ** '19년 'R&D기획지원사업'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추진계획 반영

9 - 20~21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소셜벤처 성공사례 포상·홍보 및 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내 CSR 과정 설치를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청소년비즈쿨 지도교사 직무연수 커리큘럼에 소셜벤처 성공사례 및 사회적 기업가 정신 특강 포함('18.7월)
 - 상반기 중 440개 창업강좌(정규강좌 403개, 비학점 강좌 37개)를 통해 4,256명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기업가정신 포상 신설, 행복한 기업가정신 가족캠프 개최, 청소년 비즈쿨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예정('18.하)
- 또한 연내 500개 이상의 창업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소셜벤처 관련 교육과정을 10% 이상 운영할 예정('18.하)

10. 지역기반 연계 분야

10-1,2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 마을기업 제도정비와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마을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민관 협약식 개최(행안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주)이베이코리아 등)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17개소) 발굴·육성(6월말)
- 마을기업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선정 및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개정 추진 예정('18. 8월중)

10-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유휴·공공시설 지원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안 최종 확정을 위한 TF회의* 개최
 - 「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
- 입법예고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18.하반기중)

10-4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유도
 - '18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9개소, 4.30~) 및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수행(5.10~)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포럼 구성·운영(8월~)
 - 사회적 농업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병행(7.14~)
- 「사회적 농업법」국회 제출 예정(12월)
 - * 사회적 농업의 정의, 유형,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지원근거 마련 등

10-5

어촌사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통한 어촌사회 기반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어촌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전국 어촌계 협의회 구성('18.5)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심사 완료('18.7)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한 「수협법」개정 추진('18.8, 국회제출)

10-6

수협 담보·신용대출 적격성 심사 시 우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협 담보·신용 대출 적격성 심사 별도기준 마련('17.12)
 - * (예)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액이 20억원 이하 신규·연장, 신용등급 5A 이상인 경우 일반기업과 동일한 금리 기준 적용(여신지원 실적 17.7억원 / '18.6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관련 대출상품 개발('18.9)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취급 기준* 완화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조건 신설예정('18.12)

10-7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강화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현장컨설팅 26건 지원 및 '18년도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전용 관 운영 개시
 - 오마이컴퍼니,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농사펀드, 크라우드디 등 4개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체를 통해 45건 청약, 43건 성공, 총 198백만원 모집
- 농협-지자체-민간 기금 조성에 관한 법률 검토(완주군)

10-8

공영홈쇼핑 방영지원, 농협 판매장 입점 등 판로지원

- 공영홈쇼핑 채널과 농협 보유 판매망 공동 활용을 통한 판로지원
 - 공영홈쇼핑 개정으로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시 가점 부여 ('18년도 사업자 14개소 선정(4.12), 방송 진행 중)
 - (수수료 인하) 8%의 낮은 수수료율 적용 (기존 23%)
 - (절차 간소화)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면제
- 농협 측과 하나로마트 활용 방안 지속 논의

10-9,10,13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컨소시엄 구성·운영>

- 시도별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판로확대 지원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장 지원
 - 시도별 사회적경제 육성이 필요한 5대 분야 22개 품목 도출 완료('18.1월)
 - '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1차(2월)·2차(4월) 및 추가(5월) 지원계획 공고
- 하반기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정('18.下)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및 기술지원>

- 추진주체·자금조달·수익배분 등에 대한 유형별 사업표준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 사업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기 운영('17.7~)중인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10-11,12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한 판로지원(산업부)

- 'Korea Sale FESTA'의 주요행사인 '중소기업 제품 할인전'에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물 제품 참여 지원
 - 사회적 기업, 청년물, 우수 중소기업 등 총 48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특별 판매전 개최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별도 홍보관 운영
- 2018 Korea Sale FESTA 개최 예정('18.9~10월)

IV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 조사기간 : 2018년 9월 ~ 11월 9일
- 조사방법 :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97건) 및 온라인 설문조사 (33건)
- 응답자 현황

| 구분 | 응답자수 |
|--|------|
|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차 조직) | 69 |
|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합회 및 네트워크 (2차 또는 3차 조직) | 12 |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권역별지원기관, 광역/기초 지원센터) | 40 |
|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 지원조직 등 | 4 |
| 무응답 | 5 |
| 총계 | 130 |

1)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에 대한 의견

| 구분 | 응답자수 | 평균 |
|---------------------------------|--------------------|------------|
| 정책일반전체 | | 6.37 |
| 정책일반 1 | 정책에 대한 공감 정도 | 128 / 7.39 |
| 정책일반 2 | 정책의 구체성 정도 | 125 / 6.09 |
| 정책일반 3 | 정책의 실제 효과성 | 128 / 5.48 |
| 사회적경제역량전체 | | 5.36 |
| 사회적경제역량 1 | 사회적경제 현장의 정책역량 | 128 / 5.20 |
| 사회적경제역량 2 | 사회적경제 현장의 사업기획역량 | 127 / 5.53 |
| 사회적경제역량 3 | 사회적경제 현장의 연대와 협업역량 | 128 / 5.23 |
| * 비교 : ① 매우 낮음 ~ ⑤ 보통 ~ ⑩ 매우 높음 | | |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감정도는 7.39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구체성 정도는 공감정도에 비해 낮은 6.09,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낮은 5.48의 점수를 부여

- 사회적경제 민간의 역량에 대해서는 정책역량, 사업기획역량, 협업역량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여 민간의 역량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제기
- 이를 종합하면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아직 현장의 필요,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의 구체성은 더 제고되어야 함.
- 또한 정책의 실제 효과성은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정책, 사업기획역량을 높여 정책 활용도, 제도 및 정책과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

2)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 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구분 | | 응답자수 (총 130명) |
|-------------|----------------------|---------------|
| 1 순위로 꼽은 정책 | 통합 지원체계 구축 (2 개 과제) | 53 |
| | 금융접근성 제고 (13 개 과제) | 31 |
| | 판로확대 지원 (12 개 과제) | 21 |
| |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 개 과제) | 15 |
| 무응답 | | 10 |

-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있어 응답자 중 53명은 가장 우선순위 정책으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꼽았으며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의 순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임.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민간 당사자 조직의 협력, 협업의 근간이 되는 연대조직, 기금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제기하고 있음.

3)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체감도에 대한 의견

(본 항목은 온라인 설문조사는 제외하고 오프라인 조사결과만 수록)

| 항목 | 응답자 수 | 중요도 | 체감도 |
|----------|-------|--------|--------|
| | | 응답자 평균 | 응답자 평균 |
| 통합지원체계 | 90 | 2.41 | 4.12 |
| 금융접근성제고 | 94 | 2.82 | 4.37 |
| 판로확대지원 | 96 | 2.61 | 4.27 |
| 인력양성체계강화 | 97 | 2.68 | 4.32 |

* 비교 : ① 매우 중요, 매우 체감 ~ ④ 보통 ~ ⑦ 매우 중요하지 않음, 매우 체감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였음.
- 각 정책의 체감도에 있어서는 체감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나타나 앞서 정책의 실제 효과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 역시 정책의 과급범위의 제한과 민간의 정책 활용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과 현장역량 간의 시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4)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집담회 결과

- 지역별 정책 집담회는 8월 28일 전남을 시작으로 9월12일 광주까지 총 10차례(8월28일 전남, 8월30일 대구, 9월3일 제주, 9월4일 부산, 9월7일 충남/경남, 9월11일 서울/충북, 9월12일 전북/광주)진행되었다. 권역 지원기관 및 연대회의 지역협의회가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의체 및 지원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활성화 정책 전달 및 실행과정에 대한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수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연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느끼고 있을까?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사자의 과제는 무엇일까? 를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종합한다.
-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던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곳도 있었다.

- 다만, 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경제정책 일반의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여전히 협의구조가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진행되는 속도와 쏟아지는 양 때문에 70년대 경제개발 정책처럼 진행된다, ④ 통합기조를 지향한다고 하나, 분절적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⑤ 당사자들의 연대와 협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 정부 경제정책 기조 내에서(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사회적경제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목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사회적경제를 시장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로 쓸 것인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 정책 설계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정책 사업들이 빠르게 실행되고 있어 여전히 탑다운 방식, 개발 사업처럼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통합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부처간, 부문간 분절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협의체나 네트워크 등을 육성하여 연대와 협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보았다.
- 부처별 사업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지원기관이나 당사자 협의체가 참여 주체를 조직하고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 사업이 종합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역량이 강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낼 민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역의 시선

- 현장의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 첫 번째로 중앙과의 격차를 들었다. 격차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었다. 지역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어느 단위에서 추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정책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차이, 중앙에서의 결정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더디게 실행되는 시간 차이가 그것이다.

- 이런 격차로 인해 정책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정책이 추진되니 따르라’ 는 식의 불합리함이 온다고 보았다. 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단위 협의체,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지역 사회적경제 의제를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보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두 번째, 현장에서의 적용이다. 희망고문처럼, 발표된 내용은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발표된 실행 정책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묶여 진행되지 못한다거나,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지만 담당자는 감사가 무서워 어렵다는 소리만 한다거나,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 또한,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가 심하다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는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지자체에선 의지 부족으로 예산에서부터 책정되지 않아 아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매년 제자리에 머무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시간에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재차 설명해야만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 부처간, 부문간의 칸막이는 특히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역에서 더 체감하고 있었다. 마을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상당수 생소하다고 느꼈으며 실질적인 필요성 차원에서 동떨어져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활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며 복지영역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편입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 사회적경제 정책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때 충돌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개정하고 치밀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

- 었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세 번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성장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스템(예산 부족)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이 단계적으로 당사자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나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간지원조직의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의 책정이 필요하며, (사업설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어야 하나) 중앙 정책의 행정적 전달 역할에 많은 부분 투여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며 그것에 맞춰 과업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역의 기득권 유지 문제와 당사자 조직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 네 번째, 판로지원이다. 판로지원은 당사자 조직에게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이다.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기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맺기도 하지만 경험이 없는 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로, 집수리 자활기업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발표될 때 기대가 컸다고 한다. 지역의 상황은 현장조직들이 가장 잘 알지만 영세하다고 배제되고 타 지역 기업이 들어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마다 진행되는 판로지원 사업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 컨소시엄의 작은 성공 경험이 큰 성공 경험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활성화 정책 중에 가능성 있는 분야를 우선 집중 진입시켜 본다거나,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효과 있는 판로지원 사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거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 맞는, 인증기업은 인증기업에 맞는 단계별 공공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도와야한다고 보았다.
 -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시도를 위한 투자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매로 이어지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영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은 필수적이며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 시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3) 당사자가 당사자에 대해

- 대체로 상황을 돌아보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반복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 그럴까?
- 첫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 관계를 강화시켜 가야하는데 사업으로만 만나고 구속되어 일상적인 연대와 협력이 어렵다고 하였다. 조직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작동해야 하는데 사업적 논의만 이뤄지다 보니 노하우를 공유한다거나, 문제를 드러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협업의 이익이 있지만 협업 과정에 드는 추가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협업을 촉진하고 보상하는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세 번째, 정책 의존도가 높아져 동등한 거버넌스 구조가 되지 않다보니 정부가 주도성을 가져가고 그것이 다시 정책 의존도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 네 번째,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네트워크할 것인지 무엇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연대의 성공경험을 하나씩 발굴해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데 집중하면 연대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새로 진입한 조직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그 외 과제에 대해

① 사회적금융

- 금융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적경제 성과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현재 자금의 장점(이자율 등), 신용보증기금이나 신협的重要性이 지방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자조기금을 만들어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② 사회가치평가

-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지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사회적금융의 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는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당사자 스스로 정의해 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내적원리에 기초한 가치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업종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니, 지표은행 방식으로 지표를 개발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적용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③ 교육

-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량은 분명 축적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지역의 역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인재양성과 관련한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당사자 스스로 소셜미션을 정립하기 쉽지 않으니 본인들이 가진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동조합교육원 같은 국가차원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민간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인정받는 방법으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④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공단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회적경제가 지역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제한적인 바우처 이용자의 범위를 넓혀 이용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대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18년 통합박람회에서 제출된 사회적경제 보고서에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제안되었다. 만일 사업연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모델을 합의해내고 그 모델 자체가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까지도 제안되어야 한다. 사업연합을 말하면서 프로세스는 제안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진행한다면 견인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치밀하고 정밀하게 로드맵을 꾸리고 실행력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았다.

V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16일 ~ 12월 2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자 현황

| 구분 | 응답자수 |
|-----------------------|------|
| 대학, 교육, 연구기관 연구자, 교육자 | 7 |
| 사회적경제조직 대표자, 정책담당자 | 7 |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책임자 | 7 |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1 |
| 총계 | 22 |

문1)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분 | 매우 부적절, 부정적이다. (1점) | 대체로 부적절, 부정적이다. (2점) | 다소 부적절, 부정적이다. (3점) | 보통수준으로 그저 그렇다. (4점) | 다소 긍정적, 타당하다. (5점) | 대체로 긍정적, 타당하다. (6점) | 매우 긍정적, 타당하다 (7점) |
|------|---------------------|----------------------|---------------------|---------------------|--------------------|---------------------|-------------------|
| 응답비율 | 0.00% | 0.00% | 4.55% | 22.73% | 22.73% | 50.00% | 0.00% |
| 빈도 | 0 | 0 | 1 | 5 | 5 | 11 | 0 |

-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묻은 설문에 대해 응답자 22명 중 16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는 5명, 부정적인 평가는 1명으로서 정책의 방향성,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항 1에 대한 세부의견

- 사회적경제 정책 통합,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회적금융, 인재양성, 진출분야 증 기존 정책보다 구체화하였음.
- 방향 설정에 있어 생태계 조성, 지역중심, 종합설계, 공공과의 협력, 민관거버넌스 조성 등 중요 방향은 잘 담고 있음

-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신설 등 국정과제로 추진 중
- 사회적경제 현장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 적극적인 정책 수행 의지
- 현장의 만족 수준과는 별개로, 현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1년 동안에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방안이 나온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함. 다만, 정책평가에는 정책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설문은 개별 의견을 집계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전하고 싶음.
- 기대보다 현실적인 조건과 현 정부의 능력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대할 사람이 그다지 없음)
- 부처에 관계없이 사회적경제가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민의 주도성을 고려하고 있음
-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현장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지 못해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다소 아쉬움
-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틀을 짜기보다 뿌리도 내리지 않았는데 열매부터 거두려하고 있고. 현장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연계되어 만들어지고 있음
- 큰 틀에서 방향은 공감하지만 각 론은 큰 틀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
- 사회적 금융, 판로, 교육, 지원체계 등 중요한 꼭지를 두루 잘 이슈화 함.
- 사회적경제 정책을 한시적이고 즉각적인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음. 특히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분야의 인력과 노하우가 수도권으로 흡수되어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초기보다 후퇴되거나 과거 초기의 어려움보다 더 복잡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생각임
- 정책이 항상 새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활성화방안은 이전 10년 정도 현장에서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서 이미 정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편집한 경향이 있음 . 즉, 사회적경제의 장기비전이나 미션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방안이 아닌 현안을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됨
- 지역 풀뿌리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부 조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 광역단위의 지원 조직이 정보를 독점하고 풀뿌리 지원조직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도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직접사업을 추진하는데 풀뿌리 지원조직과는 전혀 사전 논의나

협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현 정부가 특별히 사회적 경제에 방점을 찍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어 보임.
- 특정 부처 중심으로만 사회적 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부, 과기부 등은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임.

문2)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 정책(통합지원체계 구축 / 금융접근성 제고 / 판로지원 확대 / 인력양성체계 강화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분 | 매우 부적절, 부정적이다. (1점) | 대체로 부적절, 부정적이다. (2점) | 다소 부적절, 부정적이다. (3점) | 보통수준으로 그저 그렇다. (4점) | 다소 긍정적, 타당하다. (5점) | 대체로 긍정적, 타당하다 (6점) | 매우 긍정적, 타당하다. (7점) |
|--------------------|---------------------|----------------------|---------------------|---------------------------|----------------------------|---------------------------|--------------------|
| [공통정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 | 0.00% 0 | 0.00% 0 | 13.64% 3 | 36.36% 8 | 27.27% 6 | 22.73% 5 | 0.00% 0 |
| [공통정책] 금융접근성 제고 | 0.00% 0 | 9.09% 2 | 0.00% 0 | 22.73% 5 | 31.82% 7 | 36.36% 8 | 0.00% 0 |
| [공통정책] 판로지원 확대 | 0.00% 0 | 4.55% 1 | 9.09% 2 | 18.18% 4 | 31.82% 7 | 36.36% 8 | 0.00% 0 |
| [공통정책] 인력양성 체계 강화 | 0.00% 0 | 9.09% 2 | 0.00% 0 | 18.18% 4 | 45.45% 10 | 27.27% 6 | 0.00% 0 |
| [분야별 정책] 사회서비스 분야 | 4.55% 1 | 0.00% 0 | 9.09% 2 | 27.27% 6 | 54.55% 12 | 4.55% 1 | 0.00% 0 |
| [분야별 정책] 주거환경 분야 | 0.00% 0 | 4.55% 1 | 13.64% 3 | 27.27% 6 | 45.45% 10 | 9.09% 2 | 0.00% 0 |
| [분야별 정책] 문화예술 분야 | 0.00% 0 | 4.55% 1 | 13.64% 3 | 22.73% 5 | 54.55% 12 | 4.55% 1 | 0.00% 0 |
| [분야별 정책] 프랜차이즈 분야 | 0.00% 0 | 4.55% 1 | 13.64% 3 | 31.82% 7 | 40.91% 9 | 9.09% 2 | 0.00% 0 |
| [분야별 정책] 소셜벤처 분야 | 0.00% 0 | 0.00% 0 | 4.55% 1 | 27.27% 6 | 36.36% 8 | 27.27% 6 | 4.55% 1 |
| [분야별 정책] 지역기반연계 분야 | 0.00% 0 | 4.55% 1 | 13.64% 3 | 27.27% 6 | 31.82% 7 | 18.18% 4 | 4.55% 1 |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각 영역에 대해서도 대체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응답함.
- 다만, 정책의 구체성, 민관협력의 깊이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세부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현 정부가 매우 급박하게 출범하였고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감안할 때 단 시간에 민-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방안을 연속해서 도출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문항 2에 대한 세부의견

- 최근 판로유통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그러나 여전히 지역특화 분야의 활성화는 지역 간 특성에 따라 민관협치의 어려움, 자원과 정책부재 등으로 열악하며 이는 부진한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추진과 맞닿아 있다고 사료됨. 소셜벤처 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정책은 업종의 다양성, 그 다양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전략부재 등에 대한 컨설팅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함
- 각 정책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이지만 실행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
-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통합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음 소셜벤처 분야는 본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사업의 유연성 부족(행정 및 예산상의 제약이 많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대안임
- 대체적으로 취지와 방향을 공감하나, 이의 실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음
- 2017년 정부의 발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당사자,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전달체계 등의 협업, 사전 의견조사 등의 과정이 없음
- 정책적 설계와 방향은 좋은 편이나 실행력과 구체성은 부족
-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다만, 분야별로는 기존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다.
- 설문에 체크했으나 판단이 어려운 감이 있음. 이유는 1) 정책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빠르고 2) 각 분야별 실행진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 판

단이 쉽지 않음, 3) 분야별 정책은 해당 분야별 산업 활성화 정책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바 실행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수준과 역량 축적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함. 상대적으로 소셜 벤처 분야는 기존 벤처 정책, 중소기업 정책과 맞물려 정책 설계-수립-실행-시너지로 연결되는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임. 반면,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사회 서비스 부문은 정책 이해 및 침투가 쉽지 않음

- 주된 내용은 상당부분 필요와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는 현안중심이였으며 그나마 1년이 지났지만 가시화된 분야는 잘 보이지 않음.
- 전 분야를 망라하고 사회적경제와의 협업과 접근을 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도시재생뉴딜, 산업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
- 청년창업에만 전반적인 정책이 포커싱되어 있을 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음.
- 기초지자체 단계에서 민과 협치나 민간주도성이 잘 안 된다
- 전반적으로 현장과의 연계성, 현실성이 낮음.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담론에 머무르고 있음. 개별적인 접근에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변화나 실제 적용되고 있는 직/간접 사례 등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
- 인재육성, 금융,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함
- 돈으로 모든 것을 본다. 문화 가치 참여도 공감대가 부족하다
- 분야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장 상황이 반영됨
- 새 술은 새 부대에 과거 지원방식과 차이 점 발견하기 어려움. 우리사회의 사회 경제인과 관료들의 인식은 과거 개별 기업체 지원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음. 연합체와 생산자 소비자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 방향성에 동의

문3)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어떤 분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기 | 응답 (비율 / 빈도) | |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의 확보 | 54.55% | 12 |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정비 | 13.64% | 3 |
|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양성 | 9.09% | 2 |
|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 | 0.00% | 0 |
|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 0.00% | 0 |
|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입지원 | 13.64% | 3 |
| 기타 | 9.09% | 2 |

- 응답자의 과반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함.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미제정 상태이고 주무부처의 역할, 부처간 협력구조,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뤄낸 성과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공고한 정책기반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문항 3에 대한 세부의견 : 현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해야 할 사회적경제 분야 핵심적인 정책방향과 목표

- 일단 기본법 제정이 추진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단계에 맞는 지원의 수준과 방식의 체계적이고 합리적 전략수립과 실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각종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반 근거 마련이 우선 필요함
- 방향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법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 / 목표 :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체감도 높이기,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대 국민 공감, 사회적금융 자리 잡기,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확대
-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어 규모화 가능한 기금의 조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풀뿌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 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경우, 관료주의적 사고와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부는 힘을 기울이고, 긴 안목으로 민간의 자생적인 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봄. 지난친 정부주도의 느낌이 있으며, 대기업, 사업전반에서의 호응도는 너무 적다라고 판단됨
- 생태계조성과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존재이유와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 범부처 컨트롤 타워
- “사회적경제 부문의 가시화와 타 경제부문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립“이라고 생각함.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및 차별적 제도 시정, 사회적경제 실체에 대한 정부 통계 확립,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대한 이해 시정 및 제고. 인재양성 (연구/교수 인재, 경영인재, 활동가인재. 각각의 품질 수준이 일정하게 확립되어야 할 필요), 사회적경제 통계 (사회적경제 실체의 규모를 가시화해야)...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립-실행-평가되어 개선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과 통합 내 다양한 경로의 제도화. 크고 담대한 사례의 추진
- 커뮤니티케어(복지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산자부) 등과 같이 각 부처의 핵심 역할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다시 정의하고 통합적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함
-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경제이니,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잘되면 정부가 바꾸고 법이 미비해도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반 시장경제체제에 진입 및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기본법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 상호 모순적인 제도의 개선, 사회적 경제성과 측정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및 측정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의 확대 등등
- 사회적경제의 법적 기반 확보와 부문별, 업종별, 지역별 현장 네트워크 강화, 네트워크 그룹과 정책 및 실행 파트너십 강화 등
-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
- 하나라도 뿌리가 내리도록 하여 현재의 활동가가 없어져도 또 다른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현장이 되도록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

- 우호적인 생태계의 조성에 기반이 되는 기본법, 체계의 마련
- 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하지만 국회의 사정으로 볼 때 법 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함.
- 미래 지향적 법적 근거 확보

문4)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현장의 전반적인 조직 및 사업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분 | 매우 낮다 (1점) | 대체로 낮다 (2점) | 다소 낮다 (3점) | 보통이다 (4점) | 다소 높다 (5점) | 대체로 높다 (6점) | 매우 높다 (7점) |
|------|---------------|----------------|---------------|--------------|---------------|----------------|---------------|
| 응답비율 | 4.55% | 27.27% | 36.36% | 27.27% | 4.55% | 0.00% | 0.00% |
| 빈도 | 1 | 6 | 8 | 6 | 1 | 0 | 0 |

- 응답자 다수 (22명 중 15명)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및 사업역량에 대해 낮다고 평가하였음.
- 일부 소수의 기업과 조직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사업능력, 실행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내발적 동력의 취약함을 제기함.
- 취약한 자생력과 기업 간 편차 등에 의해 정부 의존성을 탈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제기되었으며 인재, 특히 경영역량의 부재, 부족이 많이 제기됨.

○ 문항 4에 대한 세부의견

- 일부 10% 미만의 기업과 조직을 제외하고는 인식은 물론, 실행능력과 역량이 표준미달이라고 봄. 이는 1세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가에서 2세대, 3세대로 진화되는 과정의 교육과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생각임
- 사회적경제 현장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나 현장 내발적 동력이 확고하지는 않음.
-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및 사업역량의 편차가 커서 보통으로 체크함. 즉 전문성 등 역량이 매우 높은 곳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곳 등 편차가 크다는 것임.
- 제도 환경 및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일반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의 자생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현 정부에서도 기존 금융/정부당국 인프라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의존성을 탈피하기 어려울 듯함.
-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사회발전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약하고 지나치게 당사자 조직들의 이해관계 중심의 운영방식의 한계
- 현장의 역량은 격차가 크다. 역량이 낮은 쪽은 경험 외에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발성과 필요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다. 그것을 고양시킬 정책과 지원도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 사회적경제는 간단히 말하면 “사회문제를 사업 활동이란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기업“임.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협동조합도 사람, 자본,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을 제공해야 함. 정권은 바뀌어도 기업은 계속되는 존재임(on going). 이런 점에서 특히 경영인재가 부족하고 기업으로서의 생존역량 자체가 취약한 상태. 협의회 등 연대, 연합을 이야기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1차적으로 중요한 연합, 연대는 사업연대임. 사업의 공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거나 공통품질기준을 마련하거나 자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리스크 분담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음. 사업연대의 성공모델로 제시할만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임
- 뛰어난 조직과 인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창업과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조직이 더 많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형식적 육성 또는 제한적 육성을 해 왔음. 특히 협의회나 중간지원과 같은 허브/연계 협업을 견인할 주체를 형성하는데 매우 미온적이었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인적 주체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아직 현장에서 일하는 리더와 전문가 수준이 높지 않고 숫자도 적다.
-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 등 기본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역량은 낮을 수밖에 없음.
- 일선 활동가 역량이 우선 양적으로 절대 빈약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도 낮고,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역량 수준도 낮은 상태라고 여겨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도 부족함.
- 부문별 네트워크간의 협력체계 미흡. 특히 사업 분야별 네트워크는 부문별 조직 틀 등으로 협력 활동이 극히 미흡. 네트워크 조직의 가치와 비전, 목적, 활동이 전체 사회적경제 강화로 연계되는 지점의 모호함 등

- 정책이 많이 양산되고 있으나 현장과 괴리가 있다. 정책의 섬세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장의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 현장 조직의 업력이 짧고, 보조금 중심에 익숙함. 연대와 협력의 경험, 기반의 부족
-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연대로 풀 수 있는 것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음. 또 재화 및 용역 분야가 다양하지 못함.
- 열심히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경영 역량이나 제품의 경쟁력 등에서 다소 미흡

문5)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책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 현장이 가장 주력,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 조직 내, 외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대협력이 가시화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현장은 가장 우선으로는, 현재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이 키우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현장 간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현장 개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역량의 차이도 있으므로 연대와 협력의 방안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당사자 조직의 개별적 발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 위상 확보 및 존재성의 사회적 공감 확보
- 8번에서 제시했듯이 해당 분야에서의 사업연대, 또는 소비자 만족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
-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역순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주요사례 발굴과 이를 위한 민관의 역량집중! 좋은 사례가 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사례가 자리 잡고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협력해야함
- 사회적경제에서 일할 인력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개방된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많은 방법론에 대한 공부 필요함. 실제 현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필요하며,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숫자로 자신의 성과와 주장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현장의 구성원을 만들고 그들을 교육하고 참여시켜 자신의 일로 인식토록 해야 한다 현장에 구성원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소극적이다

- 지역 단위에서의 부문조직의 연대체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강제, 견인이 시급함
- 정부는 5년마다 바뀔. 따라서 사회의 많은 세력과 연대하고 자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함.

문6) 사회적경제 현장의 당사자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해 꼭 당부 또는 제언할 사항

-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관거버넌스)
-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 사회적경제 현장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민관의 굿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설문에도 그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
- 중앙정부는 지역 풀뿌리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 지자체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서울/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전국단위로 확산 이전할 수 있는 소도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단위 체계의 구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지방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 관련 예산의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알 듯 함.
-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당사자들을 이끈 다기 보다는 그들을 지원한다는 방향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의 개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리스크 분담 체제 확립: 민간위탁은 최소 3개년을 기본으로, 민관 함께 사업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율성 부여(공무원의 이중체크구조 해소), 경영성과의 수취 인정(성과가 목표를 넘을 시, 해당중간지원조직의 적립금으로 인정, 향후 독립 시 기본재산으로 활용가능), 리스크 분담(성과 미달, 지원조직의 실패에 일정한 책임과 보상 연계) 3) 사회적경제기업의 회계, 재무관리, 감사에 특화한 중간지원조직 검토
-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본조달, 연관 법 정비, 대표사례의 추진

등이 요구됨

- 단체장 등 리더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를 더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 더 이상 양적 팽창이나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정부 지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정확히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를 숙지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한 후 설립이 되었으면 함.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서 주민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함.
-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 활동가들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역사회 총괄 혁신담당관으로 적극 역할 하는 방안이 전국화되는 것부터 추진
- 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현장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민간 조직과 협업을 통해 생태계 차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접근 필요
-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인 양성. 실험 실습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원칙. 연대 협력. 일거리(입찰제도,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 노력 등임

V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정부의 과제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현재 추진 중인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이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거나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역시 안정성이 취약함
- 사회적경제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촉구됨

2) 민간의 혁신과제

① 개별 기업 단위

- 기업의 고유미션 실현 및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개발, 수행역량의 강화

② 업종/지역/연합체 단위

- 해당분야 업종의 혁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인 사업 개발, 추진 역량의 강화

③ 정책역량 강화

- 기업/업종/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실사구시적 정책개발 및 정부, 국회,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④ 공적 지원정책의 확대에 따른 민간의 책임성 강화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 경주

3) 정부/지자체의 혁신과제

① 정책의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사업, 금융, 판로 등) 홍보 및 맞춤형 정책 활동 지원

②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

- 정부/지자체 종합정책(5개년 계획) 및 분야별 사업 정책 수립시 정책의 공동생산 구조와 프로세스 구축
-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정화, 내실화

③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정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신속한 장벽 해소

④ 지자체 단체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인식 증진 및 민간의 참여 확대(정책 거버넌스, 개방직 공무원으로 참여 확대)

붙임자료 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관

정관 제정(2012. 11. 21)
 1차 개정(2013. 06. 28)
 2차 개정(2014. 02. 14)
 3차 개정(2015. 07. 09)
 4차 개정(2015. 12. 09)
 5차 개정(2017. 02. 08)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대회의는 사회적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대와 업종·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연대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2.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3. 정보의 소통과 축적
4. 조사, 통계연구
5.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6. 그 밖의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대회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연대회의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관련 단위조직
2. 지역에 지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둔 중앙조직
3.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4.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연구기관
5.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기관

③ 연대회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가입)① 연대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은 가입신청서를 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가입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가입 신청자는 가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대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탈퇴)① 연대회의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은 탈퇴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 회원에 대한 효력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③ 탈퇴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부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한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탈퇴 신청일이 20일 이후 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또는 제명)①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 의결로 상실된다.

1. 연대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회원자격의 상실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결할 대표자회의 개최 2주 전에 당해 회원에게 자격상실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대회의는 자격 상실 대상에 대해 회원자격의 상실을 의결할 대표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④ 회원자격의 상실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자격상실 대상 회원은 이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

⑤ 연대회의는 자격 상실에 대한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자격 상실 대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은 상실한다.

⑥ 자격이 상실 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부 회비가 있는 경우 자격 상실 결정이 이뤄진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격 상실에 대한 결정이 20일 이후 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후원회원은 발언권과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회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7인 이내
2. 상임대표 1인
3. 운영위원 25인 내외
4. 집행위원장 1인
5.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대표자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공동대표들이 선출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정회원의 추천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연대회의를 대표하고, 상임대표의 직을 순환하여 수행하며 사무를 분장하여 대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 중 연합회 부문의 대표성을 갖고 참석을 하는 자는 해당 연합회의 부문의 결의가 있는 경우 연대회의의 공동대표직을 승계 한다. 단, 연대회의 상임대표직은 승계 되지 않는다.

③ 상임대표는 대표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연대회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을 보좌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사업 기획·집행
2. 사무 업무 총괄
3. 대외 업무 및 연대활동 수행
4. 공동대표단으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 수행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대회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의 대표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그 밖에 연대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처우) 연대회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집행위원장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구의 종류)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표자회
2. 운영위원회
3. 위원회
4. 사무국

제15조(대표자회의 구성) ① 연대회의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표자회를 둔다.
② 대표자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6조(대표자회의 소집) ① 대표자회는 정기대표자회와 임시대표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표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대표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대표자회 의결사항) 대표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대표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대표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대표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 제1호에 관하여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호 및 제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회원은 정회원이 속한 단체의 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리출석 하게 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전자메일 등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한다. 단, 서면으로 의결을 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정수에 포함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 4. 제규정의 제·개정
- 5.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특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 7. 특별위원회장 및 분과장 선임에 관한 사항(신설)
- 8. 사무국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대표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10.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부의한 사항
- 11.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

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집행위원회의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1.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집행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25조(집행위원회의 역할)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 활동의 촉진과 공유
2. 분과 활동 내용 중 연대회의 사업으로 제안 할 사안을 기획 및 제안
3. 연대회의 사업의 집행 방안 기획 및 제안
4.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의 기획 및 집행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대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7조(사무국) ① 연대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연대회의의 각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회람 후,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29조(재원) 연대회의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3. 수익사업 및 모금사업을 통한 기금
4. 각종 지원금품
5. 기타

제30조(회계 구분) 연대회의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1조(회계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연대회의의 회계처리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연대회의의 회계보고는 매년 1회 정기대표자회를 통해 실시한다.

③ 연대회의는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연대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해산사유) 연대회의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대회의가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표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